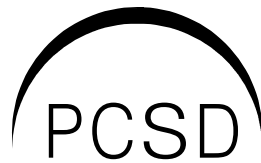

대외원조(ODA) 정책 개선방안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Republic of Korea

대외원조정책 개선방안 자료집을 발간하며

최근 개도국의 빈곤퇴치가 국제협력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면서 대외원조는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2000년 유엔은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2015년까지 빈곤층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밀레니엄선언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20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서는 선진국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공적개발원조 수준(국민총수입의 0.7%)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요하네스버그 선언문을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외원조는 국민총수입의 0.06%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며, 경제규모에 걸맞는 국제적인 역할과 책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2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2002년 12월에 대외원조소위원회(위원장 신혜수)를 구성하고 7차례의 회의를 통해 대통령 자문을 위한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개혁과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대외협력교육전문위원회 국제협력소위원회(간사 신혜수)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2004년 6월과 11월 두 차례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각 부처와 관계기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12월 20일 대외원조 개선을 위한 대통령 자문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외원조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국민의 지지나 인식은 매우 낮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제의존도가 점점 증가하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대외원조는 국제사회에서 개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 자료집은 대외원조 관련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논의와 활동을 정리한 것으로 아무쪼록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 자료집을 위해 애써주신 대외원조정책 관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하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2004. 12. 30.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고 철 환

차 례

1. 대외원조(ODA)정책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활동	1
2. 대외원조의 개선방향 요약본 I (2004. 12. 20)	4
3. 대외원조의 개선방안 요약본 II(2004. 12. 18)	6
4. 대외원조의 개선방안 요약본 III(2004. 12. 16)	9
5. 대외원조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2004. 11. 27)	12
6. 우리나라 대외원조(ODA)정책의 개혁과제와 개선방안	
우리나라 대외원조(ODA)정책의 개혁과제와 개선방안	
(요약 및 수정본, 2004. 6. 25)	15
우리나라 대외원조(ODA)정책의 개혁과제와 개선방안(초안, 2003. 9. 27) ·	24
제1장 정책연구 배경 및 목적	24
제2장 국제개발협력의 현황과 쟁점	26
제3장 우리나라 ODA의 현황과 문제점	34
제4장 대외원조정책의 개혁방안	44
제5장 정책과제	55
7. 대외원조정책 개선방안 워크숍(2004.11.26-27, 양평한화콘도)	
<주제발표 I: 대외원조정책 개선방안>	
○ 우리나라 ODA 발전방향	67
○ KOICA의 개혁방안	73
○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정책의 개선방안	89
○ EDCF지원 개선방안	98
<주제발표 II: 해외협력·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 환경부의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및 향후전망	103
○ 보건복지분야의 해외지원사업 특성과 과제	109
<종합토론: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현황과 과제>	116

대외원조(ODA)정책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활동

1. 대외원조정책 관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논의경과

○ ODA는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서, 제 2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회분과에서 2002년 12월 ODA소위(소위 위원장 : 신혜수)를 구성하여 7차례의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개혁방안과 정책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음

○ 2003년 5월 28일 사회분과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대외원조(ODA) 정책의 개혁과제와 개선방안` 정책자문안을 의결하고 이것을 토대로 공개토론회를 거친 후 본 회의에 상정하여 대통령께 자문하기로 함

○ 그러나 참여정부의 출범에 따라 제2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해체되고 제 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됨으로써 ODA에 관한 논의가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넘어 오게 되었음

○ 이에 따라 대외협력교육전문위원회 국제협력소위 제 1, 2차 회의(2004. 4. 30/6. 17)에서 ODA 과제를 재추진하되, 워크샵 또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고서 내용을 보완하고 추후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음

○ 2004. 6. 25 고철환위원장, 외교부, 재정부, 시민단체 관계자, 대외협력교육전문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권율박사의 “우리나라 대외원조(ODA) 정책의 개혁과제와 개선방안” 주제발표와 토론 등 내부워크샵이 지속위에서 개최되었음

○ 1차 워크샵에서는 ODA 증액 수준 및 추진 일정, 유·무상 ODA의 구조, ODA 수혜국가 및 사업내용, ODA 집행과 관련된 행정적·제도적 체제 등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었으며 주요 의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음

○ 대외협력교육전문위원회 제 3차 전체회의(10. 27)에서 추가적인 워크샵 개최를 결정하여, 관련부처, 시민단체,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04. 11. 26 (금)-27(토) 대외원조(ODA)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워크샵을 개최하였음

○ 워크샵에서 채택된 정책제안서를 토대로 대외원조정책 개선을 위한 대통령 자문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음(12. 20)

2. 활동일지

<제2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2. 12. 24 **사회분과위원회 산하 대외원조(ODA)소위원회 제1차 회의**
- 대외원조정책 보고서를 2003년 6월까지 완성하기로 하고,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 의견청취 및 토론회, 세미나 등의 절차를 거치기로함
2003. 1. 6 **대외원조소위원회 제2차 회의**
- 주제별 연구활동 일정을 정하고 보고서 초안 및 집필을 권율위원(책임집필) 및 김채형위원이 맡기로 하되, 매 연구활동시 발제는 전 위원이 담당하기로 함
2003. 2. 11 **대외원조소위원회 제3차 회의**
- “한국 ODA의 추진실적과 향후 정책방향“, ”한국의 원조이념 및 정책목표“ 주제 발표 및 토론
2003. 3. 3 **대외원조소위원회 제4차 회의**
- “원조이념 및 정책목표“, “원조의 양적 및 질적 구조” 주제 발표 및 토론
2003. 3. 31 **대외원조소위원회 제5차 회의**
- 원조정책의 선진화 방안 논의
2003. 5. 13 **대외원조소위원회 제6차 회의**
- ODA정책자문안 초안 및 공개토론회 개최(안) 검토
2003. 5. 20 **대외원조소위원회 제7차 회의**
- 대외원조 정책 자문안 초안 검토
2003. 5. 28 **사회분과위원회 제5차 회의**
- 대외원조 소위원회가 제출한 정책자문과제인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개혁과제와 개선방안” 심의및 대외원조 공개 토론회 추진계획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4. 4. 30 **대외협력교육전문위원회 국제협력소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제2기 위원회에서 추진하던 “우리나라 대외원조(ODA)정책의 개혁과제와 개선방안”을 국제협력소위 과제로 재추진하되 워크샵을 개최하여 내용을 보완
2004. 6. 17 **국제협력소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우리나라 대외원조(ODA) 정책 개선방안 내부워크샵 준비
2004. 6. 25 **국제협력소위원회 ‘우리나라 대외원조(ODA) 정책의 개혁과제와 개선방안’ 내부워크샵 개최**
2004. 10. 14 **국제협력소위원회 제1차 간사회의**

- 대외원조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외부워크숍 개최를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2004. 10. 21 국제협력소위원회 제3차 회의

- 대외원조정책 개선방안 워크숍 개최(2004. 11. 26-27)를 전문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2004. 10. 27 대외협력교육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

- 대외원조정책 개선방안 워크숍 개최를 국제협력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추진하기로 결정

2004. 11. 26-27 대외원조(ODA)정책 개선방안 워크숍 개최

- 대외원조정책의 양적, 질적 개선방안을 위한 관련부처, 시민단체, 전문가의 토론 및 정책제안 채택

2004. 12. 20 대통령 자문안 제출

3. 대외원조정책 관련 소위원회 위원

구분	제2기 사회분과위원회 대외원조소위원회	제3기 대외협력교육전문위원회 국제협력소위원회
위원장(간사)	신혜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대표)	신혜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대표)
소위 위원	권율(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채형(부경대 교수) 차명제(성공회대 교수) 이정수(녹색미래 사무총장) 강장석(국회 수석전문위원) 박찬호(전경련 기획조정실장)	남상민(한양대 연구교수) 문국현(유한킴벌리 대표이사) 박영우(환경부 국제협력관) 박은경(환경과문화 연구소장) 조현(외교부 국제경제국장) 유지나(동국대학교 교수) 진월(이영호)(한국종교연합 대표)

대외원조정책 개선방향 요약본[1]*

- 20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서 개도국 대외원조 지원확대를 결의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동 국제회의 이후, 우리나라의 대외원조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 정책보고서 제출 예정

- 우리나라는 무역과 투자면에서 개도국에 대한 의존도가 50%수준을 넘지만,
 - 대외원조액이 3억6천만불(03, GNI대비 0.06%)로서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평균(0.25%)의 1/4 수준에 불과(국제목표 : 0.7%)
 - ※ 경제규모 유사 국가의 대외원조비율 : 호주 0.25%, 네덜란드 0.80%, 스페인 0.23%
 - ※ 단, 대북협력사업(정부부문 367백만불)을 포함하면 GNI의 0.12%로 증가

 - 대외원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이 매우 낮음
 - ※ 52.6%가 원조규모를 축소 또는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2003년 설문조사)

 - 유상원조(재경부)와 무상원조(외교부,KOICA)간 연계전략 부족, 소규모 재원을 130여 개국에 분할 원조함으로써 지원 성과가 낮은 문제가 있음

- 개선 방향 (지속위 워크숍시 제안 의견)
 - 2009년까지 GNI의 0.1%(7억3천만불) 수준(현재의 2배)으로 확대 추진

 - 대외원조에 대한 학교·시민교육 활성화 등 홍보 강화

 - 대외원조 이념, 목표, 원칙, 유·무상 조정메커니즘, 부처·NGO간 협력방안, 민간참여 등 체계적 대외원조 추진을 위해 원조기본법 제정 검토(정책기획위원회 수정안)
 - ※ 현재 무상원조는 한국국제협력단법(외무부), 유상원조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재경부)에 근거

 - 비교우위가 있는 개발경험 및 제도개선 분야 중심의 한국형 원조모델 개발, 아시아지역 중심의 중점 지원국 선정, 수원국 수요에 적합한 국별 프로그램 수립 등 종합적인 대외원조계획을 수립할 필요

1)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보고서를 토대로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수정·작성하였음.

【참고자료】

우리나라 대외원조 현황

□ 연도별 대외원조 현황

(단위:백만USD)

구분		'98	'99	'00	'01	'02	'03
양자원조	유상	87.5	92.4	83.4	118.5	140.1	99.7
	무상	37.2	38.9	47.8	53.0	66.7	145.5*
	소계	124.7	131.3	131.2	171.5	206.8	245.2
다자원조		58.0	186.1	80.9	93.1	72.0	120.7
합계		182.7	317.4	212.1	264.6	278.8	365.9
대외원조/GNI(%)		0.058	0.079	0.047	0.063	0.06	0.06

* 對이라크지원(40백만불) 아프간지원(21백만불) 포함

□ 무상원조

○ 122개국 총 1.8억불(*2,200억원) 지원('04)

*이라크 재건지원(660억원) 및 중동 특별지원(360억원) 예비비 1,020억원 포함

○ 지원비중 : 아시아 68%, 아프리카 12.7%, 중남미 10.2%, 구주 7.8%, 중동 3.3%, 등

- 10대 지원대상국 : ①베트남(680만불), ②인니500만불), ③필리핀(463만불), ④중국(430만불), ⑤캄보디아(348만불), ⑥미얀마(297만불), ⑦라오스(290만불), ⑧페루(190만불), ⑨태국(184만불), ⑩몽골(168만불)

○ 무상원조는 현금, 현물, 프로젝트, 컨설팅의 형태로 이루어짐

□ 유상원조

○ '01년 처음으로 1억불을 초과하였으며, '02년에 최고(1.4억불)를 기록

○ 금리, 상환기간 등 지원조건이 선진국에 비해 불리하여 경쟁 역량을 저해

- 일본 JBIC 엔차관에 비해 금리가 1.6% 높고 상환기간은 10년이 짧음

○ 분야별로는 교통(26%), 통신(23%), 에너지(12.6%), 보건(11%), 교육(7.6%)

- 10대 지원대상국 : ①중국(2.33억불), ②베트남(1.82억불), ③인도네시아(1.78억불), ④스리랑카(1.77억불), ⑤방글라데시(1.25억불), ⑥필리핀(1.08억불), ⑦미얀마(85백만불), ⑧루마니아(81백만불), ⑨우즈베키스탄(77백만불), ⑩캄보디아(65백만불)

< 주요 선진국의 ODA 공여수준('02년)>

국가명	GNI (10억불)	1인당 GNI(불)	ODA (백만불)	GNI대비 ODA*(%)	1인당 ODA 공여액(불)
한국	473	9,930	279	0.06	6
네덜란드	412	25,500	3,338	0.81	207
스페인	652	15,800	1,712	0.26	42
호주	387	19,800	989	0.26	50
뉴질랜드	55	13,900	122	0.22	31
포르투갈	119	11,500	323	0.27	31
그리스	133	12,200	276	0.21	25
이태리	1,174	20,300	2,332	0.20	40
일본	4,065	31,900	9,283	0.23	73
미국	10,945	35,060	13,290	0.13	46
DAC 평균	1,128	28,787	2,649	0.22	68

대외원조의 개선방안 요약본 II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4. 12. 18

1. 배경

- 2000년 9월 유엔총회에서는 2015년까지 절대빈곤층을 절반수준으로 삭감시킨다는 목표를 채택하였고 20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서 개도국 대외원조 지원 확대를 결의
- 우리나라는 무역과 투자면에서 개도국에 대한 의존도가 50% 수준을 넘어섰으나, 對개도국 원조수준은 초보적인 단계임

2.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대외원조액은 '03년 365.9백만불로 GNI(국민총수입)의 0.06%임
 - '99년을 제외하고 '98-'03년 대외원조액은 GNI의 0.05%-0.06% 수준 유지
- 무상원조는 외교부(KOICA), 유상원조는 재경부(수출입은행)로 이원화
- 소규모 재원으로 130여 개국에 걸쳐 무상원조가 이루어짐

□ 문제점

- GNI 대비 대외원조액 비율이 0.06%로서 국제목표(0.7%)의 1/11, OECD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평균(0.25%)의 1/4 수준(\$6/국민1인)
- 유상원조와 무상원조 부처간 상호협업 및 조정 메커니즘 미흡
-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연계전략 부족, 개별 프로그램별 지원으로 성과가 낮음

□ 대외원조와 대북협력

- 대북협력사업은 국내법상 국가간 원조가 아닌 민족내부 특수관계로 보아 대외원조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대외원조에 대북협력사업(정부부문 367백만불)을 포함하면 GNI의 0.12%로 증가

3. 개선방안

□ 2009년 대외원조액 GNI의 0.1%로 확대 : 729.4백만불

* 경제규모 유사 국가의 대외원조비율 : 호주 0.25%, 네덜란드 0.80%, 스페인 0.23%

□ (무상)원조관련법 제정

- 대외원조 이념, 목표, 원칙, 유무상증장기계획 수립, 유무상 조정메커니즘, 민간참여 등

- 현재 무상원조는 한국국제협력단법, 유상원조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근거

□ 유·무상 원조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의원조계획** 수립

- 중장기 원조정책, 대의원조액 증액, 유·무상 비율, 중점지원국 선정, 수원국 수요에 적합한 국별 프로그램 수립,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등

□ 부처간, 민·관 협의체계 구축

- 외교부, 재경부 등 유상-무상 관련부처간 **실무급 조정위원회** 추진
- 무상원조 부처간 협의체계 필요(외교부 및 과기부, 정통부, 환경부 등)
- 해외원조 NGO와 정부간 **상설화된 정책협의회** 필요

□ 대의원조의 효율화 및 홍보

- 비교우위가 있는 개발경험 및 제도개선 분야에 집중지원
- 사후관리·평가 강화 및 지방정부·기타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원조액 통계 작성
- 대국민 홍보 강화
 - NGO에 대한 지원(현재 KOICA 예산의 0.23%) 및 협력 강화
 - 대의원조에 대한 학교·시민교육 활성화 및 적극적인 홍보

4. 향후 추진계획(안)

- (무상)원조관련법 제정(외교부)
- 부처간, 민·관 협의체계 구축(외교부, 재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대국민 홍보 강화(외교부)

【첨부】

우리나라 대외원조 현황

□ 연도별 대외원조 현황

(단위:백만USD)

구분		'98	'99	'00	'01	'02	'03
양자원조	유상	87.5	92.4	83.4	118.5	140.1	99.7
	무상	37.2	38.9	47.8	53.0	66.7	145.5*
	소계	124.7	131.3	131.2	171.5	206.8	245.2
다자원조		58.0	186.1	80.9	93.1	72.0	120.7
합계		182.7	317.4	212.1	264.6	278.8	365.9
대외원조/GNI(%)		0.058	0.079	0.047	0.063	0.06	0.06

* 對이라크지원(40백만불) 아프간지원(21백만불) 포함

□ 무상원조

- 122개국 총 1.8억불(*2,200억원) 지원('04)
 - *이라크 재건지원(660억원) 및 중동 특별지원(360억원) 예비비 1,020억원 포함
- 지원비중은 아시아 68%, 아프리카 12.7%, 중남미 10.2%, 구주 7.8%, 중동 3.3%, 국제기구 1.3%
 - 10대 지원대상국 : ①베트남(680만불), ②인니500만불), ③필리핀(463만불), ④중국(430만불), ⑤캄보디아(348만불), ⑥미얀마(297만불), ⑦라오스(290만불), ⑧페루(190만불), ⑨태국(184만불), ⑩몽골(168만불)
- 무상원조는 현금, 현물, 프로젝트, 컨설팅의 형태로 이루어짐

□ 유상원조

- '01년 처음으로 1억불을 초과하였으며, '02년에 최고(1.4억불)를 기록
- 금리, 상환기간 등 지원조건이 선진국에 비해 불리하여 경험 역량을 저해
 - 일본 JBIC 엔차관에 비해 금리가 1.6% 높고 상환기간은 10년이 짧음
- 분야별로는 교통(26%), 통신(23%), 에너지(12.6%), 보건(11%), 교육(7.6%)
 - 10대 지원대상국 : ①중국(2.33억불), ②베트남(1.82억불), ③인도네시아(1.78억불), ④스리랑카(1.77억불), ⑤방글라데시(1.25억불), ⑥필리핀(1.08억불), ⑦미얀마(85백만불), ⑧루마니아(81백만불), ⑨우즈베키스탄(77백만불), ⑩캄보디아(65백만불)

대외원조의 개선방안 요약본 III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4. 12. 16

1. 추진배경

- 최근 국제협력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개도국의 빈곤퇴치**로서, 이를 위해 유엔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결의
 - 2000년 9월 유엔총회에서는 2015년까지 절대빈곤층을 절반수준으로 삭감시킨다는 밀레니엄개발목표를 채택하였고 20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 등에서 개도국 ODA 지원확대를 결의

- 우리나라는 무역과 투자면에서 개도국에 대한 의존도가 50% 수준을 넘어섰으나 **對개도국 원조수준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음
 - 국제적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기반마련** 시급

-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ODA의 양적, 질적 개선을 위해 2002년 12월부터 관계부처 및 시민사회단체와 논의를 진행시켜 왔음

2. 현황과 문제점

- ODA 현황
 - 연간 ODA 규모는 2003년 365.9백만불로 ODA/GNI(국민총수입) 비율은 0.06%임

- 문제점
 - ODA 지원규모 부족
 - ODA/GNI 비율이 0.06%로서 국제목표(0.7%)의 1/11,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평균(0.25%)의 1/4 수준
 - 특히,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03) US\$12,000과 비슷한 시점의 일본과 비교할 때 일본('85)의 1/5수준에 불과
 - ODA 지원체계 및 효과 미흡
 -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 유상원조는 재정경제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상호협의를 미흡
 - 수원국에 대한 무상과 유상원조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됨이 없이 따로 제공됨으로써 원조의 성과가 낮음

3. ODA 개선방안

□ 양적 개선 목표

- 2009년까지 ODA 규모를 GNI의 0.1% 수준으로 확대
 - 2003년 GNI를 기준(연간 4% 성장)으로 2009년 729.4백만불 수준으로 증액
 - 2003년 ODA의 약 2배 수준으로 연간 6천만불 증액 필요

□ 질적 개선 목표

- 국제기준에 맞는 한국형 원조모델 마련
 - 인도적·정치적·경제적 가치를 통합한 한국적 협력모델을 마련하고 비교우위가 있는 개발경험 및 제도개선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
- 원조대상의 선택과 집중
 - 아시아지역 등 중점지원국을 선정하고 수원국 중심의 국별 원조프로그램을 작성하여 ODA 사업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도모
- 효율적 집행을 위한 국내 기반 강화
 - 대외원조 규모가 확대되고 분야도 전문화, 다양화되고 있으나 ODA 관련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개발컨설턴트 및 전문인력 육성 필요
 - 원조의 사후관리 및 평가를 강화하고, 지방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의 원조액 등 ODA 통계를 정확히 산출하여 원조의 효과성 제고 및 국제 홍보 강화

4. 향후 추진방안

□ 무상원조 관련법 제정

- 현재 무상원조는 한국국제협력단법, 유상원조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원조에 관한 목표와 주요방침이 포함되어 있지 못함
- 원조의 이념, 목적, 각 부처간 ODA 사업조정, 민간참여 확대, 중기 ODA 사업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무상)원조관련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외교부)
 - 외교부에서는 이전에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를 포괄하는 대외원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재경부의 반발로 무산

□ 부처간, 민·관 논의구조 마련

- ODA 관련 중·장기기본계획, 유·무상 지원비율 조정, ODA 홍보, 국별 유·무상원조 지원계획, 대외 ODA 기본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부처간 협의체계 필요
 - 외교부, 재경부, KOICA, 수출입은행,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부처간 실무급 조정위원회 추진
 - 무상원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무상원조 부처들간에도 협의체계 필요

- 무상지원 및 유상지원 정책에 해외원조 NGO가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 정책협의회**와 같은 상설화된 협의체계 구축 필요

□ ODA에 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강화

- 대외원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은 매우 낮아 2003년 조사에 의하면 52.6%가 원조 규모의 '축소 또는 중단'에 응답(ODA는 \$6/인 수준)
- ODA에 대한 공교육 및 시민사회 교육 강화, 중고생·대학생 및 가족참여 단기 봉사 체험프로그램 확대, 기업·공무원·여론 주도층·예산담당기관(국회 및 기획예산처)·언론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대외원조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4. 11. 27
(대외원조정책개선방안 워크샵, 양평 한화콘도)

□ ODA의 양적,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제안을 함.

1. 2009년까지 ODA 규모를 GNI의 0.1% 수준으로 확대

2. ODA의 질적구조 개선이 필요

- 1) 국별 프로그램 수립
- 2) 국가별 선택과 집중이 필요(아시아지역에 집중하되 다른 나라로 확대)
- 3) 프로그램 영역별 내용의 체계화
- 4) 수원국 중심의 접근
- 5) 국제기준에 맞는 한국형 원조모델 마련
- 6) 전문가 육성
- 7) 대국민 홍보
- 8) 사후관리 및 평가 강화
- 9) 통계작성의 질적 개선

3. ODA의 양적, 질적 구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 1) 부처간, 민-관 ODA 논의구조 강화
 - 유-무상 추진 부처간 협의체 구성
 - 무상원조관련 부처간 협의체 구성
 - 대외원조관련 정부-NGO 협의체 구성
- 2) 무상원조에 국한된 관련법 제정 추진
- 3) 대국민 홍보
 - 대학내 KOICA, EDCF 관련 강좌 개설
 - NGO 프로젝트와 NGO 개발교육 프로그램 지원
 - ODA 관련 학생 및 교육자, 시민 교육 활성화
 - 원조예산 항목에 홍보예산 포함
 - 국회 및 기획예산처, 언론의 인식제고 및 홍보 강화
 - 공교육에서 ODA 교육 강화
 - 해외홍보 필요
 - 대학생 대상 프로그램 활성화
 - 체험을 통한 이해와 홍보(대상자 다양화, 확대)
 - 기업, 정부 공무원, 여론 주도층에 대한 ODA 교육

우리나라 대외원조(ODA)정책의
개혁과제와 개선방안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우리나라 대외원조(ODA)정책의 개혁과제와 개선방안

(요약 및 수정본 2004. 6. 25)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

-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는 국가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계획하고 촉진시켜 나가기 위한 다자협의기구임.
 - 현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구차원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회의에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함.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국제회의에서 논의되고 결의된 사항들을 국가차원에서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가보고서를 매년 UN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에 제출함.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02년 9월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서 결의된 지속가능발전을 지구차원에서 촉진시키기 위한 주요과제를 국가차원에서 충실히 이행할 의무를 갖고 있음.
 - WSSD에서는 지구차원에서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빈곤문제 해결이 절실한 과제라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빈곤퇴치 방안으로 ODA 증액, 시민사회 참여 등이 제안되었음.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현재 국민총수입(GNI)의 0.06%선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의 ODA 증액을 위해 각 부처와 관계기관,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하기로 결의
-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회분과에서는 지난 12월 ODA 소위(소위위원장: 신혜수)를 구성
 - 관계전문가 및 정책담당자들과 7차례의 소위 활동을 통해 ODA 규모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우리나라 ODA 정책의 개혁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함.

나. 정책연구 목적

- 세계화와 함께 개도국들의 주변화와 빈곤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확대되면서, 빈곤퇴치가 국제협력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개도국 원조확대가 국제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
 - 세계화와 함께 환경, 여성, 인구, 보건 등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적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음.
 - 특히 빈곤퇴치는 WSSD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었고, 이를 위해 유엔은 물론 OECD, 세계은행(IBRD/WB), 국제통화기금

- (IMF) 등 국제사회에서 공동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음.
-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무역과 투자면에서 개도국에 대한 의존도가 50% 수준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對개도국 원조수준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고, 국제적 개발협력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기반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는 개도국의 빈곤퇴치 및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과 과제를 연구·분석하여 향후 원조정책의 개선방안과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 21세기 국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ODA정책이 필수적이고,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면서 개도국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전제로 ODA 정책의 개혁방향을 한국형 국제협력모델과 원조이념의 정립, 원조정책의 체계화·선진화, 국민참여 및 지지확대로 설정하고, 원조정책의 개혁을 위한 세부추진방안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2. 국제개발협력의 현황과 쟁점

- 1990년대 이후 국제개발협력의 기본방향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환경, 보건, 교육, 개발과 여성(Gender and Development) 등 범세계적 과제에 역점
 - 유엔환경개발회의(브라질 리우, 1992.6) 이후 1994년 9월 세계인구회의, 1995년 3월 사회개발정상회의, 1995년 9월 세계여성회의 등이 개최되면서 전지구적 문제에 대한 지원이 적극 모색되기 시작함
- 최근 국제협력의 주요 정책목표는 개도국의 빈곤퇴치로서, 유엔 밀레니엄 선언(2000.9)을 통해 2015년까지 절대빈곤층을 절반수준으로 삭감시킨다는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설정
 - 유엔주도하에 몬테레이 개발재원회의(멕시코, 2002. 3)와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요하네스버그, 2002.9)를 개최하여 개도국 ODA 지원확대를 결의하고, 국제적 지원체제를 강화
- 국제적으로 합의된 ODA/GNI 비율은 0.7%이나, OECD/DAC 회원국 평균은 0.22% 수준임.
 - 그러나 몬테레이 합의이후 DAC 회원국들은 ODA 증액을 약속하고, 2006년까지 686억불 수준으로 원조공여를 확대기로 함.
 - 2001년 대비 31% 증가한 규모로서 DAC 평균으로 ODA/GNI비율은 0.26% 전망

< 참고 >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

- 2000. 9월 UN총회에서 채택된 밀레니엄 선언에서 빈곤퇴치를 목표로 개발재원회의와 제3차 최빈국회의 성공을 위해 노력키로 결의
 - 특히 OECD/DAC(개발원조위원회) 고위급 회담(96.5)에서 채택한 “Shaping the 21st Century :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에서 제시된 국제개발목표(IDGs)를 재확인
- 밀레니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는 모든 유엔회원국이 달성해야할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
 - ① 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 하루 1불 이하인구와 기아인구를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추기로 함.
 - ② 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 전체 아동에게 초등교육 완전보급
 - ③ 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 모든 교육에서 성별 격차제거
 - ④ Reduce child mortality :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을 2/3 낮춤
 - ⑤ Improve maternal health : 출산사망률을 3/4 낮춤
 - ⑥ Combat HIV/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s : 후천성면역결핍증, 말라리아 등의 질병으로부터 보호
 - ⑦ 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지속가능발전 원칙의 각국 도입, 안전한 식수를 마실수 없는 인구를 절반으로 낮춤, 1억 도시 빈민인구의 삭감
 - ⑧ Develop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 개발을 위한 국제지원체제 강화, 특히 최빈국, 내륙 및 도서국가, 외채문제, 청년일자리, 필수약품, IT분야지원

< 표 1 > DAC 회원국의 ODA지원실적비교 (단위 : 백만 USD, %)

국 가 명	2001		2000		2006 목표	
	ODA	ODA/GNI	ODA	ODA/GNI	ODA	ODA/GNI
호 주	873	0.25	987	0.27	964	0.25
오스트리아	533	0.29	423	0.23	676	0.33
벨 기 에	867	0.37	820	0.36	1,368	0.53
캐 나 다	1,533	0.22	1,744	0.25	2,252	0.28
덴 마 크	1,634	1.03	1,664	1.06	1,489	0.85
핀 란 드	389	0.32	371	0.31	514	0.39
프 랑 스	4,198	0.32	4,105	0.32	6,740	0.46
독 일	4,990	0.27	5,030	0.27	6,708	0.33
그 리 스	202	0.17	226	0.20	427	0.33
아 일 랜 드	287	0.33	235	0.30	591	0.62
이 탈 리 아	1,627	0.15	1,376	0.13	3,948	0.33
일 본	9,847	0.23	13,508	0.28	8,500	0.20
룩셈부르크	141	0.82	123	0.72	189	1.00
네 델 란 드	3,172	0.82	3,135	0.84	3,410	0.80
뉴 질 란 드	112	0.25	113	0.25	123	0.25
노 르 웨 이	1,346	0.83	1,264	0.80	1,799	1.00
포 루 투 갈	268	0.25	271	0.26	390	0.33
스 페 인	1,737	0.30	1,195	0.22	2,090	0.33
스 웨 덴	1,666	0.81	1,799	0.80	2,277	1.00
스 위 스	908	0.34	890	0.34	1,097	0.37
영 국	4,579	0.32	4,501	0.32	6,321	0.40
미 국	11,429	0.11	9,955	0.10	16,692	0.15
DAC 합계	52,336	0.22	53,734	0.22	68,566	0.26
* 한 국	265	0.063	212	0.047	-	-

자료:1) OECD/DAC, *Development Cooperation : 2002 Report*, 2003.

2) 2006년 목표는 OECD/DAC 고위급회담 배포자료(2003. 4. 22)

주: DAC 회원국은 1999년 그리스 가입으로 총 22개국임.

3. 우리나라 ODA의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ODA의 연간규모는 1993년 이후 1억불 수준을 넘어서고, 2000년에는 21,210만불, 2001년에는 26,470만불을 기록
- － 우리나라의 ODA/GNI 비율은 0.063%로서 국제목표의 1/10, DAC 평균의 1/4 수준에 불과하고,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국가의 지원수준에 크게 미달되어 있음

< 표 2 > 우리나라의 ODA 공여실적 (단위 : 백만 USD)

구 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ODA총계	57	77	112	140	116	159	186	183	318	212	265
(유상원조)	(14.8)	(16.3)	(42.9)	(63.2)	(28.4)	(69.9)	(66.2)	(83.6)	(81.4)	(76.7)	(116.6)
(무상원조)	(42.6)	(60.4)	(68.6)	(77.0)	(87.6)	(89.2)	(119.4)	(99.1)	(236.1)	(135.4)	(148.1)
전체증감율(%)	△6.0	33.6	45.3	25.7	△17.3	37.2	16.6	△1.6	73.8	△33.2	24.8
◦양자간원조	31.52	45.22	60.12	60.07	71.46	123.31	111.34	124.70	131.35	131.19	171.54
- 무상원조 ¹⁾	25.04	30.99	32.68	38.45	50.11	53.41	54.77	37.21	38.95	47.78	52.97
- 유상원조 (EDCF)	6.48	14.23	27.44	21.62	21.35	69.90	56.57	87.49	92.40	83.41	118.57
◦다자간원조	25.96	31.58	51.44	80.15	44.53	35.84	74.27	58.01	186.18	80.88	93.11
- 국제기구 증여 ²⁾	5.78	8.01	10.25	12.88	14.82	30.08	29.06	33.60	67.70	26.05	35.40
- 국제금융기구출연 ³⁾	11.82	21.47	25.67	25.65	22.68	5.76	35.53	28.31	129.46	61.52	59.74
- 기타 ⁴⁾	8.36	2.10	15.52	41.62	7.03	-	9.68	-3.90	-11.02	-6.69	-2.03
ODA/GNI 비율 (%)	0.02	0.025	0.034	0.037	0.026	0.033	0.042	0.058	0.079	0.047	0.063

- 주 : 1) KOICA무상원조, 각 부처의 ODA
 2) 국제기구(UN기구 등) 분담금
 3)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AfDB 등) 출연금
 4) 기타 국제기구와 융자금 지원

자료 : 외교통상부·재정경제부

- 현재 우리나라의 양자간 ODA는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로 실시체제가 이원화되어 있음.
 - 증여에 해당하는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은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시행하고 있으며, 유상협력자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재정경제부 관리하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위탁, 집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 對개도국 원조 수준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고, 국제적 개발협력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기반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원조정책의 안정적인 운용과 일관성 확보, ODA 규모 확대에 대비한 원조정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됨.

- 특히 원조정책 수립 및 조정기능이 취약하고, 실시기관간에도 업무협력체제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 ODA의 운용 및 시행에 있어서 많은 비효율성을 낳고 있음.

4. 대외원조정책의 개혁방안

- 우리나라 ODA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기본방향을 ▲한국형 국제협력모델과 원조이념의 정립 ▲원조정책의 체계화·선진화 ▲국민참여 및 지지확대로 설정
 -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적 국제협력모델을 위한 원조철학과 이념으로는 △개발파트너십 강화 △상호의존성의 확대·심화 △국제적 인도주의와 전지구적 과제 추진 등의 내용을 정립
 - 원조정책의 체계화·선진화를 위해 중장기적 원조정책을 수립하고, ODA의 계획성, 효율성, 효과성 제고에 중점을 둔 제도적 개선 추진
 - 국별지원계획 작성, 개발조사사업 강화, 원조사업의 패키지화를 위한 업무 제휴 강화 등 효율적인 ODA 운용방안 강구
 -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ODA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적 참여와 지지기반 확대
 - ODA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 및 체계적인 국민홍보 강화
 - 개발NGO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NGO 등 시민사회 및 민간부문의 협력강화
-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우선 시급한 과제는 ODA 규모를 절대적으로 증액하는 원조배증계획 추진
 - 2006년까지 원조규모 배증과 GNI대비 0.1% 실현이라는 증액목표를 설정하고, 무상원조 비중을 5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아시아 최빈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중점지원국을 선정, 국별원조프로그램을 작성하여 ODA 사업의 계획성과 효율성 도모
 - 원조사업의 신축성을 위해 3~5년간을 원조주기로 설정하고, ODA 사업의 다년간 예산 집행을 추진
- 한국적 협력모델에 입각하여 개발경험 및 제도개선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국비유학생 초청 및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중점
 - 우리나라에 비교우위가 있는 사업부문을 중심으로 전략적 지원분야와 중점 지원분야를 선정하고 한국적 협력모델에 입각하여 선정기준을 구체화
 - 비교우위가 있는 개발경험 및 제도개선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인적자원개발(HRD) 및 제도적 기반 구축사업에 지원을 집중
 - 이를 통해 개도국 경제 및 사회구조를 이해하고 수원국 개발정책 수립의

- 초기단계부터 기여할 수 있는 협력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 개발NGO를 통한 ODA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방식 및 참여부문을 다양화
 - 최근 국제사회 대외원조의 추세는 민간과 NGO 등 시민사회와의 상호연계 아래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특히 Grass-roots Level(풀뿌리 차원)의 원조프로그램이 중요해지면서 OECD/DAC 평균으로 ODA총액의 4.7%(2000~2001년 평균)를 자국의 개발NGO를 통하여 시행
 - 그러나 2001년 한국 ODA집행 내용을 볼 때, KOICA의 개발NGO를 통한 ODA 지원은 78.8만불(약 10억원)로서 우리나라 총 ODA의 0.3%에 불과한 실정임

5. 정책과제

- ODA의 제도적 기반 확충
 - 원조정책의 안정적인 운용과 일관성 확보, ODA 규모 확대에 대비한 원조정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됨.
 - 그 정책대안으로는 개발협력 관련 ‘대외원조법(가칭)’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대외원조현장(ODA현장)’을 공표할 필요성이 있음.
 - 대외원조법 제정 필요
 - 대외원조법의 경우 국회승인을 통해 법적 구속력이 담보되고, 대내외적으로 원조정책의 목표와 주요 방침을 명확히 함으로써 원조정책의 일관성 확보 및 국민적 지지 확보에 유리
 - 원조환경 및 시대의 변화에 따른 원조대상국가, 원조액, 원조절차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임.
 - 대외원조현장 제정 문제
 - 정부차원에서 공표하는 정책선언으로서 원조에 관한 이념, 철학,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획득하고, 원조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
 - 대외원조현장은 대외원조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할 수도 있고, 별도로 제정할 수 있을 것임
- 원조정책심의회 설치
 - 개도국 원조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원조정책심의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여 원조프로그램 및 중장기 원조정책 심의, 원조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지침 결정, 사업의 평가, 정기보고서 작성 등의 중심적 역할 수행
 - 관련부처간의 긴밀한 협의·조정 및 원조기관간의 유기적인 업무체제를 구축
 - 무상원조 담당기관인 KOICA의 전문적인 업무능력 제고 및 기능강화를 위해 인적·제도적 개혁방안 마련

- 중장기적으로 원조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전문화를 위하여 “대외원조청”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발컨설턴트 및 전문인력 육성
 - 대외원조분야가 전문화·다양화되고 있으나, ODA 관련 전문가가 부족
 - 정부는 물론 대학, 개발NGO 등 전반적으로 인력양성을 체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협회나 기관설립이 시급함
 - 중장기적으로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국제대학원이나 특정 대학에 개발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재정지원 및 정부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 정부지원하에 ‘국제개발협회’를 구성하여 3~6개월의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제컨설팅 업무를 병행 추진토록 함
- ODA 통계작성의 수정·보완
 - OECD/DAC 통계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지방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의 원조액을 조사하고, 북한에 대한 ODA 지원액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실제 ODA 통계치를 정확히 산출하여야 할 것임
 - 현재 대북 지원사업은 국가간의 원조가 아닌 민족내부 특수관계로 보아 통일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WTO 협정 비준시 국회에서 북한과의 거래를 내국민거래로 규정한 점, 헌법상 북한의 지위 문제 등이 고려되어 ODA 추계에서 제외되어 있음
 - 그러나 국제적으로 북한 지원문제가 보다 본격화될 전망이고, 매년 우리나라의 대북지원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지원에 대한 우리정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측면에서도 ODA통계에 對북한 인도적 지원액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DAC(OECD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추진
 - OECD 회원국으로서 국제협력에 있어서 역할분담이라는 공동의무는 회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2006년을 목표로 OECD/DAC 가입을 적극 추진
 - DAC 가입을 위해서는 GNI대비 ODA 비율을 0.1%이상으로 유지하면서, DAC의 평균수준 정도에 근접한 규모를 달성해야 하므로 중장기 계획하여 체계적인 가입방안 마련
 - 이를 위해 향후 5년간을 원조정책의 ” 개혁기” 로 설정하여, ODA 규모의 양적 증대를 최우선과제로 상정하고, ODA 배증계획과 함께 원조사업의 효율적 운용방안과 원조운용체제 개선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원조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여 GNP 대비 ODA 비율이 2006년에 DAC 회원국 최저수준인 0.1% 수준까지 증가하면, OECD 가입 10주년인 2006년을 목표로 DAC 가입을 추진
 - 그 이후 4년간은 원조정책의 “도약기” 로 설정하여 2007년~2010년내에

- DAC 평균수준인 0.2%까지 원조를 단계적으로 증대해야 할 것임.
- DAC 가입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ODA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향후 개도국과의 개발협력기반 확대에 기여
 -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개도국에 대한 적정지원과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 경제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임.

우리나라 대외원조(ODA)정책의 개혁과제와 개선방안 (초안 2003. 9. 27)

제1장 정책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는 국가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계획하고 촉진시켜 나가기 위한 다자협의기구임.
 - 현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구차원의 지속가능발전 국제회의와 관련된 국제회의에 대표성을 갖고 참여함.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국제회의에서 논의되고 결의된 사항들을 국가차원에서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가보고서를 매년 UN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에 제출함.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02년 9월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서 결의된 지속가능발전을 지구차원에서 촉진시키기 위한 주요과제를 국가차원에서 충실히 이행할 의무를 갖고 있음.
 - WSSD에서는 지구차원에서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빈곤문제 해결이 절실한 과제라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빈곤퇴치 방안으로 ODA 증액, 시민사회 참여 등이 제안되었음.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현재 국민총수입(GNI)의 0.06%선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의 ODA 증액을 위해 각 부처와 관계기관,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하기로 결의
-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회분과에서는 지난 12월 ODA 소위(소위위원장: 신혜수)를 구성
 - 관계전문가 및 정책담당자들과 7차례의 소위 활동을 통해 ODA 규모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우리나라 ODA 정책의 개혁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함.

2. 정책연구 목적

- 세계화와 함께 개도국들의 주변화와 빈곤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확대되면서, 빈곤퇴치가 국제협력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개도국 원조확대가 국제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
 - 세계화와 함께 환경, 여성, 인구, 보건 등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

적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음.

- 특히 빈곤퇴치는 WSSD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가장 중요한 목표로서 제시되었고, 이를 위해 유엔은 물론 OECD, 세계은행(IBRD/WB),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사회에서 공동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음.
 -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무역과 투자면에서 개도국에 대한 의존도가 50% 수준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對개도국 원조수준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고, 국제적 개발협력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기반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는 개도국의 빈곤퇴치 및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과 과제를 연구·분석하여 향후 원조정책의 개선방안과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 21세기 국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ODA정책이 필수적이고,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면서 개도국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전제로 ODA 정책의 개혁방향을 ▲ 한국형 국제협력모델과 원조이념의 정립 ▲ 원조정책의 체계화·선진화 ▲ 국민참여 및 지지확대로 설정하고, 원조정책의 개혁을 위한 세부추진방안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제2장 국제개발협력의 현황과 쟁점

1. 국제개발목표와 협력이슈

가. 개발협력정책의 주요흐름

- 개발협력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1960년대에는 남북협력 차원에서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중점을 둔 거시경제적 지원으로 추진
 - 1970년 9월 유엔은 「제2차 유엔개발 10년」을 채택, 개도국 지원을 위한 ODA의 국제적 목표로서 GNP 대비 0.7%를 제시하고, 최빈개도국(LDC)에 대한 지원확대를 결의
-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저개발과 빈곤의 악순환이 심화됨에 따라 거시적, 성장목표적인 원조방식에서 미시지향적, 후생목표적 방식으로 전환
 - OECD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도 보건, 위생, 상하수도, 영양개선사업 등 기본육구충족(BHN: Basic Human Needs)에 역점
-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세계경제의 침체와 개도국 외채누증문제로 인한 경제불안정 심화로 국제금융기관의 역할이 확대됨
 - 국제통화기금(IMF) 주도로 국제수지 적자축소와 경제의 효율성 제고에 우선을 둔 시장지향형 구조조정과 개혁정책을 강화
- OECD개발원조위원회(DAC)는 1989년 발표한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1990s」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1990년대의 개발협력을 위한 중점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 바 있음.
 - 개도국의 자조노력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sustainable economic growth)과 공평한 소득분배, 환경보전과 지속적 개발을 위한 인구증가의 억제를 핵심적 과제로 제시
 - 구조조정과 생산적 민간부문의 역할이 확대된 광범위한 기반위의 경제성장(broad-based economic growth) 추진
 - 참여적 개발(participatory development)에 의한 최종수요자의 필요에 부응하여 민간부문의 활성화, 인력개발 및 여성의 참여, 지방정부차원의 의견 반영 등을 통해 원조사업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분권화 도모
- 1990년대 원조정책의 기본방향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환경, 보건, 교육, 개발과 여성(Gender and Development) 등 범세계적 과제에 역점
 - 유엔환경개발회의(1992년 6월) 이후 1994년 9월 세계인구회의, 1995년 3월 사회개발정상회의, 1995년 9월 세계여성회의 등이 개최되면서 전지구적 문제에 대한 지원이 적극 모색되기 시작함.

나. 최근 원조정책의 주요방향

◇ 개도국의 빈곤퇴치에 초점을 두고, 국제적 지원체제를 강화

⇒ 2015년까지 빈곤층을 절반수준으로 삭감시킨다는 국제개발목표를 설정

- 세계경제체제의 상호의존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저개발국들의 주변화와 빈곤화가 심화됨에 따라 개도국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확대되어 왔음.
 - 1996년 5월 OECD개발원조위원회(DAC)는 「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이하 新개발전략」을 채택²⁾
 - OECD개발원조위원회(DAC)는 2015년까지 빈곤층을 절반수준으로 삭감시킨다는 국제개발목표를 설정
- 국제협력의 주요 정책목표가 개도국의 빈곤퇴치로 부각되면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도 고채무빈곤국(HIPC)의 외채탕감 및 국제적 지원체제를 강화
 - 특히 세계은행은 1999년 개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포괄적 개발체제(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 CDF)를 구축, 중점지원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은 CDF와 연계하여 외채탕감과 빈곤퇴치를 위해 자금지원 대상국가들에게 자구안으로서 빈곤경감 전략보고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PRSP)를 작성케 하고, 이를 토대로 빈곤경감융자(Poverty Reduction Credit)를 공여
 - 따라서 빈곤경감전략보고서(PRSP)는 수원국 스스로가 빈곤완화를 위한 자구책을 작성, 주요 정책 및 행동계획을 입안하여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에 제출
 - * 이를 토대로 양기관은 수원국의 자구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주요 원조국과 종합적인 지원 체제를 강구하고 있음.
- 개도국의 지속적 성장과 빈곤퇴치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유엔총회뿐만 아니라 OECD 각료이사회(39차, 2000년 6월), 유엔 밀레니엄 선언(55차 총회, 2000년 9월), 제3차 최빈국회의(2001년 5월) 등을 통해 본격화
 - UN은 제52차 총회(1997년)와 제54차 총회(1999년)를 통해 개도국들의 성장기반 확대를 위한 개발재원(Financing for Development: FfD) 동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결정
 - OECD 각료이사회에서는 개도국 외채탕감을 위해 OECD 가맹국의 재정거출과 공평한 부담을 확인하고, 개발재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자고 합의하였음.

2) OECD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Cooperation : Effort and Policies of the Member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1996 Report*, 1999. 2, pp. 12~27 참조.
DAC는 빈곤삭감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국제적인 지원과 개도국의 자조노력 확대에 역점을 두고, 2015년을 목표연도로 빈곤삭감전략을 채택

-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는 개발재원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2015년을 목표년도로 빈곤퇴치전략의 적극적 추진을 명시한 밀레니엄 선언 채택
- 제3차 최빈국 회의(2001년 5월)에서는 최빈국에 대한 ODA 지원 확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채택(2001년 4월)된 최빈국 원조의 언타이드화, 고채무빈곤국(HIPC) 이니셔티브의 착실한 추진 등이 결의됨.

< 참고 >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

□ 2000.9월 UN총회에서 채택된 밀레니엄 선언에서 빈곤퇴치를 목표로 개발재원회의와 제3차 최빈국회의 성공을 위해 노력키로 결의

- 특히 OECD개발원조위원회(DAC) 고위급 회담(96.5)에서 채택한 “Shaping the 21st Century :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에서 제시된 국제개발목표(IDGs)를 재확인

□ 밀레니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는 모든 유엔회원국이 달성해야할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

- ① 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 하루 1불 이하인구와 기아인구를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추기로 함.
- ② 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 전체 아동에게 초등교육 완전보급
- ③ 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 모든 교육에서 성별 격차제거
- ④ Reduce child mortality :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을 2/3 낮춤
- ⑤ Improve maternal health : 출산사망률을 3/4 낮춤
- ⑥ Combat HIV/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s : 후천성면역결핍증, 말라리아 등의 질병으로부터 보호
- ⑦ 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지속가능발전 원칙의 각국 도입, 안전한 식수를 마실수 없는 인구를 절반으로 낮춤, 1억 도시 빈민인구의 삭감
- ⑧ Develop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 개발을 위한 국제지원체제 강화, 특히 최빈국, 내륙 및 도서국가, 외채문제, 청년일자리, 필수약품, IT분야지원

-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가 설정된 이후 UN 개발재원회의(멕시코, 2002년 3월)와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요하네스버그, 2002년 9월) 개최
- 멕시코 몬테레이 개발재원회의에서는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개발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밀레니엄 선언과 국제적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 지원체제 수립과 개발재원 동원에 역점
- 요하네스버그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에서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의제 21(Agenda 21)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89개국 6만여 명이 참여함으로써 큰 주목을 받았음.
- 개도국 개발과 환경문제를 연계한 실천계획 수립에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환경과 개발의 문제를 연계한 지속가능발전에 대하여 범세계적 차원의 관심과 의지를 확인하였음.
- 특히 밀레니엄 선언에서 제시된 바 있는 2015년까지의 절대빈곤층을 반감시키겠다는 밀레니엄개발목표를 재확인하고, 식수, 어장 보호, 생물다양성

- 보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성공
- WSSD를 통해 각국 정부는 물론, 학계, 기업 및 비정부민간단체(NGO) 등의 적극적인 관심하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선언문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채택함으로써 향후 국제협력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였음.

2. ODA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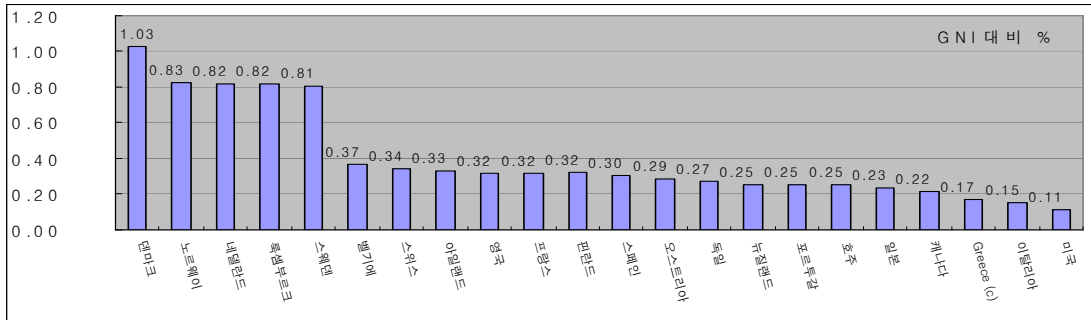
가. ODA의 양적 규모

◇ 국제적으로 합의된 양적 목표는 국민총수입(GNI)의 0.7%
 ⇒ 최빈국에 대해서는 ODA/GNI 0.15 ~ 2.0%

- ODA 양적 기준으로서 'GNP대비 0.7%'는 1970년대 이후 UN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국제적 개발목표라고 할 수 있음³⁾
 - 1969년 피어슨위원회가 작성한 「Partners in Development」 보고서에서 권고한 GNP대비 0.7%의 ODA 지원기준은 1970년 9월 「제2차 UN 개발 10년」에 국제개발전략으로 공식적으로 채택
 - OECD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1989년 12월)는 「1990년대 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성명(Policy Statement on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1990s)」에서 GNP대비 0.7%의 ODA 공여기준을 권고
- 작년 몬테레이 개발재원회의(2002.3)에서는 적정 ODA 규모를 연간 1000억불 수준으로 추정하였음
 - 최빈국에 대한 지원비율을 국제적 합의 수준인 GNP대비 0.15 ~ 0.20%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
- 현재 OECD개발원조위원회(DAC) 평균은 0.22% 수준이고, GNP대비 0.7%에 도달한 국가는 다음과 같은 북유럽의 몇 나라임
 - 2001년 기준으로 OECD개발원조위원회(DAC) 22개 회원국중에서 덴마크(1.03%), 노르웨이(0.83%), 룩셈부르크(0.82%), 네델란드(0.82%), 스웨덴(0.81%) 등 5개국에 불과한 실정임

3) ODA의 양적 기준으로 1999년부터 국민총수입(GNI)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당초 GNP(국민총생산)대비 ODA 비율로 국제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GNP를 그대로 표기하였음. 참고로 실질 GNI와 실질 GDP는 실질 GNP가 실질 GDP에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을 더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수치상 차이가 있으나, 명목 GNP는 물량변화 외에도 교역조건 변화, 임금 및 기술수준, 기술채산성 등이 반영되어 있는 소득지표이므로 명칭만 명목 국민총수입(GNI)로 변경되었을 뿐 동일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GNP와 GNI를 혼용하였음.

< 도표 1 > OECD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ODA/국민총수입(GNI)비교(2001년)



자료 : OECD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Cooperation : 2002 Report*

- 그러나 몬테레이 합의이후 OECD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은 ODA 증액을 약속하고, 2006년까지 686억 불 수준으로 원조규모 확대를 추진
 - 전체적으로 2001년 대비 31% 증가한 규모로서 OECD개발원조위원회(DAC) 평균적으로 ODA/GNI비율은 0.26%를 기록할 전망이다(표 1 참조).
 - 특히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는 원조배증 목표를 제시하였고, 미국의 경우 2001년 0.11%에서 2006년에는 0.15%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
- 한편 최빈국에 대한 지원규모도 그동안 많은 논란을 거듭해 왔는데, 1980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제3차 UN 개발 10년」에서 최빈국(LDCs)을 위한 별도의 목표가 채택
 - 1980년대 전반기까지 GNP대비 0.15%를 설정하고, 80년대 후반까지 0.20%로 증가시키도록 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1981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1차 최빈국회의에서는 동 목표를 재확인
- 그러나 2001년 현재 OECD개발원조위원회(DAC) 평균적으로 최빈국에 대한 ODA/GNI 비중은 0.09%로 대다수 국가들이 국제적 목표에 미달
 - 노르웨이(0.52%), 덴마크(0.36%), 스웨덴(0.35%), 네덜란드(0.26%), 핀란드(0.25%), 포르투갈(0.20%), 프랑스(0.18%), 벨기에(0.15%) 등이 국제수준에 부합

< 표 1 > OECD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ODA지원실적비교
(단위 : 백만 USD, %)

국 가 명	2001		2000		2006 목표	
	ODA	ODA/국민총 수입(GNI)	ODA	ODA/국민총 수입(GNI)	ODA	ODA/국민총 수입(GNI)
호 주	873	0.25	987	0.27	964	0.25
오스트리아	533	0.29	423	0.23	676	0.33
벨 기 에	867	0.37	820	0.36	1,368	0.53
캐 나 다	1,533	0.22	1,744	0.25	2,252	0.28
덴 마 크	1,634	1.03	1,664	1.06	1,489	0.85
핀 란 드	389	0.32	371	0.31	514	0.39
프 랑 스	4,198	0.32	4,105	0.32	6,740	0.46
독 일	4,990	0.27	5,030	0.27	6,708	0.33
그 리 스	202	0.17	226	0.20	427	0.33
아 일 랜 드	287	0.33	235	0.30	591	0.62
이 탈 리 아	1,627	0.15	1,376	0.13	3,948	0.33
일 본	9,847	0.23	13,508	0.28	8,500	0.20
룩셈부르크	141	0.82	123	0.72	189	1.00
네 델 란 드	3,172	0.82	3,135	0.84	3,410	0.80
뉴 질 랜 드	112	0.25	113	0.25	123	0.25
노 르 웨 이	1,346	0.83	1,264	0.80	1,799	1.00
포 루 투 갈	268	0.25	271	0.26	390	0.33
스 페 인	1,737	0.30	1,195	0.22	2,090	0.33
스 웨 덴	1,666	0.81	1,799	0.80	2,277	1.00
스 위 스	908	0.34	890	0.34	1,097	0.37
영 국	4,579	0.32	4,501	0.32	6,321	0.40
미 국	11,429	0.11	9,955	0.10	16,692	0.15
DAC 합계	52,336	0.22	53,734	0.22	68,566	0.26
* 한 국	265	0.063	212	0.047	-	-

주 : OECD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은 1999년 그리스 가입으로 총 22개국임.

자료 : 1) OECD/DAC, *Development Cooperation : 2002 Report*, 2003.

2) 2006년 목표는 OECD/DAC 고위급회담 배포자료(2003. 4. 22)

나. ODA의 질적 비교

◇ ODA의 질적 측면을 나타내는 지표는 ▲ 증여비율 ▲ 증여율(Grant Element) ▲ 조건부원조 비율 등으로 나타냄.

□ 증여비율(ODA에서 차지하는 증여의 비율)의 경우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는 100% 증여방식으로 원조를 공여하고 있음(표

2 참조).

- OECD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증여비율(평균)은 총 ODA에서 85.4% (2001년 기준)에 이르고 있고, 양자간 원조에서 증여비율은 77.8%
- 우리나라의 증여비율은 총 ODA의 50.2%이고, 양자간 원조에서 30.9%에 불과

< 표 2 > ODA의 질적 측면 비교

(단위: %)

	증여/ODA		양자간 차관							
			증여율 (%)		상환기간(연)		평균거치기간(연)			
	2000	2001	2000	2001	2000	2001	2000	2001	2000	2001
호주	100.0	100.0	-	-	-	-	-	-	-	-
오스트리아	89.3	76.7	61.3	59.6	23.6	21.6	8.7	8.5	1.9	1.9
벨기에	97.4	98.0	78.9	78.7	30.3	29.5	10.4	10.0	0.5	0.5
캐나다	100.0	100.0	-	-	-	-	-	-	-	-
덴마크	100.0	99.0	-	..	-	..	-	..	-	..
핀란드	95.1	99.7
프랑스	94.2	88.7	55.2	52.4	22.1	20.3	7.2	7.4	2.3	2.5
독일	94.0	87.8	65.2	65.4	35.5	37.1	7.5	6.0	2.0	1.9
그리스	99.3	99.4
아일랜드	100.0	100.0	-	-	-	-	-	-	-	-
이탈리아	87.4	97.1	88.4	89.3	36.9	36.9	23.3	24.2	0.5	0.5
일본	50.3	51.8	73.1	72.3	34.8	34.1	11.0	9.8	1.3	1.4
룩셈부르크	100.0	100.0	-	-	-	-	-	-	-	-
네델란드	100.0	100.0	-	-	-	-	-	-	-	-
뉴질랜드	100.0	100.0	-	-	-	-	-	-	-	-
노르웨이	97.7	99.7	33.0	..	7.8	..	4.1	..	2.3	..
포르투갈	98.4	93.8	80.3	44.1	30.7	12.5	8.9	4.1	0.1	1.6
스페인	76.6	80.1	69.4	72.2	26.5	27.6	9.2	9.7	1.1	1.0
스웨덴	98.4	99.3	71.1	75.0	15.2	19.1	10.0	9.1	0.0	0.0
스위스	97.7	97.8
영국	95.5	97.7	..	43.4	..	6.0	..	6.0	..	0.0
미국	99.2	99.2	56.2	69.2	24.3	30.0	4.6	5.0	2.0	1.0
DAC계	83.6	85.4	71.9	70.2	33.7	33.0	10.8	9.2	1.4	1.5

자료 : OECD/DAC, *Development Cooperation : 2002 Report*, 2003.

□ 증여율(G.E.: Grant Element)은 양허성 기준으로서 ODA의 재무적 기준을 나타냄.

- 증여율(금융조건을 감안한 증여환산율)은 상업적 거래의 경우 0%, 증여는

100%가 적용되는데, 최소한 25% 이상이 되어야 ODA로서의 공여기준을 충족시킨다고 할 수 있음.

- OECD개발원조위원회(DAC) 평균은 70.2%이나, 우리나라는 65%로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조건부 원조(tied aid)비율은 원조공여국이 미리 용도 및 구매조건을 지정하는 원조의 구속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DAC 회원국의 경우 조건부 원조 비율은 17.8%에 불과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액 조건부 원조로 운용
 - OECD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중 양자간 ODA에 있어서 조건부 원조비율이 높은 국가는 이탈리아(92.2%), 그리스(82.7%), 캐나다(68.3%), 포르투갈(40.6%), 호주(40.7%) 스페인(31.0%) 순임.
 - 2001년 4월 DAC 고위급 회담(HLM)에서 최빈국에 대한 원조의 언타드화 권고문을 채택하였고, 2001년 5월 제3차 유엔 최빈국회의에서도 이를 재확인하여 점차 조건부 원조를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양자간 ODA 전체가 조건부 원조로 공여되어 있는 실정을 감안, OECD개발원조위원회(DAC) 권고안을 즉각 수용할 수 없으나 향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한 실정임.

제3장 우리나라 ODA의 현황과 문제점

1. ODA 규모와 공여실적

- 1987~2001년간 ODA 총규모: 19억 76백만불
 - 양자간 원조의 경우 10억 83백만불이 공여되고, 이 중에서 무상원조는 4억 73백만불(43.7%), 유상원조는 6억 10백만불(56.3%)를 차지
 - 다자간 원조: 8억 94백만불

< 표 3 > 우리나라의 ODA 공여실적

(단위 : 백만 USD)

구 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ODA총계	57	77	112	140	116	159	186	183	318	212	265
(유상원조)	(14.8)	(16.3)	(42.9)	(63.2)	(28.4)	(69.9)	(66.2)	(83.6)	(81.4)	(76.7)	(116.6)
(무상원조)	(42.6)	(60.4)	(68.6)	(77.0)	(87.6)	(89.2)	(119.4)	(99.1)	(236.1)	(135.4)	(148.1)
전체증감율(%)	△6.0	33.6	45.3	25.7	△17.3	37.2	16.6	△1.6	73.8	△33.2	24.8
◦양자간원조	31.52	45.22	60.12	60.07	71.46	123.31	111.34	124.70	131.35	131.19	171.54
- 무상원조 ¹⁾	25.04	30.99	32.68	38.45	50.11	53.41	54.77	37.21	38.95	47.78	52.97
- 유상원조(EDCF)	6.48	14.23	27.44	21.62	21.35	69.90	56.57	87.49	92.40	83.41	118.57
◦다자간원조	25.96	31.58	51.44	80.15	44.53	35.84	74.27	58.01	186.18	80.88	93.11
- 국제기구 증여 ²⁾	5.78	8.01	10.25	12.88	14.82	30.08	29.06	33.60	67.70	26.05	35.40
- 국제금융기 구출연 ³⁾	11.82	21.47	25.67	25.65	22.68	5.76	35.53	28.31	129.46	61.52	59.74
- 기타 ⁴⁾	8.36	2.10	15.52	41.62	7.03	-	9.68	-3.90	-11.02	-6.69	-2.03
ODA/GNI 비율 (%)	0.02	0.025	0.034	0.037	0.026	0.033	0.042	0.058	0.079	0.047	0.063

주 : 1) 한국국제협력단(KOICA)무상원조, 각 부처의 ODA

2) 국제기구(UN기구 등) 분담금

3)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ADB 등) 출연금

4) 기타 국제기구 융자금 지원

자료 : 외교통상부·재정경제부

가. 양자간 ODA의 지원실적

-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의한 양자간 무상원조
 - 1991~2001년간 총 455백만불 지원
 - 기타 과기부, 정통부, 교육부, KDI등도 18백만불 지원
 - 2002년 61백만불(추정), 2003년 72백만불(추정) 지원

-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 2002년 10백만불, 2003년 15백만불 포함
- 한국수출입은행에 의한 양자간 유상원조(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87년 설립)
 - 1987~2001년간 34개국 101개 사업에 1조 5,500억원(약 16억불) 지원 승인
 - 8,200억원 집행
 - 2002년 7개국 9개 사업에 2,345억원(약 188백만불) 지원 승인
 - 2,050억원 집행

나. ODA지원규모변화 및 구성

- 2001년도 ODA규모는 2억 65백만불(국민총수입(GNI)대비 0.063%)로, 전년도(212백만불, GNI대비 0.047%)에 비해 53백만불(25%) 증가
 - 환율 및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가치(real terms)로는 전년대비 41% 증가
 - 그러나 국민총수입(GNI) 대비 ODA규모(0.063%)는 OECD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평균(0.22%)의 1/4, 유엔 권고기준(0.7%)의 1/10에 지나지 않아 크게 부족한 수준
 - 세계 12위 경제력에 걸맞는 수준으로 조속 확대 필요
 - 다자간 원조의 지원은 국제개발협회(IDA, 33.4백만불), 아시아개발기금(ADF, 18.2백만불), 아시아개발은행(ADB, 5.8백만불) 등

< 표 4 > 2000년/2001년 ODA 공여실적 비교

(단위 : 백만 USD)

	2000년	비중 (%)	2001년	비중 (%)	증감율 (%)	87~2001년 총계	비중 (%)
ODA 총액 (A+B)	212.1		264.7		24.8	1,976.4	
양자간 원조 (A)	131.2	100.0	171.6	100.0	30.8	1,082.9	100.0
무상원조	47.8	36.4	53.0	30.9	10.9	472.6	43.6
유상원조	83.4	63.6	118.6	69.1	42.2	610.3	56.4
다자간 원조 (B)	80.9	-	93.1	-	15.1	893.5	-
ODA/국민총수입(GNI) (%)	0.047	-	0.063	-	-	-	-

자료 : 외교통상부·재정경제부

- 2001년도 ODA중 양자간 원조가 172백만불로 전체의 65%,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원조는 93백만불로 전체의 35% 차지
 - 양자간 원조 중 무상원조는 53백만불로 31%, 유상원조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은 119백만불로 69% 차지
 - 양자간 원조중 무상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6.4%에서 2001년 30.9%

로 감소

- 양자간 원조중 유상원조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차관 대출금액의 대폭 확대로 2000년 대비 42.2%(35.2백만불) 증가

* OECD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의 양자간 원조 중 무상원조 비중이 평균 92%이며, 호주, 벨기에,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 15개국은 100% 무상원조만 제공

- 다자간 원조는 전년대비 15.1%(12.2백만불) 증가한 93.1백만불로, 이는 주로 UN 및 기타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증가에 기인

□ 양자간 원조의 분야별 배분(승인 기준)

- 통신(50.5백만불, 28.9%), 보건(35.2백만불, 20.2%), 교통(23.3백만불, 13.3%), 교육(13.8백만불, 7.9%)에 주로 지원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보건(7.7백만불), 교육(7.5백만불) 분야에 주로 지원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통신(50.0백만불), 보건(27.5백만불) 분야에 주로 지원

□ ODA의 지리적 배분(순지출 기준)

- 양자간 원조의 최대 수원 지역은 아시아: 72.6%(124.5백만불)
- 무상원조의 61.5%(32.6백만불), 유상원조의 77.5%(91.9백만불)
- 그 밖에 중남미(13.8백만불, 8.0%), 동유럽(13.7백만불, 8.0%), 아프리카(4.4백만불, 2.6%) 순서로 지원

< 표 5 > 2000년/2001년 ODA 공여실적 비교

(단위 : 백만USD, %)

순위	국가	금액	비중
1	베트남	38.13	22.2
2	인도네시아	23.00	13.4
3	우즈베키스탄	16.27	9.5
4	중국	16.18	9.4
5	크로아티아	13.32	7.8
6	스리랑카	10.85	6.3
7	파나마	10.46	6.1
8	파키스탄	4.43	2.6
9	파푸아뉴기니	3.65	2.1
10	필리핀	3.38	2.0
상위 10국계	-	139.67	81.4
양자간 ODA 총액		171.6	100.0

자료 : 외교통상부

□ 상위 수원국(순지출 기준)

- 양자간 ODA의 주요 수원국은 베트남(38.1백만불), 인도네시아(23.0백만불), 우즈베키스탄(16.3백만불), 중국(16.2백만불) 등
- 기타 크로아티아(13.3백만불), 스리랑카(10.9백만불), 파나마(10.5백만불), 파키스탄(4.4백만불), 과푸아뉴기니(3.7백만불), 필리핀(3.4백만불) 등
- 상위 10대 수원국에 대한 지원총액은 139.7백만불로, 양자간 ODA 총액의 81.4% 차지, 양자간 원조의 73%를 아시아 국가에 지원

2. 운용체제 및 문제점

가. ODA 운용체제 개관

□ 양자간 원조

< 무상원조 >

- 무상원조와 관련된 업무는 외교통상부(이하 외교통상부)의 지도 및 감독하에 시행하고 있으며, 외교통상부의 산하기관으로 1991년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정부의 여러 부처에 분산, 실시되던 무상원조업무를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기술협력사업에는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KDI,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일부 관여하고 있음.

< 유상원조 >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987년 설립)은 재정경제부 감독하에 한국수출입은행(Exim Bank)이 운용하고 있음.

□ 다자간 원조

- 국제개발금융기관 등에 대한 출자금
 - 재정경제부 주관하에 한국은행이 실시기관이며,
- UN 등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금
 - 외교통상부가 주요 실시기관이나, 과학기술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도 유엔기구에 출연금을 공여하고 있음.

나. 양자간 무상원조의 운영과 문제점

□ 연혁 및 운용체제

- 1980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고도성장과 무역흑자에 힘입어 1989년부터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이 시작됨.
- 1991년 1월 14일 한국국제협력단법(법률 제 4313호) 및 1991년 3월 18일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328호)이 공포됨.
- 상기의 법률에 따라 1991년 4월 외무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설립되어, 그 동안 여러 부처에서 분산 시행하던 기술협력사업, 무상기술용역사업, 청년해외봉사단 파견사업과 기존의 외무부가 시행하던 대외무상원조사업, 의료단·태권도 파견사업을 통합함.
- 한국국제협력단의 설립목적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들 국가의 경제 및 사회발전을 지원하여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있음(한국국제협력단법 1991년 1월 제정, 1999년 1월 개정).

- 업무의 실시체계는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개발협력과의 지도 및 감독하에 한국국제협력단이 연수생초청사업, 전문인력파견사업, 해외봉사단파견사업, 개발조사사업, 물자지원사업, 프로젝트형사업, NGO지원사업을 실시함.
- 한국국제협력단의 협력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원국의 요청에 의하여 사업이 시작되는 요청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음.
 -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수원국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하여 요청하게 되며, 한국국제협력단은 심사과정을 거쳐서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협력사업을 집행함.
- 한국국제협력단은 협력사업실시를 직접 추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수생초청, 전문가파견, 개발조사 등에 있어서는 필요한 경우, 국내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실행하는 경우도 있음.
- 외교통상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의 협력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정관 및 규정의 제정 등 협력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의 기능을 갖고 있고, 재외공관을 통하여 협력사업의 수요조사, 사업추진협력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조직

- 지도 및 감독부처: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개발협력과
 - 개발협력과는 과장이하 직원 5-6명으로 구성
 - 주된 업무는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 시행 및 조정
 - 양자간 무상원조에 관한 정책의 종합 및 조정과 대외무상원조에 관한 업무
 -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지도, 감독
 -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에 관한 업무
 - 두만강개발계획과 메콩강유역개발계획에 관한 업무
 - 쿨롬보플랜과 관련한 경제협력
 - 남북한 경제교류 및 경제협력 관련 업무협조를 담당함
- 주된 실시기관 :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 1991년 4월 설립당시 약 170여명의 해외개발공사 직원을 승계하고, 신규직원 50여명 공채, 정부 각 부처 20여명의 파견공무원으로 구성되었으나, 한국의 국제통화기금(IMF)사태이후 인원감축을 하여 현재는 약 170명임.
 - 직제의 구성은 기관장인 총재는 외교통상부의 퇴직대사가 3년 임기로 임명되며, 외교통상부의 심의관급 외교관이 총무기획이사직에 통상 1년 임기로 보하며, 인력협력이사과 개발협력이사가 있음.
 - 이사들의 관할하에 총무부, 기획총괄부, 연수사업부, 인력사업부, 개발사업 1부, 개발사업 2부 등이 있고, 10개의 해외사무소가 있음.

□ 문제점

-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과의 정책수립 및 조정기능 취약
 -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매년 수시로 개최되어 채택된 개발원조 지침과 선진국 원조기관의 활동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필요하나, 담당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순환보직제로 업무의 지속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조정책에 있어서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
 - 무상원조 실시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 및 사후평가·감독을 하기 어려우며, ODA업무 외에 남북한 경제협력,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등 다양한 업무로 인해 효과적인 ODA 정책수립 기능 미흡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대외원조 업무역량의 필요성
 - KOICA가 주요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외교통상부의 승인을 받은 후 무상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내부 조직 구성이 단순한 원조사업 실시부서로만 구성되어 있어 업무의 전문성 확보에 취약
 - 상당수 직원의 업무수행능력(부문별 전문가 부족, 외국어 능력, 외교관계 및 국제관계의 이해도)이 제고되어야 하며, 수원국 및 해당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등 대외원조업무의 질적 개선을 위한 인력강화방안이 필요함.
 - 그동안 한국국제협력단(KOICA) 총재는 대부분 대외원조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해 총재 교체시 마다 대외원조업무의 혼란이 발생하고, 잦은 조직 개편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체계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능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
 - 외교통상부에서 파견된 총무기획이사는 짧은 임기(91년 이후 10명이 파견되어 평균 재임기간이 1년)로 인하여 KOICA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업무지휘를 하기에 한계가 있음.
- 중장기 원조정책 및 수원국에 대한 국가계획(country programming)의 부재
 - 대부분의 원조사업이 수원국의 요청주의에 따라 결정되며, 외교통상부 및 재외공관의 편의주의적 입장에 따라 원조업무가 일회적이고, 단순 반복적인 집행기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국가계획을 작성할 시에 그 국가의 원조현황 연구가 취약하고 개선노력이 미미한 상태임. 현재는 수원국을 중점협력국, 준중점협력국, 일반협력국으로 구분하여 형식적인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은 국가원수 방문시 약속사업과 공관 요청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사전조사 및 연구·계획이 미흡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사후평가가 불충분하여 성과중심의 원조사업이 축적되지 못함.

다. 양자간 유상원조의 운영과 문제점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연혁 및 운용체제

- 1987년 6월 정부기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립하고, 1986년 12월 대외경제협력기금법(법률 제3863호), 1987년 4월 동 기금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141호)이 각각 제정·공표되고, 동년 6월에는 재무부로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업무가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되었으며, 동년 7월 기금업무가 개시되었음.
-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도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 우리나라와 개도국간의 경제교류를 촉진하는 개발원조 수단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하며, 개도국과의 외교적 우호관계의 강화, 한국기업의 대개도국 시장개척 등을 지원하는 경제외교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함.
-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영은 재정경제부를 주무부처로 하며 한국수출입은행이 기금업무를 취급하고 있음.
- 재정경제부는 기금운용관리의 주체로서 기금이 행할 기본정책의 기획, 입안, 지원방침의 결정, 연도별 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 작성 등의 역할
- 단, 기금에 관한 중요한 정책사항과 중요한 사업의 지원방침 결정에 관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음.
 - 기금운용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개최되며 서면형식의 심의도 가능함.
 - ※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은 재정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외교통상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한국수출입은행장의 10명으로 되어 있음.
-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관리 및 회계의 사무처리, 원조대상사업에 대한 심사 및 검토, 차관공여계약의 교섭 및 체결, 차관자금의 지출과 원리금 회수, 사후관리 등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재정경제부로부터 위탁받아서 유상원조 실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외교통상부는 기금사업의 대외창구로서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원조요청의 접수, 지원방침의 통보, 대외경제협력기금 공여협정 및 시행약정 체결 등 외교적 업무를 담당
- 기금의 실시절차
 - 대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한 직접차관의 실시는 사업의 순환단계(프로젝트 사이클)의 흐름에 따라 진행됨.
 - 개도국의 요청을 기초로 시작하여, 사업의 심사, 지원방침의 결정 및 정부간 차관공여협정 및 시행약정의 체결, 차관공여계약의 체결, 조달 및 용자실행, 사업평가 및 관리의 순으로 행하여짐.

□ 지원업무의 종류와 지원조건

- 지원업무의 종류
 -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은 개도국에 대한 직접차관으로 우리나라의 유상원조

를 대표하고 있으며, 그 지원사업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됨.

- 개발사업차관 : 개도국의 경제개발사업 실시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조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데, 통상 외화소요분을 지원하며, 필요에 의하여 현지화소요분도 지원할 수 있으나, 그 지원한도는 차관한도의 30% 범위내를 원칙으로 함.
 - 기자재차관 : 개도국의 특정산업부문 또는 특정지역의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조달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
 - 기금전대차관 : 개도국 정부 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 자금조달에 소요되는 자금을 전대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
 - 물자차관 : 개도국의 경제안정을 위하여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물자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 사업준비차관 : 경제개발사업의 준비를 위한 사업성검토, 프로젝트 설계 등의 조사, 또는 경제개발사업의 시험적 실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공여대상 및 지원조건
- 상기의 자금은 개발도상국을 지원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와 대상국간의 국익에 기여하고, 경제적·재무적·기술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고, 사업실시가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됨.
 - 지원조건은 상환조건(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 등)과 조달조건(구매적격국의 제한유무)으로 구분
 - 우선 상환조건을 보면, 지원대상국(76개 개도국)의 소득수준에 의해 5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이자율 년 1%~5%, 상환기간 25~30년 범위에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보다 양허적인 조건을 적용하고 있음.
 - 기금에 의한 기자재나 서비스 조달조건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현실을 고려하여 구매적격국을 우리나라와 수원국으로 한정하는 조건부 원조(Tied Loan) 형태를 일반적으로 취하고 있음.

□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현황

- 기금운용 기본방향

- 개도국의 개발계획상 사업우선순위가 높고 경제개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효과 및 시장개척 효과가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
- 기금규모가 적은 점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원조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중점국가와 중점지원분야 중심으로 운용
- 중점국가는 경험잠재력이 높은 아시아지역국가를 중심으로 하되 동시에 지역별 진출거점확보를 위하여 중남미, 아프리카 등 대륙별로 중점국가를 선정하여 운용
- 중점지원분야는 우리기업의 수출효과가 높으면서 또한 후속수출 등 해외시장개척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지원함. 특히 국내산업정책과

- 연계하여 정보통신(IT), 환경 등 고부가 미래산업 분야를 집중지원
- 총 지원현황(1987년 ~ 2002. 12. 현재)
 - 총 조성 14,729억원, 집행 10,250억원, 회수 1,020억원
 - 총 승인 17,706억원, 총 승인건수 108건
 - 주요지원국가 : 중국(11.8%), 인도네시아(8.9%), 베트남(8.8%), 스리랑카(8.5%), 방글라데시(7.7%)
 - 주요지원분야 : 교통(26.0%), 통신(18.4%), 에너지(13.8%), 상하수도 및 환경(13.5%), 보건(13.3)
 - 200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실적
 - 집행실적 : 2,050억원 (계획 2,000억원 대비 102.5%)
 - ※ 캄보디아 행정전산망 구축사업 259억원 등 18개국 33개 사업
 - 승인실적 : 2,345억원 (계획 3,400억원 대비 69.0%)

< 표 6 > 200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실적

(단위: 억원)

국 가	사 업 명	승인액	지 원 조 건		
			금리(%)	거치기간	상환기간
터 키	병원건립	394	1.0	15	35
캄 보 디 아	직업훈련원 건립	362	1.0	10	30
중 국	상수도·도로건설(2)	116	2.5	10	30
방 글 라 데 시	철도차량 구매	342	1.0	10	30
에 콰 도 르	상수도 설비	366	2.5	10	30
캄 보 디 아	도로개보수	215	1.0	10	30
스 리 랑 카	도로개보수	217	2.5	10	30
코 스타 리 카	교육정보망확충	333	3.0	7	25
8개국	9개 사업	2,345	-	-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대외경제협력기금(EDCF))

□ 조직

- 정책수립 및 감독부처: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개발협력과
 - 개발협력과 과장이하 서기관 및 사무관 등 4명으로 구성
 - 주된 업무는 對개도국 경제협력정책, 한국수출입은행관련업무, 대외경제협력 기금정책에 관한 업무, 러시아 및 동구와의 경제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함
- 수탁기관: 한국수출입은행
 - 재정경제부 개발협력과의 대외경제협력기금정책 결정에 따라 기금집행 업무를 담당함

-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제협력 1부와 경제협력 2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집행 담당부서이며, 총 직원은 2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음

□ 문제점

- 운용상의 문제점

- 개도국 경제에 기여하면서 우리기업의 수출시장개척에 도움이 되는 유망사업발굴을 위하여 수원국 정부와의 정책적 협의를 활성화하여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사업발굴이 요청되고 있음
- 그러나 기금규모가 작고, 개도국과의 정기적인 정책협의를 지원규모가 적고 사업건수도 1, 2개에 불과하여 주도적인 우량사업발굴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따라 현재는 대기업 주도로 사업이 발굴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을 통한 사업발굴은 신속한 사업 추진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중소기업 참여기회가 제한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제도상의 문제점

- 우리나라 양자간 원조의 69%를 차지하는 유상원조(2001년 기준)와 31%를 차지하는 무상원조에 대한 정책 및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부처간 및 집행기관간의 정책입안 및 집행에 관한 의무적인 협의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우리나라의 ODA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이 부재함
- 다만,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한 정책사항과 지원방침결정에 있어서 정부 각 부처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으나, 동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아니하며 형식적으로 개최되는 경향이 있고,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ODA정책을 마련하기에는 미흡한 제도임
- 이러한 제도상의 취약성에 의해 특정 수원국에 대한 치밀한 국별원조 계획에 따라 우리나라의 원조가 제공되지 못하고, 특정 수원국에서 무상원조와 유상원조가 상호 연계됨이 없이 제공되는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도 예상됨

제4장 대외원조정책의 개혁방안

1. 기본 방향

가. 한국형 국제협력모델의 정책목표

- ◇ 개발파트너십(development partnership) 강화
 - ⇒ 선발개도국으로서 국제협력체제에서 주도적 역할과 중간자적 리더쉽을 발휘
 - ⇒ 한국형 개발경험 전수(sharing know-how)를 통해 인적자원개발, 구조전환 및 개혁, 정보격차 완화 추진
- ◇ 상호의존성(mutual benefit ; interdependence)의 확대·심화
 - ⇒ 세계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개도국의 개발과 지속적 성장에 기여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경제의 안정과 번영을 실현
- ◇ 국제적 인도주의와 전지구적 과제 추진
 - ⇒ 인류보편가치 실현을 위한 인도주의 구현
 - ⇒ 국제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빈곤퇴치전략과 환경, 여성, 보건, 교육, 인구 등 전지구적 과제에 적극 참여
 - ⇒ 밀레니엄 선언, WSSD 등 국제적 지원체제에 협력

- 우리나라 ODA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원조정책의 기본 방침과 정책목표를 명확히 정립해야 함.
 - 우리실정에 맞는 원조철학과 이념을 바탕으로 한국적 국제협력모델을 위해 중장기적인 대외원조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고, 개발협력에 있어서 보편적 가치와 우리의 독자성을 반영하는 주요이념과 정책적 목표를 뚜렷이 해야 함.
 -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국제협력이념으로서 인도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선진국가들은 식민지 종주국으로서 전후 배상 혹은 식민지 국가에 대한 배려를 통해 국가적 실익을 추구해 왔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는 달리 선발개도국으로서 단순한 시혜적 관점을 지양하고, 개도국과의 호혜적 협력관계에 중점을 둔 상호이익과 공존을 도모해야 함
 - 우리나라의 대외원조정책은 수혜국 입장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하면서 그동안 개발연대에 지원받았던 원조를 국제사회에 환원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선발개도국으로서 중간자적 리더쉽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우리경제가 현재와 같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개발원조 지원과 개도국 지위를 전제로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고, 앞으로 우리의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오히려 국제협력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리더쉽을 발휘해야 함.

-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개도국에 대한 적정지원과 역할을 분담하는데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고, 지원성고가 미진해서 리더쉽 발휘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선발개도국으로서 중간자적 리더쉽을 구현할 수 있는 대내외적 배경
 - 우리경제는 지난 40여년간 성공적인 경제개발을 통해 신흥공업국의 선두주자로서 1996년 OECD에 가입하였음.
 - 경제 및 무역규모에 있어서도 세계 10위권에, 일인당 국민소득도 만불수준에 이르고 있음.
 - 경제사회제도 및 정책운용의 선진화를 이룩하여 국제사회에서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중간자적 리더쉽(가교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음.
- 따라서 우리경제의 능력범위내에서 개발협력의 보편적 이념에 보다 충실한 한국형 국제협력모델을 국제사회에 제시하면서 개도국과의 협력기반을 강화해야 함
 - 기본적으로 상호의존주의에 입각한 개발파트너십 강화에 역점을 두고, 한국의 경제개발경험 전수를 열망하는 후발개도국의 유·무상 협력요청에 부응함으로써 개발모델을 중심으로 인적자원개발(HRD) 사업에 특화
 -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경험과 사례를 전수하고, 지식기반경제하에서 정보격차(Digital Divide) 완화사업에 역점
 - 또한 국제개발 목표의 핵심과제로 부각된 빈곤퇴치와, 환경, 여성, 보건, 교육, 인구 등 전지구적 과제에 적극 참여하면서 국제사회의 안정에 기여

나. 원조정책의 체계화·선진화

◇ 중장기적 원조정책을 수립하고, ODA의 계획성, 효율성, 효과성 제고에 중점을 둔 제도적 개선 추진
 ⇒ 국별지원계획 작성, 개발조사사업 강화, 원조사업의 패키지화를 위한 업무제휴 강화 등 효율적인 ODA 운용방안 강구

- 대개도국 원조를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원조정책의 체계적인 운용방향과 제도개선이 선결과제
 - 우선 대내외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3~5년간의 정책프로그램을 담은 중장기적인 원조정책을 수립
 - ODA의 계획성, 효율성, 효과성,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원조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대내적으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나가야 할 것임.
- ODA 사업확대와 지원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원조정책의 계획성을 강화하여 종합적인 개발방식(integrated approach)을 추진
 - 개발조사·계획기능을 강화하고, 원조사업의 효율적 운용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간 협력체제 및 다양한 원조수단간의 상호 연계성 강화
 - 이를 위해 중점지원국을 정책적 차원에서 설정하고 해당국가에 대한 국별지원계

획을 통해 지원국에 대한 3~5년간의 마스터플랜을 작성

- 중점지원국별로 원조정책의 체계적 운영뿐만 아니라 원조사업의 준비, 집행, 평가 등에서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방침을 마련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원화된 원조체제 및 원조자금의 소규모성을 감안할 때, 원조사업의 효율적 운용체제 확보를 위해서는 자금과 기술을 패키지화하고 각종 협력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원조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 그동안 ODA 사업확대와 지원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개발원조간 연계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ODA사업은 상호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하여 효율적인 원조사업을 기대하기 어려웠음.

- 더욱이 원조규모가 점차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민간기업의 對개도국 진출과 연관하여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의 연계방안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임.

□ 중장기적으로는 원조운용 및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원조전담기관을 설치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임.

다. 국민참여 및 지지 확대

◇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ODA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적 참여와 지지기반 확대

⇒ ODA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 및 체계적인 국민홍보 강화

⇒ 해외원조NGO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NGO 등 시민사회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강화

□ 가장 시급한 과제인 ODA 규모의 증대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나 아직 대다수의 국민은 ODA의 중요성과 국제적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

- 개도국에 대한 원조사업의 필요성과 정치·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국내 각 부문의 인식이 크게 부족하여, ODA예산은 정부예산 편성시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등 ODA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무역 및 투자면에서 50%이상을 개도국 경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규모 확대가 단순한 의무 또는 경제적 비용으로만 간주해서도 안될 것임.

- 오히려 양허성 자금으로서 ODA의 공여를 한국의 국가이익에 맞추어 어떻게 소화해 나갈 것인가를 염두에 두면서,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단순히 시혜적인 차원이 아닌 상호이익과 공존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라는 새로운 인식이 전환이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 ODA는 조건부 원조이므로 증여일지라도 자국산 물품공여와 자국기업의 개발참여로 대개 원조액의 75%는 국내로 환수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개도국 원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입장이 필요함.

□ 한편 우리나라도 과거 경제개발과정에서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은바 (무상원조 45억불, 유상원조 158억불), 이러한 혜택을 국제사회에 환원할 필요가 있음

- 특히 OECD 회원국으로서 ODA가 개도국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단 및 경제·통상협력관계 강화수단으로서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전제로 한 한국 ODA정책의 내용과 그 중요성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 실질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홍보해야 함.
-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ODA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원조정책의 신뢰성을 강화
 - 각종 ODA 정보, 사업시행의 성과를 공표하고, 운영기준 및 세부방침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사업운영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확보해 나가야 함.
 - 또한 정부주도의 원조공여 방식에서 벗어나서 개발NGO, 대학, 민간기업 등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부문과의 적극적인 파트너십 체제를 구축
 - 정책입안단계에서 사후평가까지 시민사회와 해외원조NGO의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부문의 해외진출과 상호연계 방안을 강구
 - 정기적으로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자문기구, 정책협의회를 통해 ODA 정책목표 및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중장기 정책프로그램 및 「ODA 백서」 발간 등으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원조사업의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강화
-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개도국 지위를 과감히 벗어나고자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고, 정부, 국회,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국민적 인식전환을 위한 ODA 홍보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
 - 2002년 12월 국정홍보처 여론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45%가 우리나라 ODA의 선진화 과제로 ODA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를 지적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ODA규모 확대와 함께 대국민 홍보강화를 향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함
 - 방송사 협조로 우리나라 해외원조사업의 현장을 취재 및 방영하고, 동 프로그램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하여 학생들 교육자료로 지속적 활용
 - 사회여론층 대상(공무원 교육기관, 기업체 임직원 등) 및 전국의 주요 대학에서 ODA에 관한 강연 확대 추진
 - ODA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정부, 국회, 언론사, 지자체, 대학교 등에 배포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ODA에 대한 국민들의 정보접근 강화 및 의견개진의 장을 제공

2. 세부추진방안

가. ODA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

- ◇ ODA 배증계획하에 ODA/GNI(국민총수입)의 비율을 2006년까지 0.1%로 증대
- ◇ 무상원조비율을 ODA의 50% 수준으로 확대
- ◇ 최빈국에 대한 지원비중을 ODA의 15% 수준으로 확대

-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우선 시급한 과제는 ODA 규모

를 절대적으로 증액하는 것임.

- 우리나라의 국민총수입(GNI) 대비 ODA 비율은 0.063%(2001년 기준)에 불과하여 국제적 합의목표인 0.7%에 비해 1/10수준, OECD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평균 0.22%에 비해 1/4 수준을 기록
 - 이와 같이 한국경제의 규모와 국제적 위상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데,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2.65억불로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네덜란드 31.6억불, 스페인 17.5억불, 호주 8.5억불에 비해 매우 뒤떨어짐.
 - 또한 우리나라와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그리스 0.19%, 포르투갈 0.25%, 뉴질랜드 0.25%에 비해서도 1/3내지 1/4 밖에 되지 않음.
- 그동안 OECD개발원조위원회(DAC)는 ODA/GNI비율이 DAC 평균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국가는 원조조건 목표충족에 실패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힌 바 있음.
- 특히 국제적으로 몬테레이 선언이후 원조배증계획을 설정하고, OECD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은 빈곤퇴치 노력에 부응하고자 2006년을 목표로 원조증액을 추진중이어서 우리나라 원조규모는 국제수준과 더 큰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우리나라도 OECD 가입 10주년인 2006년을 목표로 ODA규모를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함.
- 2003년도 우리나라의 GNP대비 ODA의 비율을 0.07%로 산정하여 원조규모를 매년 GNP대비 0.01%씩 증가시켜 나간다고 가정하면, OECD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최저수준인 0.1%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최소한 4년간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음.
- 동 기간을 우리나라 원조정책의 개혁기로 설정하여 ODA 규모의 양적 확대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2006년을 목표로 필요하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ODA 배증계획」을 수립
 - “2006년까지 원조규모 배증과 국민총수입(GNI)대비 0.1% 실현“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제적 사회에서 위상을 제고하는 방안 모색
- 향후 우리나라 원조규모를 추정해 보면(표 7 참조), 2007년경에는 약 8억 불 규모에 이르고, 국민 일인당 원조부담액은 7.5 불에서 16.7 불로 증가하게 됨.
- 이러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원조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며, 연평균 20%이상의 원조예산 확대가 불가피함.

< 표 7 > 우리나라 ODA의 원조규모 추정

	단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명목GDP ¹⁾	십억 USD	517.6	573.5	620.4	679.8	746.0	813.0
인구	백만 명	48.1	48.4	48.6	48.8	49.1	49.3
일인당GDP	USD	10,767	11,862	12,763	13,917	15,201	16,497
ODA/GDP	%	0.07	0.08	0.09	0.10	0.11	0.12
ODA추정액	천만 USD	36.2	45.9	55.8	68.0	82.1	97.6
(증가율) ²⁾	%	-	26.6	21.7	21.7	21.7	18.9
원조부담액 ³⁾	USD	7.5	9.5	11.5	13.9	16.7	19.8

주: 1) ODA 규모 추정을 위해 국민총수입(GNI) 지표가 필요하나, 통계적 근사치인 GDP를 지표로 활용(DRI·WEFA 추정치)

2) ODA 증가율은 전년대비

3) 국민일인당 원조부담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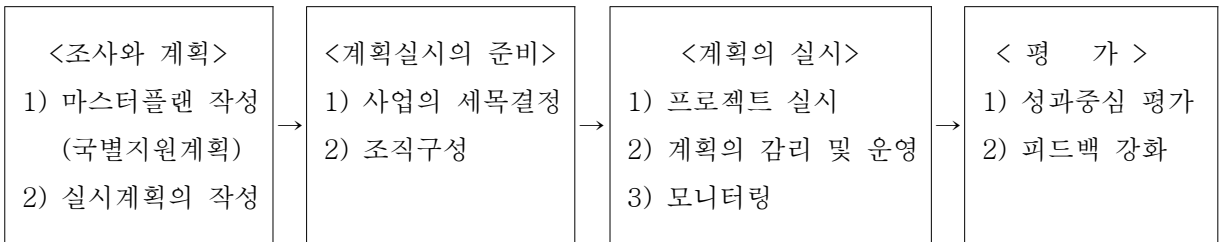
- 한편 양자간 원조 중에서 유상원조(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 EDCF) 비율이 약 65~70%에 이르고 있는 바, 경제실정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무상원조 비율을 높여나가야 할 것임.
 - OECD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은 평균 무상원조비율이 85.4%를 차지하며, 호주, 캐나다, 덴마크,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7개 국가는 100% 무상원조 제공(단, 일본은 51%)
 -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장기저리(연 1~5%, 최장 30년)로 제공되고 있지만, 저개발국에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고, 최근 고채무빈곤국(HIPC)에 대한 채무탕감 또는 채무재조정이 확대되고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원대상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국제개발목표가 빈곤퇴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최빈국에 대한 원조의 지속적 확대가 강조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국제개발협력추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빈국 지원비중을 대폭 확대해야 함.
 - 2015년을 목표로 빈곤삭감전략의 적극적 추진을 명시한 밀레니엄 선언과 함께 밀레니엄 개발목표가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최빈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
 - 국제적으로 최빈국에 대한 지원목표는 국민총수입(GNI)의 0.15%임에도 불구하고, OECD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평균(2001년 기준)은 국민총수입(GNI)의 0.09%, ODA의 25% 수준
 - 따라서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빈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네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ODA 대비 최빈국 지원비중(현재 10%수준)을 15%수준으로 확대

나. 국별원조계획 수립과 다년도 예산 집행

- ◇ 중점지원국을 선정하여 국별원조프로그램을 작성하고, ODA 사업의 계획성과 효율성 도모
- ◇ 원조사업의 신축성을 위해 3~5년간을 원조주기로 설정하고, ODA 사업의 다년간 예산 집행을 추진

- ODA의 소규모성이라는 제약조건하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원조사업의 계획성을 제고하고, 중점지원국에 대한 조사·계획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양자간 원조에 있어서 중점지원대상국을 중심으로 원조의 집중도를 높여야 함.
 - 전략적인 차원에서 양자간 원조사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우선 수출입은행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국 또는 중점지원대상국을 통일하여 중점지원 대상국에 대한 국별 적정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임.
- 이는 최근 국제적 개발협력의 주요 흐름인 개발파트너십 강화에도 부응하는 것으로서 수원국과의 정책대화를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원조사업 추진에 기여
 - 또한 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을 상호연계한 원조사업의 패키지 방안 및 자금배분 기준을 원조방침으로 설정하여 원조사업의 계획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도표 2 > 국별지원프로그램 수립과 종합개발방식의 추진



- 특히 국별원조방침은 실시조직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및 지원수단의 효율적인 연계가능성이 사전적으로 고려되고, 정책결정 및 지원방침 수립단계에서 실시기관간의 연계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 중점지원국가는 우리나라의 원조규모를 감안하여 10개국 이내로 한정하고, 매년 2~3개국에 대한 예비적 검토와 사전조사를 거쳐 국별원조방침을 확대
 - 특히 국제적 지원체제하에서 중점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빈곤경감전략보고서(PRSP)를 사전에 고려하여 국별원조방침에 충분히 반영
- 중점지원 대상국 설정은 수원국의 개발잠재력, 경제협력수준, 외교적 고려 등을 감안하여 주요 지역별로 거점국가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국가에 대한 경험비중이 높음을 감안하여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

- 한편 서남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인도의 경우 그동안 지원실적이 미약하고, 파키스탄은 핵무기 개발 등으로 국제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 우선적으로는 방글라데시와 네팔 등 최빈국을 중심으로 한 지원비중을 높여야 할 것임.
- 향후 중점지원국가를 확대할 경우 균형있는 지리적 배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경험수단별 연계성과 유기적인 조정을 통해 우리의 비교우위분야를 대상국가별로 사전에 검토하여 민간진출 확대방안과도 상호 연계되어야 함.
- 전략적으로 ODA를 운용해야 할 중점지원대상국에 대해서는 기존의 수동적 요청주의 방식에서 능동적 협의주의 또는 적극적인 발굴주의 방식으로 전환
- 정기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조사단을 파견하여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국별 특성을 감안하여 ODA 협력사업과 경험수단을 상호 연계시켜 효율적 지원전략을 마련해야 함.
- 특히 프랑스, 일본의 경우 중점지원대상국에 대한 국별원조방침을 토대로 국별 원조계획을 수립하여 중점지원분야 및 협력과제를 설정(표 8 참조)

< 표 8 > 주요 선진국의 국별조사 및 중점지원국 선정

국명	제도	선정방법 및 기준
미국	Country Development Strategy Statement : CDSS 작성	- AID 해외사무소 정보수집 - 정부차원의 정책대화 활용 - 5년마다 작성(18개월마다 보강)
영국	Country Policy Review : CPR 작성	- 18개 중점지원대상국에 대하여 매년작성 - 수원국의 거시경제 분석, 개발정책, 양국간 관계 등 종합판단, 우선순위 결정
독일	정책대화 사업발굴조사단 파견 3년간 원조프로그램 작성	- 경제협력부의 원조전문관과 수원국 정부담당자간 정책대화 - 사업발굴조사단 파견(BMZ 주도)
프랑스	우선대상지역 선정 국별원조계획 작성	- 부처간 국제협력·개발위원회(CICID)에서 수상주도하에 54개 중점지원국을 심사·결정, 국별원조계획 작성
일본	ODA 중기정책 국별원조계획	- 외무성의 국별원조계획이 책정되면 JICA는 국별사업계획을 수립 - 25개 중점지원국에 대한 국별원조연구 수행

- 중점지원대상국에 대한 ODA공여는 매회계년도 기준으로 ODA를 제공하는 방식보다는 3~5년간의 기간을 원조주기(cycle)로 정하고 정책협의회를 통해 매년 우선 순위를 협의, 집행해 나가는 방식이 좋을 것임.
- 그동안 단년도 ODA 예산운용은 ODA 사업을 줄속으로 추진하게 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최근 OECD개발원조위원회 차원에서도 수원국 개발계획

및 빈곤경감전략보고서(PRSP)에서 다년간 사업에 신축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다년간 프로그램을 적극 장려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도 원조관련 부처 및 주요실시기관 관계자, 지역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연구조직을 구성하여 국별연구를 강화하고, 조사단 파견 및 부문별 조사를 병행
 - 중점국가별로 지원계획 및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기술협력 및 자금협력 지원계획을 계획적으로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다. 중점지원분야 및 유망사업 발굴

◇ 한국적 협력모델에 입각하여 개발경험 및 제도개선 분야 지원 강화
⇒ 국비유학생 초청 및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중점

- 우리나라에 비교우위가 있는 사업부문을 중심으로 전략적 지원분야와 중점지원분야를 선정하고 한국적 협력모델에 입각하여 선정기준을 구체화해야 함.
 - 비교우위가 있는 개발경험 및 제도개선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인적자원개발(HRD) 및 제도적 기반 구축사업에 지원을 집중
 - 이를 통해 개도국 경제 및 사회구조를 이해하고 수원국 개발정책 수립의 초기 단계부터 기여할 수 있는 협력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지원사업에 있어서 중점을 두어야 할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개발경험 전수를 중심으로 한 수원국의 인적, 제도적 기반확충이 필요하고, 인적자원개발(HRD)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유학생사업을 ODA사업과 연계하여 본격 추진
 - 국비유학생 사업은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어 선발 시험을 전제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현재 석박사과정 혹은 국제대학원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제도구축 분야에서는 주요 개발정책분야를 담당하던 퇴직공무원, 민간기업인들을 활용하여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 둘째, 민간기업 진출과 연계하여 진출기반 확대, 우리나라의 교역 및 민간투자 확대에 연계된 ODA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함.
 - 우리나라 경우 무상원조와 기술용역제공을 대외경제협력기금의 협력사업 발굴에 활용하여 향후 산업기반 확충과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기반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개도국에서 시급히 건설을 요구하고 있는 철강, 비료, 시멘트, 석유화학 등 기간산업 부문의 상호기술 및 산업협력기반을 강화시켜 민간기업의 진출기반을 넓혀나가야 함.
 - 셋째, 기술협력중심의 지원효과 극대화
 -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에 있어서 우리의 여건은 주요선진국과는 달리 첨단기

술이나 막대한 규모의 자금지원이 아니라 우리의 발전경험과 중간기술 전수를 통해 개도국의 경제, 사회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문에 중점을 두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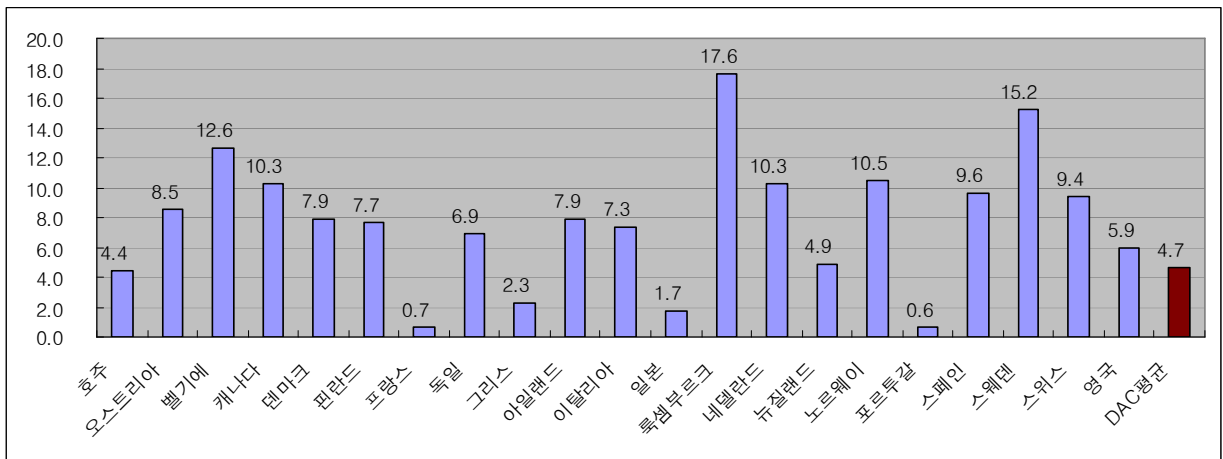
- 이러한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원조 프로젝트, 능력배양사업 등을 통해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고, 산업기술 이전과 투자과정에서 양국간 분업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배려

라. 개발NGO 지원확대

◇ 개발NGO 를 통한 ODA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방식 및 참여부문을 다양화

- 최근 국제개발협력의 추세가 민간과 NGO 등 시민사회와의 상호연계하에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특히 Grass-roots Level(풀뿌리 차원)의 원조프로그램이 중요해 지면서 OECD 개발원조위원회 평균으로 ODA총액의 4.7%(2000~2001년 평균)를 자국의 개발NGO 를 통하여 시행
 - 그러나 2001년 한국 ODA집행 내용을 볼 때,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개발NGO 를 통한 ODA 지원은 78.8만 불(약 10억원)으로서 우리나라 총 ODA의 0.3%에 불과

< 도표 3 > OECD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의 ODA 대비 NGO 지원비중(2000~2001년 평균)



자료 : OECD/DAC, *Development Cooperation : 2002 Report*, 2003.

- 국내의 개발NGO들은 40여 개의 단체가 해외원조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1995년부터 국내 NGO를 통한 해외원조활동을 지원하고 있음(표 9 참조).
 - 현재 국내의 개발NGO들은 1999년부터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를 설립하여 34개 단체가 가입
 - 개도국에 대한 민간차원의 원조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원조사업에 대한 국민

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원이 필요하고, 국제수준에 맞추어 대폭적인 지원확대가 불가피함.

< 표 9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NGO 지원실적(1995 ~ 2002년)

(단위 : 백만원)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획
지원금액	440.8	537.9	610	320	415	600	926	1,050	1,065
사업관리비	8.6	0.7	9.2	8.3	11	17.7	25.6	25.3	62.0
사업수 (국가)	19(19)	22(14)	20(10)	17(11)	20(10)	22(13)	27(15)	28(16)	20(14)
총 계	449.4	538.6	619.2	328.3	426	617.7	951.6	1,075.3	1,127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KOICA)

□ 개발NGO 에 대한 지원방식 및 참여부문을 다양화

- 현재 한국국제협력단이 국내 NGO의 해외원조사업에 재정지원하는 방식은 NGO가 제안하는 원조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일정부분을 자체재원으로 충당하는 조건에서 정부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재정지원하는 Matching Grants (상호출자증여) 방식만을 사용하고 있음.
- DAC 회원국이 채택하고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여러개의 원조사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일정부분에 대하여 총괄해서 지원하는 Block Grants(총괄증여)방식과 1년 이상의 원조사업에 지원하는 Multi-Year Funding(장기재정지원)방식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KOICA는 원조사업비 중 일정한 예산만(연간 10억원)을 NGO와의 협력사업비로 지정하여 NGO를 통한 원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NGO를 통한 원조사업의 확대가 제한될 수밖에 없음.
- KOICA가 직접 실시하는 봉사단 파견사업과 프로젝트사업에 NGO의 참여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ODA규모 확대와 더불어 해외봉사단 파견인원의 증대가 불가피한 현실이므로 개발NGO 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개발NGO 는 정부차원의 협력이 어려운 미수교국 지원, 한인교포 밀집 거주 국가 및 수혜국의 사회 저변층에 대한 지원, 헌신적 사명감, 소외계층에 대한 접근 용이성, 현지 활동 경험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음.

제5장 정책과제

1. ODA의 제도적 기반 확충

◇ 원조정책의 선진화와 체계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원조정책의 안정적인 운용과 일관성 확보, ODA 규모 확대에 대비한 원조정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됨.
 - 그 정책대안으로는 개발협력 관련 ‘대외원조법(가칭)’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대외원조현장(ODA현장)’을 공표할 필요성이 있음.
 - ▲ 대외원조법 제정 필요
 - 대외원조법의 경우 국회승인을 통해 법적 구속력이 담보되고, 대내외적으로 원조정책의 목표와 주요 방침을 명확히 함으로써 원조정책의 일관성 확보 및 국민적 지지 확보에 유리
 - 원조환경 및 시대의 변화에 따른 원조대상국가, 원조액, 원조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임.
 - ▲ 대외원조현장 제정 문제
 - 정부차원에서 공표하는 정책선언으로서 원조에 관한 이념, 철학,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획득하고, 원조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
 - 대외원조현장은 대외원조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할 수도 있고, 별도로 제정할 수도 있을 것임.
- OECD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경험과 사례를 볼 때, 국가마다 각기 상이하나 원조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법적·제도적 기반 확대에 노력해 왔음.
 - OECD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중 대외원조법(혹은 국제개발협력법)을 제정한 국가는 미국을 포함하여 영국, 덴마크, 스페인, 오스트리아, 스위스, 벨기에 등 7개국임.
 - 일본의 경우에는 대개도국 원조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해 원조정책의 목표와 원칙에 관한 ODA 헌장(政府開發援助大綱)을 1992년 각의에서 공표
 - 독일은 통독이후 1991년 새로운 원조정책의 기준을 발표한 바 있고, 1996년에는 ‘개발정책 개념’(Concept for Development)을 공표, 대외원조프로그램으로서 ‘2015년을 목표로 한 실행계획(Programme of Action 2015)’을 추진
- 우리나라의 경우 원조정책의 체계화와 선진화를 위해서는 ODA정책의 일관성, 지속성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 제도적·법적 기반 확충에 노력해야 할 것임.
 - 이러한 노력은 국제화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ODA의 급속한 증대에 앞서서

만드시 선행되어야 할 정책과제로서 국민적 지지와 참여를 기반으로 원조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기본 틀로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특히 원조정책의 목표와 주요 방침시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은 우리나라의 독자성을 반영하는 한국형 개발협력모델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경제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는 주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2. 대외원조정책심의회 설치

◇ 중장기 원조정책 및 실시체제 개편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외원조정책심의회”를 설치

- 우리나라의 원조운영체제는 기본적으로 분권형으로서 독일이나 일본이 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을 분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원조의 상환유무에 따라 유·무상원조기관을 분리하고 있음(표 10 참조)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ODA정책에 있어서 조정역할이 취약하고, 실시기관간에도 업무협력체제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 정책결정은 물론 운용 및 시행에 있어서 많은 비효율성을 낳고 있음.

< 표 10 > 주요국의 원조실시체제 및 유형

유형	국가	원조기관	주무부처
전담기관형	미국 스웨덴 호주 캐나다	미국국제개발청(USAID) 스웨덴국제개발청(SIDA) 호주국제개발청(AusAID) 캐나다국제개발청(CIDA)	국무부 외교통상부 외무·무역부 외교통상부
전담부처형	독일 영국	부흥금융금고(KfW) 기술협력공사(GTZ) 국제개발부(DID) 영연방개발공사(CDC)	경제협력부(BMZ) 국제개발부(DID)
분권형	일본 한국	국제협력은행(JIBC) 국제협력사업단(JICA) 수출입은행(EXIM) 한국국제협력단(KOICA)	4省 협의체 외무성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도국 원조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대외원조정책심의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할 필요가 있음.
- 관련부처 정부인사를 포함, 학계, 개발NGO 대표 등이 참가하는 고위급 정책자문·심의기관을 구성

- 정부차원에서 작성한 원조프로그램 및 중장기 정책을 심의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원조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 지침(조직개편 포함)을 결정하여 최종적으로 국무총리 혹은 국무회의에서 승인
- 원조사업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감독을 위해 연간으로 ODA 백서 및 사업별 사후평가 보고서를 발간
- 우선 시급하게 원조정책 및 실시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 사실상 이원화되어 있는 현재 원조체제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서는 ▲ 정책적 차원에서 관련부처 협의기구를 만드는 방안 ▲ 원조실시기관간의 유기적이고 협조적인 업무체제를 구축하는 방안 ▲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양 부처(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의 해당부서 통합 등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임.
 - 특히 한국국제협력단의 전문적인 업무능력 제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인적·제도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성과중심의 원조사업 업무추진체제 개선을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는 원조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전문화를 위해서 “대외원조청” 설립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위해 관련부처간의 긴밀한 협의·조정이 필요함.
 - 향후 대외원조업무의 질적 개선, 원조정책에 있어서 일관된 업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칭 ‘대외원조청’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개발컨설턴트 및 전문인력 육성

- ◇ 특성화된 대학의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지원
- ◇ 국제개발협회를 설립하여 컨설팅 능력 배양
- ◇ 민간 개발컨설턴트 육성방안 마련

- 개발원조분야가 전문화, 다양화되고 있으나, ODA 관련 전문가가 부족
 - 정부는 물론 대학, 개발 NGO 등 전반적으로 인력양성을 체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협회나 기관설립이 시급함.
 - 중장기적으로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국제대학원이나 특정 대학에 개발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재정지원 및 정부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 정부지원하에 ‘국제개발협회’를 구성하여 3~6개월의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제컨설팅 업무를 병행 추진토록 함.
 - 고위급 퇴직공무원, 국제금융기관에서 근무한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컨설팅 능력배양에 중점
- ODA의 양적 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민간기업, 개발 NGO 등 개발컨설팅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 한국국제협력단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사업추진 시스템을 정비하고, 업무감독 및 사후평가시스템을 강화하여 민간기업의 ODA 사업 참여시 체계적인 관리

감독 추진

- 엔지니어링 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혹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조하여 국제기관 입찰사업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인력풀을 운영
- 민간부문의 우수한 엔지니어링업체가 개발건설턴트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ODA 사업관련 용역단가를 국제수준으로 현실화
- 국제금융기관의 경우 중진전문가의 용역단가는 16,000불/월 수준, 일본 엔차관 사업의 경우 20,000불/월 수준이나, 국내기업의 경우 절반수준에 불과하여 원조사업이 부실화되고 있음.

4. ODA 통계작성 수정·보완

◇ 현재 누락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도국 지원 및 대북 지원사업을 포함한 ODA 통계작성

- 현재 정부차원에서 추계하고 있는 ODA 통계가 중앙정부 및 원조실시기관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보다 과소추계되고 있어 ODA 양적 규모를 확대하기 이전에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통계작성에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DAC 통계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지방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의 원조액을 조사하고, 북한에 대한 ODA 지원액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실제 ODA 통계치를 정확히 산출하여야 할 것임.
- 이러한 통계작성의 보완을 통해 ODA 규모 확대를 위한 정확한 통계치를 근거로 향후 추진목표를 명확히 하고, 양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상의 부담을 최소화
- 특히 우리나라의 ODA 통계에 있어서 분단국가라는 특수여건을 감안하여 대북지원사업을 제외하고 있는데, 전체 ODA 규모에서 대북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ODA규모는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임.
- OECD개발원조위원회(DAC) 수원국 대상(DAC List)에 북한은 저소득국가로 분류되어 있으며, OECD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들은 1998년 이후 연간 1~2억 불을 기록(표 11 참조)
- 우리나라 ODA 통계에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포함시킨다면 2001년 북한지원 규모가 국민총수입(GNI) 대비 0.020%이므로 우리나라 ODA/GNI 비율은 0.063%에서 0.083% 증가하게 됨.
- 현재 대북지원사업은 국가간의 원조가 아닌 민족 내부특수관계로 보아 통일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WTO 협정 비준시 국회에서 북한과의 거래를 내국민거래로 규정한 점, 헌법상 북한지위 문제 등이 고려되어 ODA 추계에서 제외되어 있음.
- 그러나 국제적으로 북한 지원문제가 보다 본격화될 전망이고, 매년 우리나라의 대북지원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표 11 > DAC 회원국 및 우리나라의 대북 ODA 실적 비교

(단위 : 백만USD)

	1997	1998	1999	2000	20001
DAC의 대북ODA	88	109	201	75	119
한국의 대북지원	27	11	28	156	86
- 무상지원 ¹⁾	27	11	28	79	71
- 유상지원 ²⁾	-	-	-	77	15
- GNI 비중	0.006	0.003	0.007	0.034	0.020

주: 1) 대북인도적 지원사업중 정부지원사업규모

2) 대북 식량차관 및 자재·장비 차관 대출

자료: 통일부 자료

-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지원에 대한 우리정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다는 측면에서도 ODA통계에 對북한 인도적 지원액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됨.
- 만약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제회의 혹은 ODA 통계작성시
OECD개발원조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경수로 사업 등 다자간 지원체제하에서 한국의 기여분에 대해서는 국제적 관
례 및 미·일 등의 입장을 고려

< 참 조 > 대북지원규모와 양허성

- 우리나라의 대북지원사업은 ODA 통계에 포함될 수 있으나,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정부차원의 공식 ODA 추계에서 제외되어 있음.
-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사업은 주로 식량, 비료 등 식량난 해소를 위한 긴급구호사업과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북한의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지원 등으로 양허성 원조로서
ODA 사업에 부합하고 있음.
- OECD/OECD개발원조위원회의 규정에 의하면, 북한은 수원국 대상(OECD개발원조위원회)
List에 포함되어 있어 우리정부의 쌍무적 지원사업 대부분은 일정한 절차를 밟아 공식적
인 ODA 통계치로 OECD개발원조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자원의 대북사업은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무상지원사업
과 비료 및 장비지급과 관련된 차관사업(연리 1%, 10년 거치 30년 상환)으로 구분되고 있음.
- 그동안 정부차원의 대북 지원규모는 1997년 2,667만불에서 2001년 7,045만불로 급속히 증대
해 왔고, 1998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대북 차관사업도 지원 규모가 점차 증대되고 있어
대북 지원사업을 ODA 추계에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
단됨.
- 국민총수입(GNI)대비 정부의 대북 지원규모는 2001년 0.020%로서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이
고, 헌법상의 북한의 지위, WTO에서의 내국민 대우 기준 등과 상치여부, 국제적 사례를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공식 혹은 비공식적으로 ODA 통계로 인정받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가 있음.

5. OECD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추진

◇ 2006년을 목표로 DAC 가입을 추진

-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중장기 과제는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이라고 할 수 있음.
 - OECD 회원국으로서 국제협력에 있어서 역할분담이라는 공동의무는 회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국제사회에 있어서 개도국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실정임.
- OECD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을 위해서는 국민총수입(GNI)대비 ODA 비율이 최소 0.1% 수준에 도달하고, 0.2%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청사진 제시가 필요
 - 현재 OECD 회원국으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 DAC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아이슬란드, 멕시코, 터키, 헝가리,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임.
 - 선발개도국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OECD에서 DAC 가입은 사실상 선진국으로서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로서는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여 DAC 가입을 더 이상 유보해서는 안될 것임.
- 선진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경제의 자유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동시에 DAC 가입을 목표로 국제적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추진해 나가야 함.
 - 특히 DAC 가입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원조정책의 안정적 운용체제가 마련된다면, 중장기적으로 개도국과의 협력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우리나라가 DAC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원조규모가 중장기적으로는 DAC 평균수준인 0.2% 수준으로 크게 확대되어야 함.
 - OECD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을 위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999년 12월 비교적 최근에 가입한 바 있는 그리스의 경우, 가입조건으로 2001년까지 5년간 4억 불을 공여키로 하고, GNP대비 ODA 규모를 1997년 0.14%, 1998년 0.15% 수준에서 2000년에는 0.2% 수준으로 증대시켜 왔음.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가입당시 최소한의 양적규모는 GNP대비 0.1%이상을 유지하면서, DAC 가입후 단기간내에 DAC의 평균수준에 근접한 규모를 달성해야 할 것임.
- DAC 가입을 염두에 두고, 2010년까지의 단계별 정책과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표 12 참조).
 - 우선 DAC에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할 때까지를 원조정책의 새로운 전환기로 상정하여, 대개도국 원조정책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준비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 향후 5년간을 원조정책의 "개혁기"로 설정하여, ODA 규모의 양적

증대를 최우선과제로 상정하고, ODA 배증계획과 함께 원조사업의 효율적 운용방안과 원조운용체제 개선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표 12> 원조정책의 단계별 개혁안

	원조정책의 개혁기	원조정책의 도약기
설정기간	2003년 ~ 2006년	2007년 ~ 2010년
주요목표	ODA/GNP 비율 0.1% (매년 20% 이상의 예산증액)	ODA/GNP 비율 0.2%
중점목표	ODA 배증계획 추진 ODA의 효과성·효율성 제고 국민참여 및 NGO 지원 확대 원조정책의 일관성 확보	DAC 가입 추진 ODA의 질적 개선 도모 원조기관 일원화(대외원조청) 추진

- 계획대로 원조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여 GNP 대비 ODA 비율이 2006년에 DAC 회원국 최저수준인 0.1% 수준까지 증가하면, OECD 가입 10주년인 2006년을 목표로 DAC 가입을 추진
 - 향후 4년간은 원조정책의 “도약기”로 설정하여 2007년 ~ 2010년내에 DAC 평균 수준인 0.2%까지 원조를 단계적으로 증대해야 할 것임.
 - DAC 가입을 목표로 ODA 질적 개선에 주력하면서 원조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이원화된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대외원조청과 같은 원조기관의 단일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이와 같이 DAC 가입을 위한 제반 노력이 원조정책의 개혁시기와 도약시기를 통해 면밀히 추진될 때, 비로소 우리나라는 DAC 회원국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고, 개도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안정적인 협력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한국의 경제개발경험 전수를 열망하는 후발 개도국의 유·무상협력 요청에 부응함으로써 선진국 진입에 따른 우리의 국제적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OECD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ODA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향후 개도국과의 개발협력기반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개도국에 대한 적정지원과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 경제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임.

참고문헌

- 권율, 『주요국의 對베트남 경제협력과 한국의 ODA 지원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1994. 11.
- _____, 『ODA 운용체제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5. 12.
- _____, 『OECD/DAC의 공적개발원조 논의와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9.
- _____, 『공적자금의 연계를 통한 對개도국 경제협력추진방안』, 이창재안응호 공저, KIEP, 2000. 10.
- _____,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OECD 논의」, 『OECD Focus』, 대외경제정책연구원·외교통상부, 2003. 7.
- _____, 「우리나라 ODA정책의 선진화 방안」, 『세계화와 더불어 사는 길』, 환경재단·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세미나 자료집, 2003. 7.
- 김채형, 『OECD회원국의 NGO활동-개발원조를 중심으로』, 한국국제협력단, 1992. 12.
- 김학수, 『한국의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연계방안』, KIEP, 1993. 7.
- 이경수,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2.
- 외무부,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ODA』, 2002. 6.
- 재정경제원 대외경제국, 『1995년도 공적개발원조백서』, 1996. 7.
- 통일부, 『통일백서』 2002년판, 2002. 2.
- _____, 「인도적 대북 지원현황」, 각호.
- 한국국제협력단, 『OECD/DAC국가의 원조정책 및 현황』, 1995. 6.
- _____, 『한국국제협력단연보』, 각년판.
-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더불어 사는 지구촌』, 2000. 5.
- 西壇昭·下村恭民, 『開發援助の經濟學』, 有斐閣, 1993. 9.
- 國際協力推進協會, 『我が國の政府開發援助 : ODA 白書』, 東京, 2001.
- Export-Import Bank of Korea, *EDCF Annual Report 2001*, 2002.
- OECD, *Principles for Evalua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 1991.
- _____, *Harmonising Donor Practices for Effective Aid Delivery*, 2003.
- OECD/DAC, *Development Cooperation*, 각년판.
- _____, *Statistical Reporting Directive*, 2000. 5.
- <http://www.koexim.go.kr>
- <http://www.koica.go.kr>
- <http://www.unikorea.go.kr>
- <http://www.oecd.org>

대외원조정책(ODA) 개선방안 워크숍

2004. 11. 26-11. 27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대외원조정책 개선방안 워크숍 개요

1. 워크숍 개요

- 1) 목 적 : 대외원조정책(이하 ODA) 개선방안에 관한 1차 워크숍(2004. 6. 25) 결과에 대한 후속작업으로 관련부처,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한 가운데 ODA의 양적, 질적구조 개선방안 관한 입장 및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정책자문안을 작성함.
- 2) 일 시 : 2004. 11. 26.(금) 14:00~11. 27.(토) 13:00
- 3) 장 소 : 양평 한화콘도
- 4) 주 최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대외협력교육전문위원회
- 5) 참석자 : 남재우 기획운영실장, 남상민, 신혜수, 진월(이영호) 국제협력소위원회, 외교통상부, 재경부, 환경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KOICA, 수출입은행, 해외원조단체협의회, 관련 시민단체, 전경련 등 30여명

2. 워크숍 세부 일정

【2004년 11월 26일, 금요일, 첫째날】

14:00 - 14:20 가. 개회식

- 1) 인사말 : 남재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획운영실장
- 2) 경과보고 : 신혜수 국제협력소위 간사
◎ 대외원조정책(ODA) 개선방안에 대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논의경과

14:20 -15:50 나. 주제발표 I : 대외원조정책개선방안 (사회:신혜수 위원)

- 1) 발표1 : 조현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
◎ 우리나라 ODA 발전방향
- 2) 발표2 : 안동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총무부장
◎ KOICA의 개혁방안
- 3) 발표3 : 양돈선 재정경제부 개발협력과
◎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개선방안
- 4) 발표4 : 박태동 한국수출입은행 경제협력본부
◎ EDCF 지원 개선방안

15:50 - 16:10 휴 식

16:10 - 16:30 다. 주제발표 II: 해외협력지원사업 현황과 과제 (사회:신혜수 위원)

- 1) 발표1 : 강석우 환경부 국제협력관실 지구환경담당관실 사무관
◎ 환경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및 향후 전망
- 2) 발표2 : 김동원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실 사무관
◎ 보건복지분야의 해외지원사업 특성과 과제

16:30 - 18:00 라. 종합토론: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현황과 과제(사회:신혜수 위원)

- 1) 민담규 전경련 국제협력실 선임조사역
- 2) 윤현봉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사무총장
- 3) 정정섭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상임부회장
- 4) 차명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교수
- 5) 한비아 한국월드비전 긴급구호팀장
- 6) 한재광 지구촌나눔운동 사업부장
- 7) 허병철 플랜트산업협회 기획관리팀장

18:00 - 19:00 석 식 (불낙전골)

19:00 - 21:30 마. 집중주제토론 I : 대외원조정책 주요쟁점 및 개선방안
(사회: 남상민 위원)

- 주요쟁점 및 개선방안과 관련한 각 기관 및 단체의 의견 정리서 제출

【2004년 11월 27일, 토요일, 둘째날】

08:00 - 09:00 조 식(복어해장국)

09:00 - 10:40 바. 집중주제토론 II : 대외원조정책 개선을 위한 문제해결방향
(사회: 남상민 위원)

- 개선대책의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과 관련한 각 기관 및 단체의 의견 정리서 제출

10:40 - 11:00 휴 식

11:00 -12:00 사. 대외원조정책(ODA) 개선방안 제안서 작성 및 발표

- 종합토론과 집중주제토론(I·II)의 내용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위 제안서(초안) 작성 및 발표

12:00 -13:00 중 식(산채비빔밥)

<주제발표 I : 대외원조정책 개선방안>

우리나라 ODA 발전방향

조 현 (외교부 국제경제국장)

1.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가. ODA 지원실적('98 - '03)

구 분	'98	'99	'00	'01	'02	'03
ODA	182.7	317.5	212.1	264.6	278.8	365.9
양자원조	124.7	131.3	131.2	171.5	206.8	245.2
무상원조	37.2	38.9	47.8	53.0	66.7	145.5*
유상원조(EDCF)	87.5	92.4	83.4	118.5	140.1	99.7
다자원조	58.01	186.1	80.9	93.1	72.0	120.7
ODA/GNI(%)	0.058	0.079	0.047	0.063	0.06	0.06

※ 대이라크지원(40백만불) 아프간지원(21백만불) 포함

나. 무상원조

1) '91년 KOICA 설립이후 '97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나, '97년 금융위기로 '98-'99년간 감소세를 보인 후, '0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93년 33백만불 → '03년 1.4억불)

가) '03년에 최초로 무상원조(1.4억불)가 유상원조(1억불)를 초과

2) 2004년 무상원조 현황 : 122개국 총 1.8억불(2,200억원*) 지원

* 이라크 재건지원(660억원) 및 중동 특별지원(360억원) 예비비 1,020억원 포함

가) 지원비중은 아시아 68%, 아프리카 12.7%, 중남미 10.2%, 구주 7.8%, 중동 3.3%, 국제기구 1.3%의 순

※ 10대 지원대상국 : ①베트남(680만불), ②인니(500만불), ③필리핀(463만불), ④중국(430만불), ⑤캄보디아(348만불), ⑥미얀마(297만불), ⑦라오스(290만불), ⑧페루(190만불), ⑨태국(184만불), ⑩몽골(168만불)

다. 유상원조(EDCF)

1) 91년 이후 연도별 증감을 반복하면서 꾸준한 증가추세를 기록

가) 01년에는 처음으로 1억불을 초과하였으며, 02년에 최고치(1.4억불)를 기록

2) 분야별로는 교통(26%), 통신(23%), 에너지(12.6%), 보건(11%), 교육(7.6%) 순으로 지원

※ 10대 지원대상국(달러기준) : ①중국(2.33억불), ②베트남(1.82억불), ③인도네시아(1.78억불), ④스리랑카(1.77억불), ⑤방글라데시(1.25억불), ⑥필리핀(1.08억불), ⑦미얀마(85백만불), ⑧루마니아(81백만불), ⑨우즈베키스탄(77백만불), ⑩캄보디아(65백만불)

2. 현행 ODA 시행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조정 메카니즘(coordination mechanism) 강화

1) 무상원조 시행 부처간 협의 강화

가) 관계부처의 무상원조 확대 추세를 감안, 정례 협의채널 신설 및 제도화 필요성 증대

※ 미국 및 일본의 경우, 부처별 원조사업은 현지 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USAID도 미 국무부내 해당부서의 승인을 거치는 사례를 참고할 필요

나)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각 부처의 전문성을 잘 살리되, 종합적인 조정 역할은 외교부가 수행함이 바람직

2) 유·무상 사업간 조정기능 강화

가) 수원국과의 포괄적인 합동 협의체 구성, 운영

○ 우리 유관부서(외교부, 재경부, 수출입은행, KOICA)와 주요 수원국 관계부서간 합동으로 ODA 정책 협의 실시

나) 수원국별 통합된 유·무상 지원전략 수립(country program)

○ 수원국에서 무상과 유상원조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됨이 없이 따로 제공됨으로써 상호 연계성과 원조의 성과가 미흡한 실정

3) 「ODA 실무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가) 현행 ODA 시행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현행 법률(KOICA법, EDCF법)상의 조정 메카니즘을 개선

○ 유·무상간 연계를 강화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조정기구를 설치, 실질적인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

－ 「대외원조조정위원회」 또는 「ODA실무조정위원회」(가칭) 설치 필요

나. ODA 사업의 질적 개선

1) 국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ODA 프로그램 개발

가) 국별 수요(needs)와 개발전략에 부응하는 지원방안 마련 필요

○ 기존 사업형태별 배분방식 보다는 문제해결형 사업체계 수립 바람직

2) 사후 관리

가) 사후 모니터링

○ feedback을 통한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현행 자체 사후평가를 세계은행과 같은 독립적인 외부기관도 함께 참여토록 함이 바람직

－ 현행 자체 사후평가는 외부전문가도 참여하고 있으나 평가기능이 미약

나) 기업의 책임성

○ EDCF는 기본적으로 민간 베이스의 수익사업이 아닌 정부간 원조사업이라는 인식이 필요

－ 이러한 원조사업의 특성상 사업 시행 기업의 책임성(corporate responsibility)을 강화하여 정책문서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다) 유무상간 사업 연계

- EDCF 완료사업의 사후관리를 무상 기술협력사업으로 연계함이 바람직
 - 수원국이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과 자조노력(self-help efforts)을 측면 지원

3)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

가) 그간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실적이 미흡하고 단편적으로 지원

- 그간 소규모 긴급 인도적 지원에 집중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라크, 아프간 등 특수한 상황 발생으로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

나) 국제기구와 체계적인 협력체제 구축 필요

-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선진 원조기업 습득
- 상업적 이익만을 도모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우리의 대외적 visibility를 높이는 데 효과적
- 국제기구와의 정책협의 채널 강화(예 : UNDP와의 정책대화)

4) outsourcing 확대

가) 이라크, 아프간, 중동지역 특별 지원 등 무상원조 규모의 확대로 원조업무는 폭증하고 있으나, 원조담당 기구의 인력은 동결 상태

- 이러한 상황에서 원조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과감한 외주가 필요

나) 실제 사업수행(operation) 업무는 외부기관에 위임하고, 정책개발·연구조사기능을 강화할 필요

- 주요 외주 방안
 - NGO 육성 차원에서 원조업무의 일부를 NGO에 위탁(해외봉사단 파견 업무 일부) : 현재 시행중
 - 연수초청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 개발, 평가·관리업무에 집중하고, 집행 업무를 연구기관등에 위탁 : 추진중

다. 외교정책과의 정책일관성(poliy coherence) 강화

1) 장·단기 ODA 목표간 균형적 추구

가) 외교적·전략적 중장기 목표의 틀내에서 단기적으로 기업진출·수출증진의 단기 목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책일관성을 강화할 필요

나) ODA는 국제무대에서 개도국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며, 개도국과의 현안 해결에 중요한 leverage로 활용 가능

2) 외교정책과의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사례

가) 이라크 재건 지원 및 중동 특별 무상원조

나) 대 중국 ODA 지원 문제

3) 법령 또는 정책문서 제정 필요성

가) 현행 우리 원조정책이 대외적으로 선명성이 부족한 점을 감안, 종합적인 중장기 대외원조 정책 방향과 목표 설정 필요

-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visibility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차별화된 원조 정책을 대외적으로 표방할 필요
- 나) 우리 현실과 경험에 기초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우리만의 독특한 개발경험을 반영한 원조정책을 작성, 법령 또는 정책문서로 채택함이 바람직
 - ODA 이념, 구체 목표, 중장기 전략, 유무상 조정 메카니즘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ODA 관련법은 없는 상태

라. 대북 협력사업의 ODA 포함 문제

1) 장·단점

가) 장점 : 통계상 ODA 규모가 크게 확대

- 03년 기준 기존 ODA는 3.5억불로서 대북 지원을 합할 경우 크게 확대
- OECD/DAC 가입에 긍정적 기여
 - 현재의 ODA 규모로도 DAC 가입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대북지원 포함시 가입여건의 크게 호전
 - ※ DAC 가입기준 : ODA 1억불 또는 ODA/GNI 비율 0.2%

나) 단점

- 국내·국제법상 북한의 지위 문제
 - 북한은 국제법상 우리가 승인한 국가가 아니며, 헌법 등 국내법상으로도 국가간 관계가 아닌 남북한 특수관계로 인식
- ODA 착시현상
 - 대북지원 포함시 ODA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일반국민 및 정부내 ODA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지지 감소 우려
 - 북한을 제외한 여타 개도국들의 실질적 수혜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결과를 초래

2) KOICA 활용방안

- ##### 가) 향후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무상원조 사업이 실시될 경우, 대개도국 협력사업 경험이 많은 KOICA에서 담당함이 바람직
- 동 사업이 여타 대 개도국 협력사업과 유사한 형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감안

3. 결 론 :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는 중견국가』 이미지 구축

가. 외교안보 정책의 중요 수단으로서의 ODA

- 1) 국제사회의 존경은 이념(민주주의, 시장경제), 군사력, 경제력과 함께 국가 안보를 결정짓는 중요 요소
 - 가) ODA는 간접적 안보 비용이라는 개념으로 간주 필요
 - 최근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중인 일본이 ODA 예산삭감에 따라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할 필요(10.15 FT지 보도)
- 2) 우리나라의 국제적 여건에 걸맞는 대외원조 목적 추구 필요

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주변 4국과의 관계, 남북한 관계 등 우리나라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 호의적인 국제여론 확보가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나) 대외원조를 국가 이미지 개선, 국가 IR 등 외교전략적 목적에 적극 활용 필요

※ 국가 특성별 대외원조 목적

- 식민지 중주국형 : 과거 식민지 국가에 대한 영향력 유지
- 제국형(미국) :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신의 외교목표, 이념적 가치 전파, 세계적 질서유지 목적
- 지역강국(일본 등) : 인접지역내의 영향력 확대
- 중견국(북구) : 호의적인 국제여론 확보를 통한 간접적인 안보전략 추구

나. 능동적이고 예측 가능한 자체 중장기 ODA 확대 계획 수립

1) 최근의 무상원조 증가는 이라크, 아프간 등 특수한 외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이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타 국가에 대한 지원규모를 축소 내지 동결하는 결과 초래

가) 향후 중장기 외교적·전략적 수요를 발굴, 범 정부차원에서 적어도 중기(3-5년) 재원확충 계획을 능동적으로 수립할 필요

2) 우리 국력과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적정 ODA 규모 산정 필요

가) 1인당 국민소득 US\$12,000시 한국과 일본의 ODA 비교

(단위 : 백만불)

	한국 (2003년)	일본 (1985년)
ODA (A+B)	365.9	3,796.8
양자원조 (A)	245.2	2,557.0
- 무상원조	145.5	1,184.8
- 유상원조	99.7	1,372.1
다자원조 (B)	120.7	1,239.9
1인당 GNI (불)	12,020 불	11,423불
ODA/GNI (%)	0.06	0.29

나)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내외 국가의 ODA 규모

국 가	1인당국민소득 (불, '03년)	ODA 규모 (백만불, '02년)	무상원조 비중(%)	1인당 ODA (불, '02년)
아일랜드	26,960	398	100	102
캐나다	23,930	2,006	101.6**	64
호주*	21,650	989	100	50
이태리	21,560	2,332	107.7**	41
스페인*	16,990	1,712	77.1	42
뉴질랜드	15,870	122	100	31
한국	12,020	365.9	59	6

* 우리나라 GDP 규모와 유사한 수준인 국가

** 순유상지출(지원액-상환액)이 마이너스이므로 무상원조 비율이 100%를 초과

다. 국민 참여형 ODA 정책 정립

1) 국민의 참여 확대

가) NGO에 대한 지원 및 협력 강화

- KOICA의 NGO에 대한 지원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바, 앞으로도 지속 확대 추진

나) 일반 국민의 협력사업 참여여건 확대

- 봉사단 파견인원의 대폭 확대 : 기존 연간 2백명에서 금년도부터 7백명 수준으로 확대
- 봉사단 파견대상 직종의 다양화 및 파견시기 조정 등을 통한 국민의 수요에 부응
 - 현행 30여개 직종→100여개 직종으로 확대 추진
 -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파견
- 봉사단 양성제도 도입
 - 봉사단 활동을 원하나, 특별한 기술 또는 기능이 부족한 국민을 대상
- 퇴직인력 활용을 위해 senior volunteer 제도 도입 등

다) 집행 업무의 외주 활성화

- 개발조사사업 : 타당성 조사 및 본 사업 집행(operation) 업무
- 인력사업 : 봉사단 파견사업의 일부를 NGO에 위탁
 - 모집, 선발, 훈련, 파견, 해외활동 지원에 NGO를 적극활용

2) ODA에 대한 국민의 지지 확보

- 가) 언론/TV 매체를 통한 홍보, ODA관련 세미나 개최, 정책고객단 구성, ODA data의 일반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 등 대 국민 ODA 인식제고 노력 필요

KOICA의 개혁방안

안동원 (한국국제협력단 총무부장)

1. 대내외 여건 변화

가. ODA 사업에 대한 국내 관심 고조

1) ODA 및 KOICA 사업비 증대

가) ODA : 57백만불('91) → 334백만불('03) / 약 6배 증가

나) KOICA 사업비 : 22백만불('91) → 185백만불('03) / 약 8배 증가

2) 관심증대

가)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우리나라 대개도국 ODA정책의 개혁과제와 개선방안 마련

나) 정부, 국회, 언론, NGO 등 시민사회 등의 감시역할 증대

다) 국민 각계각층의 개도국협력사업 참여욕구 확산

나. OECD 회원국으로서 우리의 역할 증대

1) 개도국의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적 공동노력 강화

가) 1992.6, 유엔환경개발회의 개최

○ 21세기 지구인의 행동강령인 의제 21(Agenda 21) 채택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립, 의제 21의 실시 촉구 및 이행 사항 점검

나) 1995, 사회개발정상회의시 “20/20 이니셔티브” 발표

○ 개도국 정부예산의 20%와 ODA의 20%를 사회개발분야에 배정

다) 1996, OECD/DAC 고위급 회의시 2015년까지 빈곤층을 반감 목표

○ Shaping the 21st Century :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라) 1999, 최빈국 회의

마) 2000,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

○ 2015년까지 절대빈곤층을 반감 (밀레니엄 개발 목표)

바) 2002, 유엔개발재원회의

○ OECD/DAC 회원국 : ODA 현 570억불(2002) → 686억불(2006)로 증액
약속

다. OECD/DAC 가입추진에 따른 선진원조 시스템 구축 필요

1) 가입 필요성

가) DAC 가입으로 소득 2만불 시대의 위상에 걸 맞는 역할 필요

나)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가입 권유

2) DAC의 2대 기본 임무(Mand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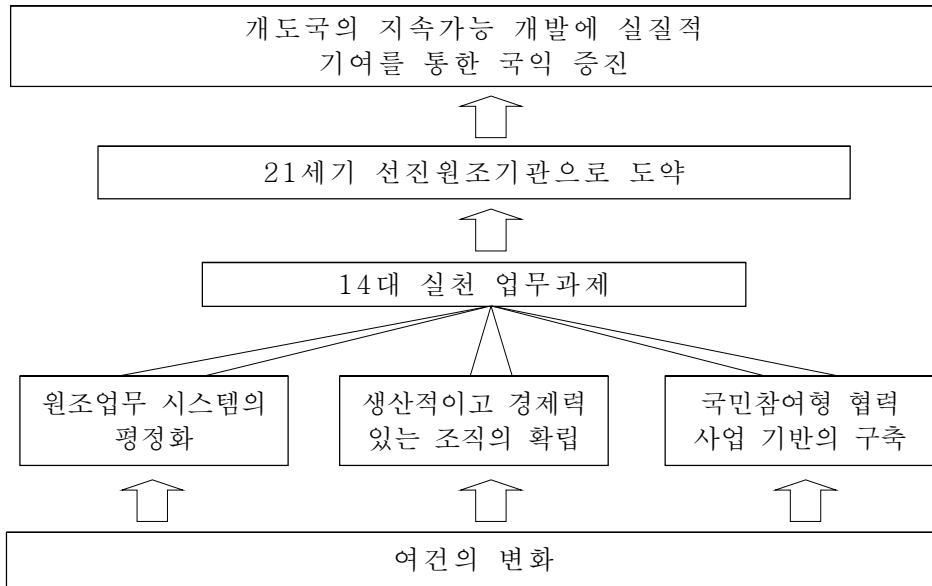
가) 회원국 ODA의 양적 증대

나) ODA의 지원효과 제고

3) DAC 회원국 의무

- 가) ODA 증대 노력
- 나) ODA 질적 개선 노력
- 다) 각종 가이드라인과 원칙준수를 통한 ODA 효과 제고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ODA 업무 시스템의 선진화 필요

2. 3대 전략 및 14대 실천 업무과제



가. 원조업무 시스템의 선진화

- 1) 국별·분야별계획(Country- and Sector-wide Approach)의 도입
- 2) KOICA 업무영역 재정립
- 3) 원조기법의 선진화
- 4) 성과중심 협력사업의 확대
- 5) 연구조사의 강화
- 6)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체제 강화

나.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체제의 확립

- 7) 사업수행체제의 개편
- 8) 인사제도의 개선
- 9) 교육훈련의 강화
- 10) 평가체제 강화

다. 국민참여형 협력사업 기반의 구축

- 11) NGO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
- 12) 일반국민의 협력사업 참여여건 확대
- 13) 집행업무의 외부위탁 확대
- 14) 대국민 홍보 및 정보공유 기능 강화

가. 원조업무 시스템의 선진화

1) 국별.분야별계획제도(Country- and sector-wide Approach의 도입)

가) 선진원조기관 및 국제기구 업무방식 (문제해결형)

추진 단계	내용	비고
국별 원조 기본방향 설정 (문제발굴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단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미나, 워크샵, 토론회 등 ○ 정책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우선분야 및 지원범위 결정 	○ 종합진단
분야별 지원계획 작성 (정밀진단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타당성 조사 	○ 분야별 진단
지원방식 결정 (사업계획 수립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관 또는 무상원조 ○ 프로젝트, 물자지원, 기술협력 등 	○ 문제해결 수단의 결정
정부간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년 단위 중기협력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d-term Expenditure Framework - Sector Investment Program 등 	

나) 현 KOICA 업무방식 및 문제점 (사업형태별 배분형)

- 해당국별로 사업형태별 물량기준 배분방식
 - 사업형태별 수요조사
 - 사업형태별 예산편성
 - 사업형태별 직제 및 집행
- <예 외>
 - * 이라크, 아프간 지원본부
 - * IT협력팀
- 문제점
 - 국별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원조프로그램의 추진 곤란
 - 각 사업형태별 연계곤란
 - 우선순위가 낮거나 불필요한 원조사례발생 우려

다) 국별.분야별계획의 등장배경 및 개요

- * 별첨자료 참조

2) KOICA 업무영역 재정립

<중전>

- 집행업무 중점
- 본부중심 협력사업 집행

<개선방안>

- 집행업무 → 외부위탁
 - 프로젝트: 프로젝트관리 컨설턴트제도 및 타당성조사 위탁제도
 - 연수생: 집행업무의 완전위탁
 - 봉사단: 모집.선발, 훈련, 물품지원, 경비송금 및 정산업무의 위탁

<예: 연수사업>

현 행		개 선	
업무내용	업무비중	업무내용	업무비중
프로그램개발, 준비	40%	프로그램 개발, 준비	80%
평가	7%	평가, 관리	20%
과정진행	35%	외주	0%
회계, 행정	18%	외주	0%
계	100%	계	100%

- 주력업무 → 기획, 심사,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조사
- 해외현장 기능강화
 - 본부승인사항을 현지공관 및 해외사무소에 대폭 권한 이양
 - 각종 협력사업의 해외현장 감독기능 강화
 - 발굴사업에 대한 현지 공관 및 해외사무소의 1차 심의기능 강화

<기초치 사항>

- 1단계 사항 완료

3) 원조기법의 선진화

- 수요조사
 - 현행 : 공여자 편의위주(Donor-oriented)의 사업형태별 수요조사
 - 개선 : 수요자 위주(Customer-oriented)의 개발과제별 문제해결형 수요조사
- 프로젝트 심사
 - 기술, 제도, 재무, 경제, 사회적 측면, 환경 및 여성 등 공통과제(Cross-cutting Issues)의 분석
 - 수익성 분석기법 도입: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비용편익(Cost benefit) 분석
 - 위험도 및 불확실성(Risk and Uncertainty) 분석
- 프로젝트 기획
 - Logical Framework Approach 도입
- 프로젝트 집행, 모니터링 및 평가
 -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기법 도입
 - 각종 보고서식의 국제 규격화

<기초치 사항>

- 1997: Logical Framework 제도 도입 및 관련자료 발간
- 2003.11: 일본 국제개발고등교육재단 전문가 초빙, 직원들을 대상으로 Project Management Cycle에 대한 교육실시
- 2003.12: 프로젝트분석입문 발간
- 2004.11 현재: 국제공인 PMP(Project Management Professional) 자격증 취득자 3명, 교육이수자 42명, 전직원 PMP자격증 취득 의무화 추진중

4) 성과중심 협력사업의 확대

<현 실태 및 문제점>

- 개별전문인력 파견(전문가, 의사, 태권도사범) 지원효과의 지속성(Sustainability)의 미흡
 - 파견비용대비 성과의 미흡으로 사업효율성 저조
 - ⇒ 개별전문인력 파견사업은 수원국가의 제도구축(Institution-building)면에서 실질적인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
(1993년 UNDP 조사보고, 2003년 KOICA 자체평가)
- 일반연수과정
 - 통상 10여 개국으로부터 20여명의 연수생 참가
 - ⇒ 지역별, 국별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구성이 어려움
 - 연수과정을 통해 배운 내용을 귀국 후 자국의 실정에 적용할 수 있는 인적, 제도적, 물적 지원여건 미비
 - ⇒ 수원국가의 제도구축(Institution-building)면에서 실질적인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 (Assessing Aid, World Bank, 1998)

<개선방안> 프로그램형 인력협력사업의 적극 추진

- 수원국의 특정 개발과제의 해결을 목표로 제도구축(Institution-building)에 실질적으로 기여 가능
 - 연수생초청사업, 전문가파견사업을 연계
 - 전문가 팀제 파견제도의 도입
 - 단년도 1회성 사업 → 다년간 연계형 계속사업

<기조치사항>

- 2004년부터 시범 5개과정 시작

5) 연구조사의 강화

<연구조사의 중요성 : 세계은행 발행 Assessing Aid, 1998>

- 지난 50여년간 개발원조 경험과 교훈
 - 개발원조는 물적 지원보다 개발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의 전수가 더 중요하므로 연구조사를 강화해야함.
 - 연구조사가 미비된 원조사업은 실패하거나 성과가 저조한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되었음.

<현 실태 및 문제점>

- 1997년말 우리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 결과
 - 직제정원 : 400명 → 203명
 - 현 원 : 249명 → 187명
 - 연구원 : 실무부서 배치
 - 2000년10월 인력부족으로 전문연구원제도 폐지
- 현 협력정책반 : 4명

- 실질적인 연구조사 기능 미흡

<연구조사 기능 강화방안>

- 협력단 직원의 적극 활용
 - 국별, 분야별, 개발과제별 연구과제 수행에 직원들의 적극 참여
 -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의 참여 의무화
 - 자생적인 연구조사활동의 적극 지원
 - 각종 인센티브제도 도입
 - ⇒ 연구활동 예산지원
 - ⇒ 우수 연구결과에 대한 포상
 - ⇒ 연구성과물의 출판
 - ⇒ 인사고과에 반영 등
- 외부 전문인력의 적극 활용
 - 직원들이 작성한 연구보고서에 대한 외부 자문제도 도입
 - 계약직 연구원제도의 도입
-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력강화
 - 외부 연구용역 및 공동연구의 적극 추진: 2003년 2건, 2004년 2건
- 중장기적으로는 KOICA산하에 연구소 설립 추진

<JICA 산하 국제협력연구소의 주요 기능>

- 전문가 확보, 양성 및 훈련
- 국별, 분야별 연구조사
- 기술이전 기법 연구
- 대국민 국제협력교육 및 정보전파

- 2004.5, 시안마련

6)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체제 강화

<국내>

- 이사회, 자문회의 기능의 활성화
 - 국별 연구회, 주요사업별(예: 봉사단 파견사업 등) 자문위원회 구성
- 수출입은행, 국내 연구기관, 협력기관, NGO 등과 정기 협의체제 확립

<수원국>

- 수원국 정부와의 정책대화 강화
 - 주요 수원국 대상 : 양자가 원조정책협의회, 다자간 원조공여국 회의에 적극 참가
 - 해외사무소의 주재국내 원조관련 각종회의에 적극 참여

<원조기구>

- 주요 선진국 및 UN등 국제기구와의 정기적인 협력체제 강화

나.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체제의 확립

7) 사업수행체제의 개편

<현행>

- 7개 협력사업 형태별 직제
 - 연수생초청, 전문가파견, 봉사단파견, 개발조사, 물자지원, 프로젝트, NGO 지원사업 등
- 다수 팀제
 - 7부, 2실, 2반, 24팀

<개선방안>

- 대 팀제 운영
 - 부장제도 폐지 검토
 - 2실, 2반, 24팀을 대폭 축소
- 공여자 편의를 위주로 한 집행업무 중심의 업무체제
 - 분야별 개별과제 해결을 위한 수요자 중심(Customer-Oriented)과 기획, 심사,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주로 한 업무추진 체제로 전환
 - 현행 프로젝트, 개발조사 및 물자지원사업 등 개발사업은 사업 형태별 직제에서 분야별 직제로 변경
 - 프로그램형 인력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직제 도입
 - ⇒ 장기적인 프로그램형 인력협력사업은 개발사업에 편입
 - 기타사업(개별연수, 봉사단파견, NGO지원사업)은 현행 사업형태별 직제 유지

8) 인사제도의 개선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직원의 전문화 제고 및 협력사업 수행역량 강화>

- 다면평가제 도입
- 임원직에 대한 개방형 공모제, 해외사무소 및 주요 보직에 대한 대내 공모제 도입
- 성과급제의 전면적 실시 및 연봉제 도입
- 직급정년제 도입

9) 교육훈련의 강화

<직원 평생경력관리 체제의 확립>

- 개인별 교육계좌제도(Education Account System)도입
 - 개인별 교육성과의 객관적 인증 및 인사에 반영
 - 국제협력전문가 인증제도
- 직급별 교육목표 관리제 도입
 - 외국어, 국제협력 전문지식, 실무지식 등
 - 승진 및 주요보직 임명시 최소 교육이수 자격요건 적용

<전문인력의 양성>

- 석·박사 과정 이수 대상자의 대폭확대
- 국제기구 및 선진원조기관에 직원파견 확대
- 국내유관기관과 직원교류 추진

- 10) 평가체제 강화
 - 외부 경영 평가 제도 도입
 - OECD/DAC 기준에 따른 원조사업 평가체제 확립

다. 국민참여형 협력사업 기반의 구축

- 11) NGO에 대한 지원 및 협력강화
 - 1995년 : 5억원
 - 1997년 : 7억원
 - 2001년 : 9억원
 - 2003년 : 84억원
 - 2004: NGO현장에 KOICA 봉사단원 33명 파견
- 12) 일반국민의 협력사업 참여여건 확대
 - 봉사단 파견인원의 대폭 확대 : 현행 연간 200명 수준 → 700명 수준
 - 파견기간의 다양화
 - 봉사단, 태권도사범, 의료단원 등 : 2년 이내의 단기 파견제도 도입
 - 봉사단 파견대상 직종의 다양화
 - 현행 30여개 직종 → 100여개 직종
 - 봉사단 자격인증제도
 - 상대평가 방식 → 절대평가 방식
 -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파견
 - 봉사단 양성제도 도입
 - 봉사단 활동을 원하나 특별한 기술 및 기능이 부족한 자를 대상
 - Senior Volunteer 제도도입 : 조기 퇴직인력 활용 강화
 - 상시 등록제도 도입
 - 파견인력 처우개선
 - 봉사경험의 사회환원체제의 확립
 - Career path 마련
 - 진로개척의 지원
- 13) 집행업무의 외부위탁 확대
 - 개발사업
 - 타당성조사 및 본 사업 집행업무
 - 인력사업
 - 프로그램형 인력사업의 집행업무
 - 봉사단 파견사업: 모집, 선발, 국내훈련, 해외활동 지원업무에 귀국 단원, NGO 및 유관기관을 적극활용
- 14) 대국민 교육, 홍보 및 정보공유 기능 강화
 - 대국민 개발교육 활동강화
 - 지방정부 및 NGO관계자

- 전문인력 양성
- 기획홍보강화
- 각 사업별 홍보기회 다양화
- 협력사업관련 각종 보고서의 전산화 및 일반 공개 적극 추진
 - 각종 보고서의 CD-Rom 제작 등
- 정보화 사업의 적극 추진

3. 추진방안 및 일정

가. 추진 방안

- 1) 사업별 과제
 - 담당이사 책임 하에 추진
- 2) 인사·제도 부문 과제
 - 총무기획이사 책임 하에 전담 작업반을 구성하여 추진

나.추진 일정

- 1) 2003. 11월 제도개선 실무위원회 구성
- 2) 2004. 2.27, 최종보고서 발행 및 시행
- 3) 2004. 11, KOICA 혁신추진반 구성
- 4) 2005. 1/4분기, 관련규정 개정 및 시행

첨부: 분야별 원조방법 (Sector-wide Approach:SWAP)과 KOICA

분야별 원조방법(Sector-wide Approach: SWAP)과 KOICA4)*

1990년 후반부터 개발원조기관은 새로운 원조방법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즉, 어떠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할 때, 종래의 개별 프로젝트 단위의 원조방법에서 특정 분야와 관련된 제반 협력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는 “분야별원조방법(Sector-wide Approach: SWAP)”이 그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각 공여국간 업무조정(coordination)을 통한 역할분담, 공통된 업무집행 등이 성공의 중요한 관건중의 하나이므로 개별 공여국의 자율성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KOICA도 이러한 새로운 추세를 파악하여 잘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공통된 시스템과 네트워크 안에서 일치된 행동원칙(code of conduct)을 필요로 하는 글로벌경제화시대에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ODA 개발원조부문에 있어서도 세계적 기준(Global Standards)에 부응할 수 있는 체제정비가 절실한 시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본고에서는 SWAP의 등장 배경, 관련된 내용 및 사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SWAP의 등장배경

1-1. 프로젝트원조의 제한적인 성과

2차대전후 개발도상국이 안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는 저축 및 외환부족('two-gap' theory)으로 보고 주로 '프로젝트원조'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프로젝트원조는 공여자의 주도적인 역할이 가능하고 공여국측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발원조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여 왔다. 1980년 세계은행그룹 5)에서 제공한 프로젝트원조는 전체원조자금의 82%, 70년대 중반 OECD 회원국의 경우 프로젝트원조가 52%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젝트를 위주로 한 원조는 대부분의 경우 공여국측의 프로젝트 전담조직(autonomous project units)을 통하여 집행되어 수원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배제되었고 프로젝트의 완공에만 역점을 둠으로써 기대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과 프로젝트의 “지속성(sustainability)”이 주요 개발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1-2. 구조 조정 정책 (Structural Adjustment Policy)과 문제점

4) 한국국제협력단 발행 “지구촌가족” 2003년 하반기호에 게재(도표는 생략)된 내용임.

5) 세계은행그룹은 세계은행으로 통칭되고 있는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와 그 자매기구인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와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를 말한다.

1970년대 2차에 걸친 석유과동 이후, 국제 문제화된 개도국의 외채위기 처리방안의 일환으로 개도국이 도입한 IMF 차관에 대한 상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0년 4월부터 세계은행은 수원국의 구조조정 개혁실시를 조건으로 프로젝트가 아닌 자금지원방식의 원조가 시작되었다. 수원국에 요구한 주요 개혁내용은 채무개도국이 당면하고 있는 만성적인 문제는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국내 정책과 제도개혁이 미비된 것이 기인한다고 보고 ‘자유로운 시장기능의 회복이 최선의 개발정책’이라는 신자유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입자유화, 보조금제도 폐지, 민영화, 환율자유화, 가격통제 폐지 등이 포함되었다. 이 자금의 지원은 조건부인 반면 집행은 프로젝트원조의 경우와 달리 수원국이 상당한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으로 주요 선진국 원조기관 및 지역 개발은행에서도 이 정책에 따른 원조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을 조건부로 한 구조조정원조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80년부터 1999년 사이에 아프리카지역의 1인당 소득은 648불에서 492불로 떨어졌으며 1998년 기준의 최빈국의 1인당 평균소득은 287불로서 1980년대 31개국이던 최빈국가의 수는 49개국으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 국제수지 및 재정수지 개선 등 거시경제부문에 대한 지원을 위주로 하는 구조조정원조보다 관리가 용이하고 단위 프로젝트차원의 미시적인 지원형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거시부문과 미시부문의 중간차원(meso-level)의 원조형태라 할 수 있는 부문별 원조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1-3. 원조자금의 용도대체가능성 (fungibility)

우리는 중국이나 베트남의 직업훈련분야에 1천만불을 지원하면 당연히 1천만불만큼 그 나라의 직업훈련분야에 플러스요인이 생긴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가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중국정부에서 어느 해 직업훈련분야에 1억불의 예산을 책정해 두었는데, 그 해에 KOICA에서 1천만불의 직업훈련사업을 지원해주기로 결정하자, 중국정부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예산 1억불이면 현 여건상 직업훈련분야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KOICA에서 지원키로 한 1천만불 만큼 다른 곳으로 예산을 전용키로 하였다. 그런데 KOICA가 지원키로 한 1천만불은 중국측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대신 자체예산으로 편성해 두었던 예산 1천만불을 사용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KOICA의 1천만불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의 직업훈련분야의 예산은 당초와 변동없이 1억불에 그치고 말게 된다. 만약에 중국정부가 이 1천만불을 군비증강에 사용키로 하였다면 우리가 지원한 1천만불은 사실상 중국의 군비증강용으로 용도가 대체된(fungible) 것과 마찬가지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처럼 원조자금이 용도가 대체될 경우에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만 가지고 당해 프로젝트의 효과를 파악할 수 없다(“What you see is not what you get.”)는 것을 알 수 있다. 용도대체가능성은 구조조정정책에 따른 자금지원이 늘어나면서 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원조자금의 용도

대체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원조공여기관과 수원국간 그리고 원조공여국간 긴밀한 협의와 합의, 즉 “파트너쉽(partnership)” 및 “원조조정 (aid coordination)”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1-4. 포괄적 접근방법의 등장

1990년대 말에는 원조전략의 수립에 있어 개별 프로젝트차원을 넘어 “포괄적인 접근방법 (comprehensive approach)”이 등장한다. 1998년 UN은 주요원조대상국별로 “UN개발원조계획(UN Development Assistance Framework : UNDAF)”을 도입하여 UN산하 원조기구들이 특정한 국가에 대해 통일된 중기개발계획의 틀 속에서 공동협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999년 세계은행은 “포괄적 개발계획 (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 CDF)”이라는 새로운 개발원조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에는 개도국의 발전은 경제면뿐만 아니라 구조적, 사회적, 인간적 측면고려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원조기구, NGO 및 민간부문간 공동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1996년도 발표된 OECD/DAC 보고서의 ‘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가 파트너쉽과 주인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2. SWAP의 주요 내용

이상과 같은 배경하에서 SWAP가 도입되게되는데 SWAP는 용어와 그 내용면에서 원조기관별로 다양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공여기관별로 Sector Program Support, Sector-wide Support, Sector Investment Program, Sector Development Program, Sectoral Budget Support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SWAP로 통칭하기로 한다. SWAP는 세계은행에서 시작한 구조조정원조를 발전적으로 변형시킨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이의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기관도 세계은행이다. 세계은행은 효과적인 SWAP 7)의 추진을 위한 몇 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즉, (1) 적절한 거시경제 및 부문별 정책계획이 마련될 것, (2) 원조계획은 부문별로 마련되어야 할 것, (3) 수원국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의사를 가지고 있을 것, (4) 수원국 정부가 적절한 사업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5) 공여국들이 공통된 사업수행방법을 사용의 필요성에 동의할 것 등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원조의 모든 과정에 수원국이 ‘운전석’에 앉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과 ‘조수석’에 앉은 공여국은 운전자가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일관된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6) 각 원조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법에 따른 원조방법이 모두 일치한다는 것은 아님.

7) 세계은행에서는 SWAP대신 “분야별 투자 프로그램(Sector Investment Program: SIP)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수원국과 공여국간 그리고 공여국간 파트너십(partnership)이 SWAP의 핵심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2001년 9.11사태 직후 미국주도에 의한 아프간 공습 등으로 탈리반정권이 몰려난 이후 2002년 1월 개최된 “아프간 재건을 위한 동경국제회의”에는 60개공여국과 12개 국제기구 및 각국의 NGO 대표들이 참석하여 아프간 재건에 필요한 지원을 약속한바 있으며, 현재 아프간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기관의 원조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SWAP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의 사례를 통해 SWAP의 내용 및 절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2-1. 수원국의 Ownership 에 의한 국가개발계획 및 분야별 개발계획의 수립

SWAP는 수원국이 수립한 분야별 개발계획에 부응할 수 있는 분야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분야별 개발계획은 국가개발계획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우선 개발목표, 개발전략, 우선순위별 사업추진 및 예산계획을 포함하는 “중장기국가개발계획”을 바탕으로 “각 분야별 중장기 개발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계획의 수립은 원조기관의 재정적, 기술적인 지원하에 해당 공무원들의 능력향상(capacity-building)과 제도구축(institution-building)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종전의 경우에는 원조기관의 주도하에 모든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원국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었던 반면, SWAP에서는 “수원국은 운전석, 원조기관은 보조석”이라는 원칙하에 수원국측이 모든 절차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원조기관은 보조적 자문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종전의 방식과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아프가니스탄정부는 이러한 국가개발계획의 수립과 원조조정업무를 담당시키기 위하여 2002년 2월 아프간원조조정기구 (Afghan Assistance Coordination Authority: AACCA)를 설립하였다. AACCA는 2002년 4월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개최된 “제1차 아프간재건을 위한 이행그룹회의”에 “국가개발계획 (National Development Framework: NDF)”을 제출하여 추인을 받은 후 관련된 예산안을 작성하였다. 이어 NDF에 제시된 12개 분야에 대해 각 해당부처별로 마련한 분야별 중기개발계획을 2002년 10월에 개최된 제2차 이행그룹회의에서 추인 받은 후 관련 예산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작업에는 UN기구, 일본, 영국 등 주요 원조기구에서 파견한 자문관들도 참여하고 관련된 공무원의 능력향상(capacity-building)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되었지만, 아프간 각 정부부처의 핵심인력으로 구성된 전담반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렇게 하여 마련된 개발계획에 대해 수원국측은 아래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므로 각 원조기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수원국은 원조공여국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의지를 필요로 한다. 즉,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이미 마련해 놓고 이를 집행하려는데, 당신들이 이를 도와 준다면 적극 환영하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도와준다면 유감스럽지만 사양하겠소 (it requires a government with the willpower to say to donors: “Here is my program in this sector; if you wish to help me implement it, you are most welcome. if you wish to do something different, I regret that you are not welcome in this sector in this country.”). 8)

2-2. 파트너쉽

원조공여국의 지원동기는 다양하며 자신들이 지원한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에 보다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공여국들이 서로 경쟁심을 버리고 각자의 개별적인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수원국의 보다 근본적인 발전을 이루는데 중점을 두고 서로 파트너쉽을 발휘할 때 보다 높은 원조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각종 사례조사를 통하여 입증되고 있다. 운전을 배우고자 운전석에 앉아 도로운전실습을 하는 운전자는 1명인데 운전실습교사가 다수일 경우,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운전실습교사들의 의견을 잘 조율하여 한 가지 의견을 신속히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SWAP에 있어 이러한 의견조정은 각종 원조업무조정회의(aid-coordination meeting)을 통하여 이뤄진다.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재건 1차년도 초기에 다양한 원조조정회의가 운영되어 왔다. 아프간 임시정부 출범이전 아프간 국외원조정기구 역할을 담당해온 “아프간 지원그룹회의(Afghan Support Group Meeting: ASG)”, 임시정부출범후 “고위급조정위원회(High-level Steering Committee)”, 분기별로 개최되는 “이행그룹회의(Implementation Group Meeting)”, 월 2회 개최되는 아프간 현지실무그룹회의, 수시로 개최되는 분야별회의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아프간정부는 2002년 4월의 제1차 이행그룹회의에서 다양한 원조조정회의의 일원화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여 2002년 10월 제2차 이행그룹회의에서 기존의 각종회의를 “심의그룹체제(Consultative Group Structure: CGS)”에 통합하기로 하였는데 이 CGS는 아래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

- CGS의 총회성격으로 모든 공여국, 국제기구 및 NGO 대표들이 참석하는 “아프간 개발포럼(Afghanistan Development Forum)을 매년 3월에 개최
- CGS의 산하에는 아프간내 주재 공여국 공관 및 원조기관 대표가 참석하 “심의그룹상임위원회(Consultative Group Standing Committee: CGSC)를 매월 1회 개최
- 국가개발계획상 12개 주요분야별로 심의그룹(Consultative Group: CG)을 구성하여 월례회 개최

8) Harold, P. (1995) The Broad Sector Approach to Investment Lending: Sector Invest Programs, World Bank Discussion Paper 302, World Bank, p.13.

- 환경, 인권, 여성개발 등 공통개발과제(cross-cutting issues)에 대해서는 각 과제별로 자문그룹(advisory group)을 구성하여 월례회 개최
아울러, CGS의 운영원칙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CGS는 아프간정부가 주도하며, 각 회의의 의장은 아프간 정부측에서 담당하도록 함.
- 각 공여국의 원조는 (i) 분야별 중기개발 및 예산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ii)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해서는 각 원조기관들이 공통된 원조방법과 절차를 적용하여야 함.
- 각 공여국은 12개분야중 3개정도의 분야에 특화하여 중점지원토록 하고, 동 중점 분야에 해당하는 분야별 CG에 정회원으로서 참가토록 하고, 각 공여국이 지원코자하는 사업안건은 분야별 CG의 심의를 거쳐야 함.
 - * 우리나라는 교육 및 훈련, 보건 및 영양, 생계 및 사회보호분야 CG에 정회원으로 참석하고 있음.

3. 주요 선진국의 사례

구미선진국의 많은 원조기관들은 이상과 같이 설명한 SWAP에 부합하는 나름대로의 원조전략을 수립하여 적용해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덴마크의 "분야별 프로그램 지원계획(Sector Program Support: SPS)"이다. 덴마크는 1994년 "분야별 프로그램 지원전략(Sector Program Support Strategy)"을 도입하고, 1999년 4월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덴마크의 중점협력대상 20개국에 대한 원조는 5년단위의 "국별원조전략(Country Strategy: CS)"에 기본을 두며 중점의 프로젝트 위주의 원조에서 보다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관점의 분야별 원조를 적극 추진함.
- CS는 덴마크가 중점을 두고 지원해야할 분야를 정하고 각 대상국별로 2-4개 정도의 분야에 한하여 10-20년 장기간 지원을 목표로 함.
- SPS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수원국이 특정분야와 관련된 일련의 전략, 정책 및 사업계획(National Sector Framework: NSF)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계획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임.
- NSF는 단위사업(element)으로 구성되고, 단위사업은 사업수단(component)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하며, 덴마크는 NSF의 형성과 사업수단(component)에 대한 지원을 주로 함.
 - * 여기서 단위사업은 "공무원 능력향상 프로그램" 등이 해당되며, 사업수단은 연수생초청, 자문관파견 및 물자제공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타원조기관, NGO 등 지원대상분야에 관계되는 모든 관계자와 정책대화를 강화함.
- 덴마크의 역할은 수원국이 기확립한 계획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나 물자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치며 덴마크 자체의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형성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음.

5. 시사점

SWAP은 수원국의 입장에서나 공여국의 입장에서 볼 때 아직 제대로 확립된 제도가 아니며 아직도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보다 나은 모델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선진공여국 및 국제기구들은 과거 원조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원조대상국을 대상으로 점차 분야별 원조방법을 채택해 나가고 있다. 또한 위에서 예를 든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우리 협력단이 중점대상국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부분의 개도국에는 세계은행과 UNDP가 주도하는 Consultative Group Meeting이 제도화되어 있으며 본격적인 재건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이ラク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우리 협력단이 협력사업을 지원하는데 있어 우리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한편으로는 국제규범과 일치하는 원조기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덴마크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우리도 중점협력대상국별로 국별원조계획(Country-programming)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종전에는 우리의 1국당 지원규모가 크지 않아 국별원조계획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이제 아프가니스탄 및 이ラク 등의 경우에는 연간지원규모가 최소 1천만원불 이상이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은 유무상원조를 합할 경우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 우선 이러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별원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의 분야별원조접근방법의 추세를 감안시 우리의 중점지원분야를 특화할 필요가 있다. 아프간의 경우 각 공여국은 3개분야를 특화하여 중점지원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분야의 분야별 CG에서 영향력을 행사를 통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소수의 중점분야에 집중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분야별 CG회의에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 CG의 경우 정책적인 과제보다는 기술적인 과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프간의 경우에도, 분야별 CG에 참석하여 활동하는 위원들은 원조기관들의 직원보다는 원조기관 직속전문가와 컨설턴트가 대부분이다. 직속 협력단의 경우도 이제 중점지원분야별 협력단 직속전문가제도의 도입이나 외부 컨설턴트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SWAP의 경우 원조를 제공하는데 있어 같은 분야에 참여하는 다른 원조기관과 공동된 규범을 따라야 하므로 개별 공여국의 자율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시, 협력단의 경우도 제반 협력사업의 입안, 집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하는데 있어 국제적 규범과 관행에 적합한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며, 이와 관련된 연구조사 및 교육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정책의 개선방안

양돈선(재경부 개발협력과장)

1.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현황과 문제점

가. 현황

- 1)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는 '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설립, '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창설과 함께 본격화
 - 가) EDCF는 설립 이후 1조 5,659억원을 조성, 1조 1,160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원승인액은 1조 9,310억원에 이룸('03년말)
 - 나) KOICA는 설립 이후 총 6,753억원*을 지원('03년말)
 - 프로젝트 사업 : 1,548억원, 물자공여 : 1,402억원, 연수생 파견 : 775억원 등
 우리나라 ODA는 양자간 원조의 경우 재경부와 수출입은행이 유상원조를, 외교부와 KOICA가 무상원조를 담당
- 2) 다자간 원조는 재경부의 국제금융기구 출연금, 외교부의 국제기구 증여금이 대부분을 차지

< 우리나라의 ODA 지원 현황 >

(단위: 백만불, %)

	'00		'01		'02		'03(잠정)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ODA(A+B)	212	100	265	100	279	100	366	100
○ 양자간원조(A)	131	62	172	65	207	74	245	67
- 무상원조	48	23	53	20	67	24	145	40
- 유상원조	83	39	119	45	140	50	100	27
○ 다자간원조(B)	81	38	93	35	72	26	121	33
- 국제기구 증여	26	12	35	13	22	8	51	14
- 국제금융기구 출연	62	29	60	23	54	19	87	24
- 기 타*	△7	-3	△2	-1	△3	-1	△17	-5

* IMF 등 국제금융기구에 공여한 융자금의 회수

나. 문제점

- 1) ODA 지원규모 부족
 - 가) 우리나라의 ODA 지원규모는 '87년 24백만불에서 '03년 3억 66백만불로 15배 가량 증대되었으나, 우리의 경제규모와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면 매우 부족한 수준
 - '90년대 초 OECD 가입정책의 일환으로 ODA 확대를 추진하였으나,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확대계획이 담보상태

< 우리나라의 ODA 지원규모 >

(단위 : 백만불)

연도	'87	'91	'92	'93	'94	'95	'97	'98	'99	'00	'01	'02	'03
ODA 지원액	24	58	77	112	140	116	186	183	318	212	265	279	366

나) 우리나라의 ODA 지원규모는 GNI 대비 0.06%로, OECD개발원조위원회 (DAC) 회원국 평균의 1/4에 불과하며,

- 우리와 GNI 규모가 유사한 네덜란드, 스페인, 호주 등에 비해서도 매우 저조한 실정

<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ODA 공여수준 ('02년) >

국 가 명	GNI (10억불)	인구 (백만명)	1인당 GNI(불)	ODA (백만불)	GNI대비 ODA*(%)	1인당 ODA 공여액(불)
한 국	473	47.6	9,930	279	0.06	6
네덜란드	412	16.1	25,500	3,338	0.81	207
스 페 인	652	41.2	15,800	1,712	0.26	42
호 주	387	19.6	19,800	989	0.26	50
뉴질랜드	55	3.9	13,900	122	0.22	31
포르투갈	119	10.3	11,500	323	0.27	31
그 리 스	133	11.0	12,200	276	0.21	25
이 태 리	1,174	57.9	20,300	2,332	0.20	40
일 본	4,065	127.4	31,900	9,283	0.23	73
DAC 평균	1,128	39.2	28,787	2,649	0.22	68

2) EDCF 재원규모 부족

가) EDCF는 우리나라 전체 ODA의 30~50%를 차지하고 있으나, 기금 재원 부족으로 기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

-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5년간('98 ~ '02년) 기금의 주된 재원인 정부출연이 중단되었으며 '03, '04년 정부출연도 800억원에 불과
- 연말 보유자금(억원) : 8,198('00)→7,094('01)→5,437('02)→5,211 ('03)

나) '05년 정부출연이 정부안(1,000억원)대로 이루어지고 이후 동일 수준의 출연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는 경우, 2007년에 기금이 고갈되어 기승인된 지원사업에 대한 자금집행도 불가능

- 대개도국 지원약속 이행과 대개도국 차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06년 이후 3,000억원 이상의 정부출연이 필요

- 한편, EDCF 출연 규모는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국제협력단(KOICA)에 비해서도 저조한 상황

< KOICA와 EDCF에 대한 정부출연 규모(억원) >

	‘99	‘00	‘01	‘02	‘03	‘04
KOICA	445	507	711	830	1,656	1,184*
EDCF	-	-	-	-	800	800

* 이라크 지원 목적으로 1,020억원 추경 편성 예정

< EDCF 기금재원 전망 >

(단위 : 억원)

구 분		‘03	‘04(f)	‘05(f)	‘06(f)	‘07(f)	‘08(f)
수입	연초보유자금	5,437	5,211	4,375	3,325	1,260	△1,186
	대출금 회수	197	247	276	276	302	426
	운용수익, 이자	490	456	506	487	475	569
	재정출연*	800	800	1,000	1,000	1,000	1,000
지출	자금 집행액	1,370	2,000	2,500	3,500	3,900	4,500
	운용비용 등	343	339	332	328	323	319
연말보유자금		5,211	4,375	3,325	1,260	△1,186	△4,010

* ‘06년 이후 정부출연이 매년 1,000억원씩 이루어진다고 가정

3) ODA의 질적 수준 미흡

- 가) 유상원조의 경우, 금리, 상환기간 등 지원조건이 선진국에 비해 불리하여 원조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 경협 역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EDCF의 지원조건은 일본 JBIC 엔차관에 비해 금리는 1.6% 높고 상환기간은 10년 정도 짧은 실정
 - 또한 구속성 차관(tied loan)으로 제공됨에 따라 중남미, 북부아프리카 등 국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들의 경우 EDCF 차관 도입을 회피하고 있음

< EDCF와 일본 JBIC 엔차관의 지원조건 비교 >

국가분류	E D C F	J B I C	
		Tied	Untied
2그룹	2.0%, 30년(10년)	0.4%, 40년(10년)	1.3%, 30년(10년)
3그룹	2.5%, 30년(10년)	0.4%, 40년(10년)	1.5%, 30년(10년)
4그룹	3.0%, 25년(7년)	0.4%, 40년(10년)	1.5%, 25년(7년)

- 나) 무상원조의 경우에는 다수 국가에 소액의 일회성 원조자금이 무분별하게 지원되고 있으며, 사후관리가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는 문제점을 노정
- KOICA의 무상원조는 설립 이후 166개국에 지원되어 원조의 집중성이 현저히 낮고 일부 고소득 국가에도 지원되고 있음
- 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외원조는 선진국에 비해 원조 경험이 부족하고 원조 재원이 소규모이며 원조수행기관의 전문성이 낮고 인력도 부족하여 수원국의 원조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짐
- 수원국들은 정기적인 정책협의 실시, 3~5년 단위의 원조 공여액 확정, 신속한 지원절차 진행,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희망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4) 유·무상원조간 연계·조정 부족
- 가) 우리나라의 현행 ODA 운용체계는 양자간 유상원조는 재경부가, 양자간 무상원조는 외교부가 담당하는 「분권형 체제」임
-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와 「KOICA 이사회」를 통해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각각 소관분야 업무에 주력하고 있어 유·무상원조간 협의·조정 기능이 부족
- 나) 현재로서는 전체 ODA 규모가 작아, 이러한 「분권형 체제」 운영에 큰 문제가 없으나,
- 장기적으로 ODA 규모 확대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ODA 정책을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의·조정 기능의 강화가 필요
 - 따라서 유·무상원조를 포괄하는 중장기 원조정책, ODA 규모 확대계획, 유·무상 비율, DAC 가입 문제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ODA 정책을 수립할 필요

〈 우리나라의 ODA 운용체계 〉

구 분	원조방식	담당부처기관
양자간 원조	유상원조 -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한 양허성 차관 제공	재경부, 수출입은행
	무상원조* -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등 기술협력 - 물자공여 등 자금 협력	외교부, KOICA
다자간 원조	국제개발금융기구(IBRD, ADB 등)에 대한 출자	재경부
	국제기구(UN, OECD 등)에 대한 출연 및 분담금*	외교부

*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복지부 등 여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도 기술협력사업, UN 출연금 등 양자 및 다자간 무상원조를 시행중

2.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개선방향

〈 기본 방향 〉

-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수준으로 ODA 규모를 확대
- 지원조건 개선과 수원국 중심의 원조를 통해 ODA의 질적 향상을 추진
-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유무상원조간 연계조정 강화

가. ODA 지원규모 확대

- 1) 중기적으로 GNI의 0.1% 수준까지 ODA 규모 확대를 추진
 - 가) 우리나라의 원조 환경과 예산 제약을 고려하여 ODA 증액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원조자금이 환류되는 유상원조의 비중을 절반 정도로 유지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
- 2) ODA 지원규모 확대의 원활한 추진과 대개도국 지원약속의 이행을 위해서 EDCF 재원을 확충
 - 가) EDCF 차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06년 이후 매년 3,000억 원 이상의 정부출연이 필요할 전망인바,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예산처·국회와 긴밀히 협의
- 3) 원조규모 확대를 통해 OECD/DAC 가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OECD/DAC 회원국 평균 수준(GNI의 0.23%)까지 ODA 지원규모를 확대

나. ODA의 질적 수준 제고

- 1) 유상원조의 경우, 지원 금리 인하, 선택적 지원조건* 도입 등 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원조의 질적 수준을 제고
 - 가)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EDCF의 untied화 문제는 우리기업의 수주능력 및 우리정부의 원조재원 확대 추이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

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

- 수원국의 경제사정과 상환여건에 따라 일정한 증여율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이자율과 상환기간 조합을 선택 적용할 수 있는 제도
- 2) 무상원조의 경우에는 인도주의적 원조 성격을 강화하여, 최빈국·고채무빈국(HIPCs)에 대한 원조와 자연재해·테러 등에 대한 긴급구호를 확대
 - 가) 또한 원조의 집중성을 제고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이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
- 3) 또한 원조 시행 경험·재원·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고 수원국의 원조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 가) 수원국 정부와의 정책협의를 확대 실시하여 수원국의 원조수요를 파악하고, 전략적 중점지원대상국에 대해서는 1~2년 단위로 정책협의를 정례화
 - '04년중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콜롬비아 등 8개국에 대해 정책협의를 기실시
 - 나) ADB, IDB, IBRD 등 국제개발금융기구와의 협조유자를 활성화하여 우량사업에 공동참여하고 선진 원조 노하우를 습득
 - 다) EDCF와 수출금융(export credit)과의 혼합신용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활성화하여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활용

다. 유·무상원조간 연계·조정 강화

- 1) 재경부와 외교부간에 「국장급 ODA 정책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조정 기능 강화를 추진
 - 가) 유·무상원조 사업결과 평가 및 사업계획 협의, 유·무상원조간 협력사업 발굴, ODA 규모 확대, DAC 가입 등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 협의
 - '04.5~6월 감사원 ODA 정책감사 결과를 토대로 협의체 구성 협의중 ('04.9월 재경부·외교부·수은·KOICA 등 관계기관 회의 개최)
- 2) ODA 관련 중요정책에 대해 실무협의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조정함으로써 범정부적 합의를 통해 대외원조를 시행

< 실무협의체 구성에 대한 재경부·외교부(안) >

구분	재경부(안)	외교부(안)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위원장 : 재경부·외교부 국장급 ○ 위원 : 재경부·외교부·수은·KOICA·관련부처 과장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급 조정위 : 재경부·외교부·수은·KOICA·관련부처 국장급 ○ 중견급 조정위 : 재경부·외교부·수은·KOICA·관련부처 과장급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무상원조 사업결과 및 사업계획 협의 ○ 유·무상원조간 협력사업 발굴 ○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 방안, DAC 가입 관련 협의 	<p><고위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DA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국별 유·무상원조 지원기본계획 설정 ○ DAC 가입 등 대외 ODA 기본정책 수립 <p><중견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급 회의 논의사항의 구체적 실행 계획 논의 ○ 대개도국 ODA 정책협의회 통합운영 계획 수립 등
운영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경부·외교부가 번갈아 회의 주재 ○ 정기회 연 2회 (2월,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소집, 준비 등 기본 행정사항은 외교부가 담당 ○ 고위급 : 1/4, 3/4분기 ○ 중견급 : 2/4, 4/4분기

[참고자료 1]

우리나라의 ODA 지원 현황

- 우리나라의 연간 ODA 규모는 '93년 유상원조 증가에 힘입어 연간 1억불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
 - '03년 우리나라의 ODA 지원규모는 총 366백만불(잠정)로 전년 대비 31% 증가

구 분	'91	'92	'93	'94	'95	'96	'97
ODA 총계(A+B)	57.5	76.8	111.6	140.2	116.0	159.2	185.6
증가율	△6.0	33.6	45.3	25.7	△17.3	37.2	16.6
ODA/GNI	0.020	0.025	0.034	0.037	0.026	0.033	0.042
이국간 원조(A)	31.5	45.2	60.1	60.1	71.5	123.3	111.3
- 무상원조	25.0	31.0	32.7	38.5	50.1	53.4	54.8
- 유상원조	6.5	14.2	27.4	21.6	21.4	69.9	56.6
다국간 원조(B)	26.0	31.6	51.4	80.2	44.5	35.8	74.3
- 국제기구 증여	5.8	8.0	10.3	12.9	14.8	30.1	29.1
- 국제금융기구 출연	11.8	21.5	25.7	25.7	22.7	5.8	35.5
- 기 타	8.4	2.1	15.5	41.6	7.0	-	9.7

구 분	'98	'99	'00	'01	'02	'03*
ODA 총계(A+B)	182.7	317.5	212.1	264.7	278.8	365.9
증가율	△1.6	73.8	△33.2	24.8	4.9	31.2
ODA/GNI	0.058	0.079	0.047	0.063	0.059	0.064
이국간 원조(A)	124.7	131.4	131.2	171.5	206.9	254.2
- 무상원조	37.2	39.0	47.8	53.0	66.7	145.5
- 유상원조	87.5	92.4	83.4	118.6	140.1	99.7
다국간 원조(B)	58.0	186.2	80.9	93.1	72.0	120.7
- 국제기구 증여	33.6	67.7	26.1	35.4	21.5	50.6
- 국제금융기구 출연	28.3	129.5	61.5	59.7	53.9	86.7
- 기 타	△3.9	△11.0	△6.7	△2.0	△3.4	△16.6

[참고자료 2]

OECD/CAC 회원국들의 ODA 지원실적

(단위 : 백만불, %)

국 가 명	2003(잠정)*		2002	
	ODA	ODA/GNI	ODA	ODA/GNI
그 리 스	356	0.21	276	0.21
네 델 란 드	4,059	0.81	3,338	0.81
노 르 웨 이	2,043	0.92	1,696	0.89
뉴 질 란 드	169	0.23	122	0.22
덴 마 크	1,747	0.84	1,643	0.96
독 일	6,694	0.28	5,324	0.27
룩셈부르크	189	0.80	147	0.77
미 국	15,791	0.14	13,290	0.13
벨 기 에	1,887	0.61	1,072	0.43
스 웨 덴	2,100	0.70	1,991	0.83
스 위 스	1,297	0.38	939	0.32
스 페 인	2,030	0.25	1,712	0.26
아 일 란 드	510	0.41	398	0.40
영 국	6,166	0.34	4,924	0.31
오스트리아	503	0.20	520	0.26
이 탈 리 아	2,393	0.16	2,332	0.20
일 본	8,911	0.20	9,283	0.23
카 나 다	2,209	0.26	2,006	0.28
포 르 투 칼	298	0.21	323	0.27
프 랑 스	7,337	0.41	5,486	0.38
핀 란 드	556	0.34	462	0.35
호 주	1,238	0.25	990	0.26
계(22)	68,483	0.25	58,274	0.23
우 리 나 라	334	0.06	279	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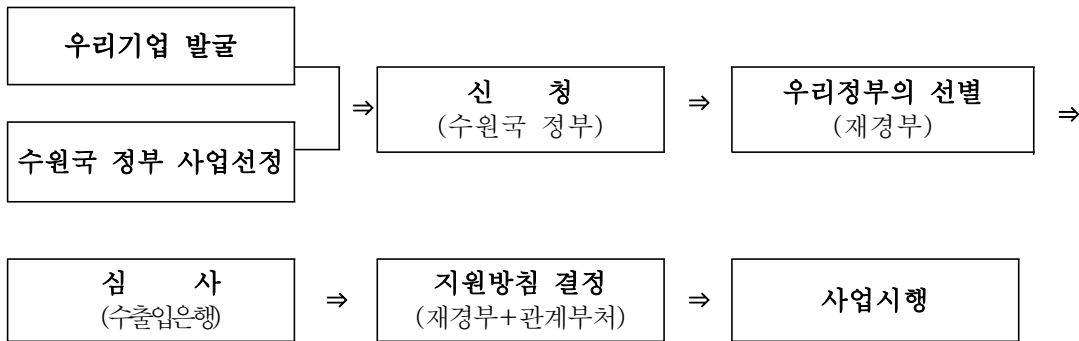
* 2004.6월 현재 잠정통계

EDCF 지원 개선방안

박태동(한국수출입은행 경제협력본부장)

1. 현행 EDCF 지원사업 선정방법

가. 사업 선정 절차



나. 문제점

- 1) EDCF 정책의 일관성 결여 및 EDCF 주도의 사업발굴 부진
- 2) 지역별, 국별 EDCF 자원배분의 효율성 결여
- 3) EDCF 지원의 예측가능성 결여로 지원소요기간 장기화
- 4) 수출효과 및 수원국의 Need 등을 반영한 유망사업 발굴 부진

2. EDCF 국별 프로그램 시행방안(안)

가. 국별 프로그램 추진방안

- 1) 대상국가 : EDCF 중점지원국가중 경험규모 및 잠재력이 큰 국가
 - 가) 예) 아시아 :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미얀마, 파키스탄, 캄보디아, 몽골 등 아시아 10개국
 - 중남미, 아프리카, 동구·CIS 등 : 중점지원국가중 대륙별 진출거점 국가
- 2) 주요 내용
 - 가) 지원규모의 사전결정
 - 한국의 전체 ODA 규모, 수원국의 경험잠재력 및 한국과의 교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기(3~5년)의 지원규모를 사전에 결정
 - 고려 사항
 - 우리나라의 중기 ODA 지원 규모(논의 및 합의 도출 필요)
 - 수원국의 경험잠재력 : 인구, GDP, 경제운용 성과·전망, 보유자원 등
 - 한국과 경험규모 및 향후 잠재력 : 수출, 수입(자원 등), 해외투자, 기타 인적·문화적 교류 등
 - 나) 지원대상 분야에 대한 사전합의
 - EDCF 정책협의 등을 통해서 수원국의 요구(needs)와 우리의 경제적 이익(수출효과 및 후속수주효과)을 절충하여 지원대상 분야를 사전 합의

- 아국의 선호사업(IT, 통신, 환경 등)과 수원국의 선호사업(도로, 상하수도 등 건설 분야)을 절충
- 아국의 전략사업(선점효과/후속수출 기대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조건완화 또는 소액차관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
- IT(SI 및 통신 등) 분야를 중기 전략적 지원분야로 설정하여 지원

다) 사업선정

- o 합의된 지원대상 분야중에서 수원국 정부가 다수의 사업을 제시하고, 이 중에서 매년 또는 2~3년 단위의 지원사업을 양국이 합의하여 결정

3) 추진절차

- 가) 수원국과의 정책협의를 통해 국별 프로그램에 대해 잠정 합의
- 나) 우리정부의 방침 결정(국별 EDCF 지원규모 및 지원분야)
- 다) 국별 프로그램 주요 내용을 양국 정부간 협정으로 확정
- 라) 국별 프로그램에 따라 EDCF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차관계약 체결 후 사업 지원

나. 기대효과

- 1) 수원국 정부 및 우리기업의 사업발굴 용이
- 2)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수원국 경제개발 지원
- 3) EDCF 지원절차 소요기간 단축
- 4) 국별·지역별 EDCF 재원배분의 적정성 유지 용이
- 5) 타 ODA 공여국이나 국제기구와 협력 가능

3. 국별 프로그램 시행의 전제조건

가. 중장기 ODA(EDCF) 지원계획의 수립 및 확정

- 1) 재원확보에 대한 보장
 - 가) 참고자료 : 세계은행, ADB 및 일본의 국별프로그램 운용현황

[참고자료]

1. 세계은행의 국별 지원전략

가. 개요

- 1) World Bank는 수원국의 개발 우선순위에 따라 빈곤감소를 목표로 IDA 및 IBRD 자금 지원국에 대한 ‘국별 지원전략’ (Country Assistance Strategy : CAS)을 수립, 운용
- 2) ‘국별 지원전략’은 수원국 및 관계기관의 참여를 통해 개발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 및 피드백을 통해 개발사업의 지원효과 및 지속성 등의 제고를 도모

나. 연혁

- 1) 당초 World Bank 자체의 내부 전략이었으나, ‘94년부터 수원국 정부, ‘96년부터 NGO 등 민간부문이 국별 지원전략 수립에 참여
- 2) ‘98. 7월 World Bank 이사회는 수원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국별 지원전략 ‘보고서의 공개

다. 수립 기준

- 1) 수원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 개발 우선순위 및 전략에 대한 논의 진행
- 2) 개발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개발지원 및 자원배분 전략 선택
- 3) 빈곤의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
- 4) 거시경제적 성과, 전망, 위험에 대한 분석
- 5) 지배구조, 제도적 효율성, 사업수행 능력에 대한 진단
- 6)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관계
- 7) 시나리오 및 위험에 대한 분석

라. 국별 지원전략 수립 현황 (‘04. 8월 현재)

- 1) 주요 수원국을 중심으로 작성되며, 내용의 유효성 및 향후 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음.

2. ADB의 국별지원전략

가. 개요

- 1) ADB는 수원국의 개발 우선순위와 ADB의 최우선 목표인 빈곤감소에 중점을 두고 수원국과의 합의를 거쳐 중기 개발전략인 ‘국별 전략 프로그램’ (Country Strategy and Program : CSP)을 수립, 운용
- 2) ‘국별 전략 프로그램’은 빈곤감소 전략, 부문별 지원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근거로 활용되며, 수원국 정부 및 관계기관(NGO, 원조기관, 민간부문 등) 등과의 협의를 통해 수립

나. 연혁

- 1) 종전에는 국별 지원의 전략적 근거를 제공하는 ‘국별 운영전략’ (COSS)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국별 지원계획’ (CAP)으로 별도 운용

- 2) ‘01. 8월부터 두 기능을 ‘국별 전략 프로그램’으로 통합

다. 수립 주기

- 1) 수원국 정부 및 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 통상 5년마다 수립되며, 매년 수정

라. 국별 수립 현황 (‘04. 8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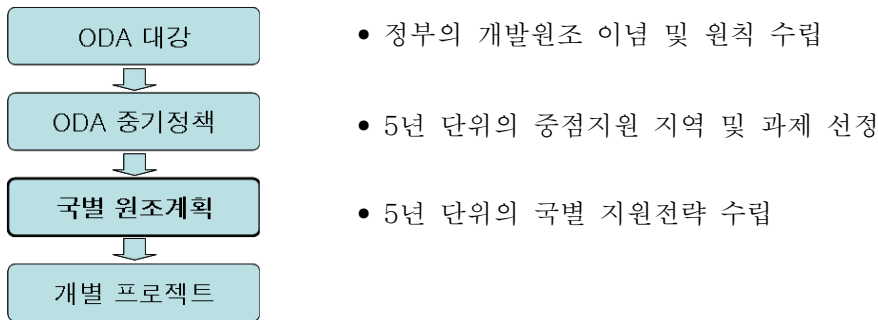
시 기	국 가 명
‘02 ~ ’04	태국
‘03 ~ ’04	동티모르
‘03 ~ ’05	아프가니스탄, 피지, 키리바시, 마셜군도,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04 ~ ’06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중국,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라오스, 몰디브, 몽골,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사모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04 ~ ’08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3. 일본의 국별 지원전략

가. 개요

- 1) 일본(외무성)은 ODA 지원의 전략성,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원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을 바탕으로 개발계획 및 과제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국별 원조계획’을 수립
- 2) 동 계획 수립시 재외공관 및 실시기관(JBIC, JICA)의 현지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원방안 수립

나. 정책 구조



다. 연혁

- 1) ‘98. 11월 ‘대외경제협력 관계 각료회의’에서 국별 원조계획 수립 결정
- 2) ‘03. 8월 ‘ODA 대강’ 개정시 일본 정부의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ODA 지원을 위해 주요 수원국에 대한 국별 원조계획 수립을 명기

라. 국별 수립 현황 ('04. 8월 현재)

구 분	국 가 명
수립 완료(15개국)	방글라데시, 타이, 베트남, 이집트, 가나, 탄자니아, 필리핀, 케냐, 페루, 중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튀니지, 잠비아, 니카라과, 스리랑카
수립 중(4개국)	몽고,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인도
수립 예정(9개국)	신규 :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에티오피아 개정 : 방글라데시, 가나, 타이, 이집트, 필리핀

<주제발표 II: 해외협력·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환경부의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및 향후 전망

강석우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실 사무관)

1. 현 황

가. 다국간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03년 기준)

기구성격		기금성격	규 모	참 고
UN 기구	UNEP	전문가 파견 신탁기금	33.3만불	전문가 파견경비
	ESCAP	전문가 파견 기금	0.6만불	전문가 파견경비
	UNESCO	동북아 생물권 보전네트워크 구축사업 분담금	8.8만불	지역사업 수행부담금
World Bank	IBRD 사업비 (KP사업)		47만불	지역사업 수행부담금
	IBRD 자문관 파견		12.4만불	전문가 파견
GEF	기금분담금		150만불	분담금
IUCN 등	IUCN신탁기금		4.5만불	분담금
계			256만불	

나. 지역환경 협력사업 지원('04년 기준)

사업명	주요 내용	지원규모	성 격
동북아 환경협력 사업	중국서부 생태계복원 사업 지원	11만불	사업지원
	호소수질 개선사업 지원	9만불	사업지원
	환경공무원 교육	11만불	교육사업
두만강유역환경보전사업 후속사업	·환경영향평가 기법 교육사업	6만불	교육사업
계		37만불	

2. 내 용

가. UN(United Nations) 기구 출연

1) UNEP

- 공식 명칭 : UN 환경전문가 신탁기금 (Technical Cooperation Trust Fund for the Provision of Professional Officers)
- 내용 : 파견관 신탁기금(33만불)

2) UN ESCAP

- 공식 명칭 : NRL 전문가 파견 경비
- 내용 (6천불)
 - 한국 환경부에서 파견 경비를 무상 지원
 - 파견된 NRL 전문가는 동북아 황사방지 및 제어를 위한 GEF 사업, ESCAP과 NEASPEC(동북아환경협력고위급회의) 회원국들간 임시 사무국 업무 수행

3) UNESCO EABRN(East Asian Biosphere Reserve Network) 지원사업

- 공식명칭 : 유네스코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협력사업 (ROK Contribution to the East Asian Biosphere Reserve Network)
- 사업기관: 유네스코 베이징 지역사무소(EABRN 사업주관 기관)
- 내용 (8.8만불)
 - 신탁기금으로 지원되며, 유네스코 본부에서도 매칭펀드를 지원하여 동북아 6개국(남한, 북한, 몽골, 중국, 일본, 러시아)의 생태관광, 학술조사,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업 추진
 - 동 네트워크 회의는 북한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1994년에 한국정부(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설립하여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1994년부터 총 8차 당사국 회의 개최, '05.8월 제9차 회의예정, 제주)

나 . World Bank 출연

1) KP(Knowledge Partership) 사업

- 공식명칭 : IBRD 기술자문신탁기금 (Korean Consultant Trust Fund)
- 사업 개요
 - 우리의 모범적 환경경영 지식 및 경험을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아시아 개도국에 전파함으로써 아태지역 환경개선에 기여, 개도국 환경지원 사업 전문인력 육성 및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
 -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사업에 대한 우리나라 컨설턴트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내에 설치·운영중인 기술자문신탁기금에 출연
-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01~
 - 사 업 비 : '03년까지 1,964백만원('04년도 하반기 5.64억원 출연예정)

<주요사업내용>

구분	내 용
'02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중소기업 및 산업공단 환경관리 비교연구(20만불, '03.10.10~'04.9.30) · 필리핀 라구나 호수 통합유역관리 비교연구(10만불, '03.7.21~'04.5.31) · 베트남 전통마을 지역 환경관리(9만9천불, '04.5.24~'05.4.30)
'03년 사업 (추진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 생물다양성 시장조사(105천불) · 베트남 하이퐁시 생태도시 조성연구(18만불) · 라오스의 지방개발전략(환경적 측면) (37천불) · 중국 축산폐수 관리(73천불) · 필리핀 수질법의 규정 이행에 관한 연구(49천불)

다. 지구환경금융(GEF) 출연

1) GEF 개요

- 개도국의 지구환경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사업 비용의 일부를 무상 원조 및 양허성 자금으로 지원하여 환경보호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구차원의 환경문제 해결 도모 (세계은행 이사회에서 GEF 설립 승인 : '91년 3월)
- 우리나라는 지구환경 보전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기금출연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 책임과 의무(Global Stewardship)를 이행

※ 우리나라는 '94년 5월 GEF 가입

2) 재정 규모

구분	참가국	사업예산 규모			비고
		제1기(947-97.6)	제2기(987-02.6)	제3기(027-06.6)	
현 황	176개국	20억 \$	27.5억 \$	29.7억 \$	선진 32개 공여국
우리나라	'94.5월 가입	미화 550만 \$	미화550만불	미화552만불	분담율 0.23%

3) 지원분야

-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국제 수자원, 오존층 보호, 토양 황폐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등 6개 분야

4) 제3기 GEF 우리나라 출연내용

- 사업기간 : GEF 재원보충 제3기(2002년 ~ 2005년)
- 총사업비 : 60억원 ('04년까지 기 투자액 : 48.59억원)
- 사업시행주체 : 지구환경금융 (수탁기관 : 세계은행)

구분	소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원화(억원)	61.55	12.34	19.47	18.12	12.55
달러화(천\$)	4,822	952	1,502	1,398	969

5) 우리나라의 GEF사업 참가 현황

- 우리나라는 GEF의 36개 자원공여국으로 분류되나 수혜도 받음
 -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보전사업(환경부), 황해광역권 생태계 오염저감사업(해양수산부) 등 약 1,200만불 수혜
- 향후에는 GEF 협정 제9조의 수혜자격(Eligibility Criteria)에 해당되지 않아 향후 GEF 사업의 참여는 가능하나 수혜는 곤란

<GEF사업 참가현황>

구분	분야	사업명	기간	참가국	GEF 지원		비고
					총액	우리나라 수혜	
지역 사업	국제 수자원	동아시아 해양 환경보호와 관리를 위한 능력형성 (PEMSEA)	2000.2 - 2004년	동아시아 12개국	1,622만불	없음	해수부 해양환경과
		서해광역권 생태계오염 저감사업 (YSLME)	1998.12-2006년	중국, 한국	1,474만불	약900만불	해양연구원
		두만강유역 생물다양성과 수자원 보호를 위한 TDA 및 SAP 마련 (TumenNET)	2000.8-2002.12	남북한, 중국, 몽골, 러시아	520만불	약 70만불	환경부
	사막화 방지	황사방지 대응사업	2003.1-2004.6	중국, 몽골, 일본, 한국	50만불	없음	환경부
국가 사업	생물 다양성	국제적으로 중요한 국내습지 보전사업 (기초사업)	2001.11-2003.11	한국	35만불	35만불	국립환경연구원
		“ (본사업)	2004.6 - 2008	한국	210만불	210만불	국립환경연구원
협약 사업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국가 이행체제 구축	2002.7-2003.12	UNEP 대한민국	-	18.5만불	국립환경연구원
합 계		7개 사업			3,911만불	1,233만불	

라 . IUCN 국제분담금 납부

- 공식명칭 : 세계자연보전연맹 국제분담금 납부, IUCN Government Agency membership due

※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본부 : 스위스 그랑)

- 내 용 (4.5만불)
 - 세계자연보전연맹은 134개국 880여 국가, 정부기관, NGO 회원 등이 가입되어 세계 생물다양성 등 자연보전대책 강구, 국가간 자연보전 연계사업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85년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활동중에 있으며, 회원국은 UN 분담율에 따라 매년 분담금을 납부

마. 동북아 환경협력사업

1) 사업목적

- 동북아 지역의 황사산성비 등 역내 환경문제에 공동대처 사업
 - ※ 우리나라 주도로 출범한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의 발전 및 협력의 활성화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1 ~
- 사업 예산

(단위: 억원)

구 분	01	02	03	'04	05예산(안)
금 액	5	5	4.7	5.6	5.6

3) 사업 내용

-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TEMM6) 개최
 - 3국 환경장관회의는 '99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창설되어 매년 각 나라가 교대로 개최하는바 2005년의 경우 우리나라 개최 예정임
-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 협력사업(TEMM project) 추진
 - 중국서부생태복원사업, 호소수질개선 공동연구사업, 3국 공동환경교육, 3국 공동홈페이지 운영, 환경교육네트워크 등
- 동북아 황사대응 공동협력사업
- 두만강유역 환경보전사업(TumenNET) 후속조치 등

4) 주요 내용

-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 개최(112백만원)
 - 실무회의 참가(동경 및 북경), 장관회의 개최, 몽골 및 북한 초청, 통역자료인쇄 등 기타
- 중국서부생태복원사업(144백만원)
 - 공동세미나 및 현지조사 실시, 전문가회의 및 자료조사, 중국공무원 교육훈련, 국제공동연구 등

- 호소수질개선 공동연구사업(100백만원)
 - 시스템 구축, DB 및 S/W 구입, 연구자 초청, 전문가회의 참가 등
- 3국 환경교육(141백만원)
 - 3국 공동환경교육 개최, 3국 공동홈페이지 개선 및 운영, 3국 환경교육네트워크 구축 등
- 황사대응 공동협력 사업(88백만원)
 - 실무회의 참가, 국제워크숍 참가 등
- 산성강하물 국제협력사업 분담금(35백만원)
- 두만강유역 환경보전사업(TumenNET) 후속사업 시행(70백만원)
 - 월경성환경문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교육워크숍 개최

3. 전 망

- 국제사회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및 환경정상회의(WSSD)의 합의(JoPI)에 따라 환경분야의 ODA를 획기적으로 증대할 것을 촉구
- 현재 환경부는 년 300만불을 ODA자금으로 지출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ODA 출연 증대 필요
 - ODA 자금중 대부분이 국제기구의 분담금 형식
 - 양자 또는 수자가 참가하는 사업성격의 자금은 총액의 1/3인 100만 미만 수준임
- 그러나 ODA를 통하여 국가 이미지 및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하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 필요
 - 우리나라의 전력적 관심분야 발굴 및 집중화
 - 지역 환경협력 현안에 맞추어 사업 추진
 - 동북아 환경협력 등 지역우선 사업에 역점 추진
 - 국제사회의 합의이행을 고려하여 ODA사업 추진
 - WSSD의 합의 사항 이행과 연계
 - 다자간 환경협약(MEA)의 이행과 연계
 -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및 역할 분담 체계 구축
 - 재경부·외교부(KOICA) 등

보건복지분야의 해외지원사업 특성과 과제

김동원(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실 사무관)

1. 보건복지분야 해외지원 특성

- 체계적인 전문성 - 의료, 의약품 및 의료기술 등과 관련하여 자격있는 전문가의 면밀한 수요파악과 잘 계산조율된 지원 활동이 필요
- 인도주의적 성격 - 국경, 이념 및 국익을 초월하여 전세계의 공감 형성 등 인류애를 실현할 수 있는 매개 역할

2. 지원 현황 및 내역 (별첨 참조)

- 양자간 원조
 - 무상 원조 (외교통상부, KOICA)
 - 보건의료분야 인적교류, 물적지원 등 130억원 (1,085만불) 지원 ('04)
 - 유상 원조 (재정경제부, EDCF)
 -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9개국 12개 사업 2,361억원 (2억불) 지원 ('92 - '02)
- 다자간 원조
 - WHO 부담금 (외교통상부) : 3,219만불 ('98 - '04)
 - 자발적 기여금 (보건복지부)
 - WHO 본부 공여 : 8.8억원 ('97 - '01)
 -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공여 : 18억원 ('96 - '04)
 - UN 여성개발기금 (UNIFEM) 부담금 : 42백만원 ('98 - '04)
 - 국제가족계획연맹(IPPF) 부담금 : 123만불 ('76 - '04)

3. 지원 경과 및 문제점

- 지원 규모가 커지고, 지원의 질적 고도화가 요청되면서, 단일 루트의 정부 지원에 한계 노출
 - KOICA, EDCF의 보건의료분야 전문성의 한계
 - 정부 예산에 주로 의존하는 재원 마련으로, 민간의 지원 활력을 재정적인적으로 끌어들이는데 한계
 - KOICA 등 창설 당시와 달리, 이제는 우리 민간의 해외지원 역량도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를 각 전문분야에서 엮을 조정능력이 요구
 - 각 부처의 국제협력 역량의 강화 필요
- 우리 나라의 지원 규모는 여전히 다른 OECD 국에 못미치며, 지원 형태도 단발적·무계획적인 경우가 많아, 지원의 효력도 반감되고, 우리 실속도 못 차리는 경우가 많음
 - ※ 우리 나라의 ODA 수준은 GNI 대비 0.06% 수준으로 UN 권고 0.7%에 크게 못 미치

- 는 OECD 최저 수준
- 의약품 지원시 국산품 중심, 전염병관리체계 지원시 IT업체와 제휴 및 현지 진출 기업과 연계하여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는 등 실속을 차리는 지원 방안 강구 필요

4. 전문적·체계적 지원의 필요성

- WHO 수장 배출국으로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통하여 보건의료분야 리더 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 또한 동 기구에 진출한 우리 인력의 기구내 권한을 강화하고 회원국 지지 등을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국내인력 진출 기반 확대
-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결핵, SARS 등 전염성 질환관리 및 건강보험 등 우리의 선진화된 보건의료체계관련 연수 실시를 통한 개도국의 보건의료 인프라 발전 지원
 - 중장기적으로 보건의료관련 IT 기술 및 제약·의료기기 산업의 해외 진출 등 관련 산업발전도모

5. 향후 과제

- 해외지원 소요가 제기되는 부처별로 자율적, 자발적으로 해외지원 루트를 개척 하되, 국익 차원에서 외교부를 중심으로 조율, 조정하는 새로운 개념의 네트워크 구축 필요
 - KOICA, EDCF와 차별되는 각종 NGO의 해외협력 및 이에 대한 부처별 지원의 위상 정립 필요
 - 부처의 전문성과 분야별 자체 NGO망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마련
 - KOICA의 전문성 등 기능 강화
 - 해외지원 NGO들을 대상으로 지원의 기본적인 실무와 주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기능
 - 주재관·KOICA의 각 부처 및 NGO 활동 지원기능 강화
 - 현지 사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안전, 정보 축적 및 공유 등
- 외교부와 홍보처 등이 중심이 되어, 해외지원을 백안시하는 국내 분위기를 바꿔나가는 노력을 선도해 주기를 요청
 - 해외지원에 대한 찬반논의는 상당부분 철학의 논의이며, 해외지원이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하는 풍토의 만연이 해외지원 확대와 발전을 막는 근본 요인
 -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해외지원의 당위성 소개는 물론, 해외지원이 어떻게 국익 증진에 이바지하는지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외교부와 홍보처 등의 홍보 노력 필요

[별첨]

<표 1> KOICA 무상협력사업 계획 ('04. 1월 현재)

사업명	사업 계획		
	사업규모	백만원 (천불)	구성비(%)
계	122개국 6기구	111,078 (92,565)	100.0
○ 연수생 초청	111개국 120과정 2,220명	10,800 (9,000)	9.7
○ 전문인력파견 - 전문가 - 의료단 - 태권도사범	40개국 2기구 76명 26개국 2기구 35명 18개국 21명 20개국 20명	4,840 (4,033) 1,310 (1,092) 2,084 (1,736) 1,446 (1,205)	4.4
○ 해외봉사단파견 - 팀제 봉사단 - 일반 봉사단 - 국제협력요원	27개국 946 (720)명 12개국 500 (500)명 26개국 270 (132)명 24개국 176 (88)명	25,595 (21,329) 12,578 (10,482) 9,599 (7,999) 3,418 (2,848)	23.0
○ 개발조사	11개국 10건 (신규 5건, 계속 5건)	4,478 (3,732)	4.0
○ 물자지원	45개국 3기구	6,912 (5,760)	6.2
○ 프로젝트	19개국 1기구 32건 (신규 14건, 계속 18건)	25,323 (21,103)	22.8
○ 아프가니스탄 지원	-	23,400 (19,500)	21.1
○ 민간단체 지원	16개국 23단체	1,127 (939)	1.0

* 보건의료분야 지원 : 13,016백만원 (전체의 11.7%, 표2 참조)

〈표 2〉 KOICA 보건의료분야 지원계획 ('04)

구분	사업 내역	인원/건수	지원금액 (천원)
연수생초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계획과 생식보건 : 15국 21명 ○ 한의학제도와 전통의학 발전 : 15국 20명 ○ 병원관리 및 제도운영 : 16국 21명 ○ 결핵관리 : 15국 20명 ○ 싸이클로트론 및 RI의 의학적이용 : 10국 16명 ○ 보건의료정책 : 16국 21명 ○ 여성건강 및 권익향상 : 12국 20명 	7과정 139명	505,288
전문인력 과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단과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과,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등 	18국 21명	1,708,556
봉사단과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봉사단(간호.보건분야) : 9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 물리치료, 임상병리, 약사, 환경, 방사선 - 현활동인원 : 78명, 신규과견인원 : 20명 ○ 협력의사과견 : 24명 (상반기 8명 신규과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활동인원 : 24명, 신규과견인원 : 0명 	122명	6,402,000
개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분야 개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 6개국(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일본 뇌염백신개발 공동연구사업 ('02~ '06/2,500천불) 	1국 1건	600,000
물자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분야 관련 물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롬비아 휠체어 등 의료기자재 - 우크라이나 인큐베이터 등 의료기자재 - 수단 말라리아약 - 예멘 초음파진단기 등 의료기자재 	4국4건	336,000
아프가니스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전문가 2명 과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관리 1명, 흉부외과 1명(57,234천원) ○ IBNI SINA병원 의사연수 7명(16,640천원) 	전문가2명 연수7명	73,874

구분	사업 내역	인원/건수	지원금액 (천원)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 및 신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중부지역병원 건립사업 (3,000천불/2002-2004) - 중국 기생충감염관리 시범사업 (1,000천불/2000-2004) - 페루 제5 환·페 Santa Rosa 병원건립사업 (1,300천불/2003-2004) - 멕시코 유카탄주 병원건립사업 (1,000천불/2004-2005) ○ 후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베 우정병원 3차 지원사업 - 카자흐스탄 세미빠라틴스크시 보건소 의료장비 지원사업 - 페루 Pachacutec 모자보건소 건립사업 ○ 사전조사대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캄보디아 국립소아병원현대화 사업 	8건	2,953,334
NGO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오스 기생충퇴치사업 51,000천원 (한국건강관리협회) ○ 몽골 그린홈 치과진료사업 21,000천원 (덴탈서비스인터내셔널) ○ 방글라데시 찢마리, 올리뿔 공중보건사업 60,000천원 (방글라데시개발협회) ○ 베트남 HIV/AIDS 예방사업 51,000천원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 베트남 언청이수술 및 의료지원 22,000천원 (대한치과의사협회) ○ 베트남 불우아동지원사업 38,000천원 (한국복지재단) ○ 중국연변 조선자치주 도시지역 보건사업 21,000천원 (대륙복지회) ○ 필리핀 결핵퇴치지원사업 47,000천원 (선한사람들) ○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스탄자치공화국 한방의료지원사업 45,000천원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 모잠비크 보건 및 의료지원사업 36,000천원 (동서문화개발교류회) ○ 스와질랜드 유치원, 보건소운영사업 45,000천원 (아프리카어린이돕는모임) 	9국 11건	437,000
계			13,016,052 (10,846천불)

〈표 3〉 EDCF 보건의료분야 지원현황 ('92 - '02)

(단위 : 백만원/백만불)

연도	국가명	사업명	승인일	승인액		집행액	비고
'92	몽골	주사기공장건설	08.25	4,123	(5.20)	4,048	자금지출완료
'96	스리랑카	병원시설 개선	04.25	9,849	(12.6)	9,830	"
	스리랑카	의료기기 구매	08.07	8,171	(10.0)	7,814	"
'97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병원개선	09.26	27,534	(30.0)	27,367	"
'98	파나마	보건의료현대화	12.18	22,668	(20.0)	22,463	"
'99	베트남	백신공장 건설	09.22	34,728	(28.5)	10,610	자금지출중
'00	인도네시아	동자바 병원개선	07.04	34,369	(30.0)	31,226	"
	미얀마	간염백신 제조	08.28	16,355	(12.6)	14,493	"
	스리랑카	의료장비 구입	12.09	3,171	(2.6)	3,171	자금지출완료
'01	엘살바도르	Apopa 병원건립	09.17	33,196	(25.6)	-	L/A 체결추진
	엘살바도르	병원기자재 구매	09.17	2,464	(1.9)	-	"
'02	터어키	병원건립	01.10	39,429	(30.)	-	장부간합장추진
합 계 (9개국 12개 사업)				236,057	(209.0)		

〈표 4〉 WHO 분담금 ('96 - '02)

(단위 : 천USD)

계	'96	'97	'98	'99	'00	'01	'02
32,194	3,412	4,025	3,932	4,118	4,423	4,466	7,818

* 외교통상부 일반예산으로 지원

〈표 5〉 WHO 본부 공여 내역 ('97 - '02)

(단위 : 억원)

계	'97	'98	'99	'00	'01	'02
8.8	4	-	-	2.4	2.4	-

<표 6>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공여 내역 ('96 - '04)

(단위 : 억원)

계	'96	'97	'98	'99	'00	'01	'02	'03	'04
18.1	2.5	6.0	3.0	-	1.2	1.1	1.3	1.2	1.8

* '99년, IMF로 지원 중단되었다가 이후 지원 재개

<표 7> UN 여성개발기금 공여 내역 ('98 - '04)

(단위 : 백만원)

계	'98	'99	'00	'01	'02	'03	'04
42	6	6	6	6	6	6	6

<표 8> 국제가족계획연맹(IPPF) 공여 내역 ('76 - '04)

(단위 : 만USD)

계	'76 - '80	'81 - '90	'91 - '00	'01 - '04
123	4	25	69	25

* '78년 미 지원

<종합토론 :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현황과 과제>

민담규(전경련 선임조사역)

1. 배경

- 정부의 EDCF 자금이 우리기업들의 해외신흥시장에서의 건설 및 플랜트 수주확대에 Seed Money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연관사업 및 인근시장으로의 진출에 좋은 Reference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정부측의 적극적인 금융지원 확대 필요
 - 삼성물산이 아프리카 가나에서 EDCF 자금 6천만불을 지원한 이후 총 3억불 규모의 프로젝트(3건) 수주 성공

2. 제안 내용

- 다른 OECD 회원국의 평균수준에 근접하는 규모로 지원금액 증액 필요
 - GNI 대비 ODA 자금규모 : OECD 회원국 평균은 GNI 대비 0.22% 이지만, 한국은 0.062%로 1/4 수준에 불과
- EDCF의 지원조건(기간 및 이자율 등)을 보다 양허적으로 변경할 필요
- 해외발주처의 다양한 금융수요를 충족하고 시장개척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혼합신용을 확대할 필요
 - L/I 발급절차의 간소화
 - 경쟁국의 혼합신용 공여사실 입증의무의 면제
 - 차관 지원조건 완화
- 여러 국가에서 사업단위가 작은 다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보다 소수의 전략국가 중심으로 대단위 프로젝트 지원 필요
 - 전체 119개 지원사업 중 지원규모 4천만불 이상 사업은 단 3건(건수대비 2.5% 차지)에 불과하고 평균 지원금액은 1,670만불에 불과하여 건설 및 토목 등을 포함한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하기에 많이 부족한 규모
 - 최근 수혜국들은 기자재 공급과 같은 소규모 프로젝트보다 EPC를 총괄 공급하는 Turn Key 방식을 요청하는 경우가 증가
- 지원대상국가도 아시아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이를 발전 가능성이 큰 아프리카, 중남미, 동구유럽 등 전략국가를 위주로 지원
- 비교적 상업성이 적은(환경, 상하수도, 전자정부, 직업훈련 등) 중소형 플랜트 사업의 적극적인 개발
- 사업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규모 확대
 - 플랜트산업협회 주관 F/S 지원사업(지원금액 7.8억원) 결과 총 6건, 19.1억불(21,953억원) 수주 성공

1. 단체 개요

- 1999년 설립, 현재 39개 회원단체를 가진 외교통상부 등록단체
- 회장 : 이일하 굿네이버스 회장
- 회원단체 간 협의, 조정, 정보공유
- 주요사업 : 정책건의, 대국민홍보, 정보교류, 네트워크 형성

2. 한국개발NGO 현황

- 우리나라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함에 따라 단체도 수원국NGO로서의 오랜 경험과 공여국NGO로서의 경험(90년대 이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특징
- 1994년 르완다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모금, 활동을 시작
- 2000년 아프간 사태와 2003년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긴급구호활동 촉발
- 1991년 이후 설립된, 직원 50명이하, 회원 100명 ~1000명 규모의 소규모 조직, 교육, 보건, 의료, 긴급구호, 직업훈련 중심의 사업을 가진 기독교 조직의 모습

<표> 우리나라 개발NGO들의 해외원조 예산 규모

구 분	2000	2001	2002	2003
1그룹 100만불 (12억) 이상	굿네이버스, 대한적십자사, 아시아문화개발 협력기구, 월드비전,국제기 아대책기구, 호산나 (6개)	좌동 (동북아교육문화 협력재단추가) (7개)	좌동 (호산나 2그룹으 로 축소) (6개)	좌동 (한민족복지재단, 선한사람들 추가/ 대한적십자사2그 룹으로 축소) (8개)
2그룹 50만불(6억) - 100만불(12억)	-	-	선한 사람들, 호산나 (2개)	대한가족보건복지 협회, 대한적십자 사, 지구촌나눔운 동, 한국국제봉사 기구, 한국제이티 에스, 호산나 (6개)

3그룹 10만불(1.2억) -50만불(6억)	가나안농군운동 세계본부, 지구촌나눔운동, 장미회 등 (11개)	좌동 (선한사람들, 한 국건강관리협회, 한국어린이보호 재단 추가/광성, 태평양아시아협 회 중단) (12개)	좌동 (한국사랑의집짓 기운동,하나로,한 마음한몸운동,한 민족복지재단 추 가/국제농업개발 원, 한국건강관리 협회, 한국어린이 보호재단 축소) (12개)	좌동 (한국세이브더칠 드런, 한국어린이 보호재단, 건강관 리협회, 국제농업 개발원 추가/대한 한방의료봉사단 등 중단) (10개)
4그룹 10만불 (1.2억)이하	밝은사회국제클 럽한국본부, 선한사람들 등 (12개)	좌동 (한민족복지재단 추가/2기관 3그룹으로 확대) (11개)	좌동 (경희국제의료협 력회 중단/) (11개)	좌동 (대한약안면, 정 해복지 중단/4기 관 확대) (5개)
합 계	29단체, 300억 (250만불)	30단체, 401억 (334만불)	31단체, 450억 (375만불)	29단체, 532억 (443만불)

출처) 『세계 빈곤지역의 한국 NGO』, 2004, KCOC

<표> 한국 개발 NGO들의 주요 활동 국가

지 역	국가 및 활동 단체수
동북아	중국(17), 몽골(13)
동남아	베트남(14), 캄보디아(11), 필리핀(8), 미얀마(6), 태국(5), 라오스(3), 인도네시아(2), 동티모르(2)
서남아	인도(7), 네팔(6), 방글라데시(5), 스리랑카(3)
중 동 (분쟁지역)	이라크(12), 아프가니스탄(8)
한인밀집 지역	우즈베키스탄(7), 카자흐스탄(4), 중국연변(3), 러시아(4)
아프리카	이디오피아(6), 케냐(5), 우간다(2), 르완다(2), 모잠비크(1), 짐바브웨(1), 베냉(1), 가나(1)
기 타	중남미, 남태평양, 동구, 중동 지역 등에서 활동

- 2003년도 기준임

〈표〉 한국 개발 NGO들의 주요 활동분야

구분	교육	직업 훈련	보건 의료	난민 지원	긴급 구호	환경	농업 개발	선교	기타	합계
단체수	21	6	18	3	14	3	5	4	6	80
비율	26.3%	7.5%	22.5%	3.8%	17.5%	3.8%	6.3%	5%	7.5%	100%

〈표〉 한국 개발 NGO들의 주요활동 유형

활 동 유 형	주요활동과 사업
구호, 복지활동	재난구호/병원/보건/학교/급식/탁아/응급처치/긴급구호/의료/식수/고아원/탈북자/불우아동/나환자/난민/장애인/재건사업/빈민구호/
개발 활동	지역개발/기술훈련/직업훈련/소득증대/농촌개발/봉사단파견/
개발교육	가나안농군학교/인력개발/문화센터/대학협력/인구보건/성평등교육/지도자개발/청소년교육
정책, 옹호활동	세미나, 캠페인, 로비 활동등 일부단체 추진

- 이 활동 유형은 Korten(1993)의 분류 유형에 따른 것임
출처) 『선진국 국제개발NGO의 활동과 우리나라 국제개발 NGO의 발전방향』, 2004, 이태주, KOICA)

3. 제안

- 첫째, ODA 증대를 위한 외교부, KOICA 지속가능위 등의 관계기관과 NGO의 전략적파트너쉽(정책개발, 수행, 대국민 홍보 등)
- 둘째, KOICA 협력사업 예산의 5%를 매년 NGO에 할당함으로써 NGO 육성
- 셋째, 전문가 양성, NGO 네트워크를 통해 NGO활동을 특성화, 전문화 할 수 있는 발판으로서, 정부와 민간의 창구로서의 KCOC 지원

<참고 1>

한국 ODA의 개발 NGO 지원규모 확대안

1. OECD/DAC 회원국 내 총 ODA 대비 개발 NGO 지원실적

- 2002년 OECD/DAC 회원국의 개발 NGO를 통한 ODA 집행규모는 12억45백만\$로 전체 ODA 총액인 582억 73백만\$의 2.14%임
- 2002년 한국 개발NGO를 통한 ODA 집행규모는 1.4백만\$로 한국 ODA 총액인 2억 79백만\$의 0.5%로, 이는 OECD/DAC 평균의 1/4 수준에 불과함
- 2002년도 OECD/DAC 회원국 중 한국과 ODA 규모가 유사한 아일랜드는 12.1%, 규모가 작은 뉴질랜드는 5.7%를 개발 NGO를 통해 집행하고 있음

<표> 총 ODA 대비 개발NGO 지원실적

(단위 : 백만불)

구 분	년도	ODA/GNI (%)	ODA 실적 (A)	개발 NGO 실적 (정부보조액) (B)	개발 NGO의 ODA 실적율 <%> (B/A)X100
DAC회원국 총실적	2001	0.22	52,336	1,137	2.2%
	2002	0.23	58,273	1,245	2.14%
일본	2001	0.23	9,847	179	1.5%
	2002	0.23	9,283	143	1.8%
아일랜드	2001	0.33	287	28	9.8%
	2002	0.40	398	48	12.1%
뉴질랜드	2001	0.25	112	5	4.5%
	2002	0.22	122	7	5.7%
한 국	2001	0.063	265 (약 3천억원)	1.2 (약 14억원)	0.5%
	2002	0.06	279 (약 3천3백억원)	1.4 (약 17억원)	0.5%

주) 정부보조액은 ODA 실적에 계상되나, NGO 자체조달액은 ODA 실적으로 계상되지 않고, NGO에 의한 증여로 별도 계상됨

자료) OECD, Efforts and Policies of the Member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evelopment Cooperation 2002 Report(2003년도 발간) 참조

2. 개발NGO 실적 대비 자체조달 및 정부보조액 비율

- 2002년 OECD/DAC 회원국 개발NGO의 실적 중 자체조달액은 평균 87.6%이며 정부보조액 비율은 평균 12.4%임
- 2002년 한국 개발 NGO 실적 중 자체조달액은 96.3%로 정부보조액 비율은 3.7%로 OECD/DAC 회원국 평균에 비해 1/3 수준임
- 2001년도 KOICA의 개발 NGO를 통한 지원은 약 10억원으로 우리나라 무상원조총액의 1.47%에 불과함

〈표〉 연도별 한국 개발 NGO에 대한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연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예정)
지원액	449	539	619	328	426	617	951	1075	1127
사업수	18	24	20	17	20	22	27	28	20
NGO수	18	22	20	17	20	22	26	24	19
수원국수	18	14	10	11	10	13	15	16	14

[국제협력종합안내서], KOICA, 2003.9.

- 2002년도 OECD/DAC 회원국 중 개발 NGO 실적에 대하여 한국과 ODA 규모가 유사한 아일랜드는 35.8%, 규모가 작은 뉴질랜드는 23.3%를 정부가 보조하여 집행하고 있음

〈표〉 개발NGO 실적 대비 자체조달 및 정부보조액 비율

(단위 : 백만불)

구 분	년 도	개발 NGO 실적		
		자체조달액/비율 (A)	정부보조액/비율 (B)	계 (C=A+B)
DAC회원국 총실적	2001	7,290 (86.5%)	1,137 (13.5%)	8,427 (100%)
	2002	8,765 (87.6%)	1,245 (12.4%)	10,010 (100%)
일본	2001	235 (56.7%)	179 (43.3%)	414 (100%)
	2002	157 (52.3%)	143 (47.7%)	300 (100%)

아일랜드	2001	101 (78.3%)	28 (21.7%)	129 (100%)
	2002	86 (64.2%)	48 (35.8%)	134 (100%)
뉴질랜드	2001	11 (68.8%)	5 (31.2%)	16 (100%)
	2002	23 (76.7%)	7 (23.3%)	30 (100%)
한 국	2001	31.6 (96.3%)	1.2 (3.7%)	32.8 (100%)
	2002	36.4 (96.3%)	1.4 (3.7%)	37.8 (100%)

주) 한국실적: 자체조달액 : KOICA 지원대상사업외 실적 포함
 정부보조액 : KOICA 지원대상사업 지원실적임

3. 정책적 제언

- 한국 ODA 총액은 OECD/DAC 평균인 0.23%에 비해 1/4 정도인 0.06%이므로 ODA의 양적규모를 확대해야 함
- 한국 ODA 중 개발 NGO지원 규모가 OECD/DAC 평균인 2.14%에 비해 4.3배 작은 0.5%이므로 이를 OECD/DAC 평균수준에 맞는 지원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다년간 확대 계획을 가지고 집행해야 함
- 한국 개발 NGO에 대한 정부보조액의 비율이 현 3.7%에서 OECD/DAC회원국 평균규모인 12.4%에 도달 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개발NGO를 지원해야 함
- 2002~2003년도에 걸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긴급구호 및 재건사업을 위하여 개발 NGO에 특별 지원된 약 60억원을 개발 NGO 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전체 규모를 늘이고, 향후 개발 NGO 지원 시 그 총액을 유지하여 KOICA의 개발 NGO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함

1. ODA 지원확대 필요성

가. ODA 지원현황 규모확대를 통한 국제적 위상강화

- 우리나라의 ODA 예산의 경우 1987년 GNI대비 0.018%에서 2002년 0.06%로 증가하였으나 OECD/DAC 평균이 0.22%임을 감안할 때 최소한 DAC 회원국의 최저 수준인 0.1%에 도달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배증계획이 필요하다. ODA확대는 우리와 제3세계국가 간의 상호 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이므로 우리나라의 경제력 및 국제적 위상에 상응하는 ODA 규모의 확대가 시급한 과제임

나. 민간단체 지원확대

- OECD/DAC 회원국내 개발NGO의 활동예산은 회원국 전체 ODA 활동규모의 15%를 차지하며 본 예산 중 정부지원금의 비율은 약 14%에 이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단체가 ODA 사업의 12%를 담당하고 있지만 정부지원금 비율은 1.9%에 그치고 있어 지원금액의 확대가 절실한 실정이다.

2. ODA의 정책 과제

가. 원조 창구 및 체계의 일원화 또는 조정 기능강화 및 ODA 정책수립 및 집행 전담기관의 설립을 통한 ODA 운용 및 시행의 효율성 극대화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ODA사업의 주무부처가 크게 외교부와 재정경제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무상협력과 기술협력 분야는 외교부 산하 기관인 KOICA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상협력자금인 EDCF는 재정경제부 관리 하에 수출입은행이 위탁 집행하고 있다. 한편 무상협력사업의 경우 KOICA가 전담하고 있지만, 기술협력사업은 KOICA와 일부 정부 및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원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부처간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상호 유기적인 협력이 미비하여 중장기적인 사업보다는 일회적이고 비계획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원의 효율성이 낮다. 따라서 ODA 사업 예산의 증액과는 별도로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첫째로 ODA 사업의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ODA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을 설립하여 일원화하거나, 정부간 정책 결정의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지원기능을 통합하여 일관성있는 지원을 가능케 하고,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 장기적인 지원정책 방향정립 및 전략마련

- 현재 부처간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되지 않아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지원정책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OECD 회원국들의 경우 4-5년간의 원조전략과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기술과 자금을 묶어, 다년간 사업예산을 책정하여 각종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라의 경우 지원 창구 및 방식이 부처 간에 분산되어 있고 유기적인 정책 협력이 부족하여 중장기적인 지원이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3. 민간단체(NGO) 및 정부 간 협력강화

가. ODA 지원의 효율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한 민관정책협의의 상설화 통한 정책 입안 기능 보좌

- ODA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부와 민간단체가 지원 정책방향을 공유함으로써 중복 지원을 막고, 사업 및 지원대상 국가(지역)을 특수성을 감안한 지원 방법 및 상호 협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정책협의회를 상설화하여 정책의 큰 틀을 마련할 뿐 아니라 지원사업 부분별, 국가별 특수성을 감안한 지원사업의 제도적, 정책적 틀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 정부에서 제3세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설립한 시설이 운영면에서 안정될 때까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NGO로 하여금 위탁운영토록 하는 방안

- ODA 사업이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 확대를 위한 간접투자의 목적 뿐 아니라 소득 및 생활 수준이 낮은 제3세계 국가에 대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해외원조 사업에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토록 함으로써 각 단체가 가진 인적, 물적 자원을 자원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사업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지원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정책운영이 필요하다.

4. 해외지원에 대한 민간단체 참여확대

가. 민간NGO 참여확대를 통한 내실화 및 투명성 극대화

- 민간단체, 특별히 개발사업 NGO들은 초기에는 소규모 구호나 복지활동을 전개하다가 점차 개발활동 및 개발교육에 비중을 두는 추세로 활동하고 있는데 80년대 이후 개발의 개념이 단순 경제개발에서 사회개발, 인간개발, 환경친화적 개발 등 인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개발로 확대되어,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목적이 아닌 인도적인 목적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하여 민간단체의 경험과 인력의 활용이 중요시되고 있다. OECD 회원국들의 경우 개발정책 및 프로그램 수행에 개발NGO의 사업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개발 NGO들이 개발협력의 동반자로서 효과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우리나라도 민간단체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ODA사업의 경우 지원사업의 성격상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바 민간 단체의 현지화 전략을 통한 지원사업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민간외교의 장을 넓힐 수 있다.
- ODA사업은 공공예산을 통해 집행되는 것이므로, 지원 규모 및 대상의 확대를 위

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계층 및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여론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권윈, 대외원조정책의 현황과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8.
-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협력 종합안내서, 2003.9.

1. 한국의 ODA 확대 필요성

가. OECD 회원국과 DAC의 가입

- 빈국의 저발전과 빈곤문제 대한 인류적 차원의 책임성, WSSD 이후 논의되고 있는 개도국에 대한 신마셜플랜에 적극 동참

나. 한국이 처한 국제정치 환경의 개선

- 분단 상황 극복을 위한 국제적 지지기반 확보, 국제정치에서의 지도력 강화

다. 한국의 경제 상황

- 개도국들로부터의 자원 확보, 국가 이미지 개선을 통한 교역 확대

라. 한국의 발전 경험 전수

- 개도국의 저발전과 빈곤 문제 극복을 위한 전략으로 단시간 동안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한국의 경험 공유

마. 밑으로부터의 지구화(globalization)의 연착륙 유도

- 개도국 저발전 극복을 통한 이주 노동자 유입 감소와 잠재적 테러 집단인 근본주의자들 양산 억제

2. 한국의 ODA 제공 현황

가. ODA 제공 형식

- 연수생 초청사업
- 전문인력 파견 사업
- 해외봉사단 파견사업
- 개발조사사업
- 물자지원사업
- 프로젝트형 사업
- NGO를 통한 개도국 지원 사업

나.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 수혜국 요청에 의한 사업추진: ODA 수혜국의 편익과 특정 집단(지배집단이 나 개인)의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 농후(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 욕구 충족 가능성, 기존 통치체제의 안정화와 장기화에 이용될 소지, 한국에 대한 적대감 유발 가능성 등)
- 선진국형의 개발원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개도국의 사회집단과 정치집단의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부분의 지원 결여
- 기술 개발 중심에서 사회개발로의 전환 필요: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조정 가능한 사회 시스템에 대한 지원

- NGO를 통한 개발 원조 극히 취약: 원조 대상 현장에 대한 정보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음. 필요시 정부와 달리 현장 NGO, 여타 외국 NGO, 그리고 UN과의 network 작동 가능
-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중점 지원 사업과 연계성 결여: WSSD의 WEHAB 이슈나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의 연계 필요

3. 개선 방향

가. KOICA는 ODA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 틀 확립: 방향, 이념, 방법과 프로그램 등: 이를 위해 KOICA 자문단 구성 필요.

- 기본방향: 한국의 발전과 세계의 변영 동시 추구(경제발전, 글로벌 차원의 환경문제 해결 등)
- 이념: WSSD의 Plan of Implementation(이행계획)과 UN의 Millennium Development Goals(MDGs) 등, 남의 빈곤퇴치, 사회 안정, 민주주의 발전, 질병퇴치, 기초교육시설 확충, 지속가능발전 추구, 양성평등 확장 등
- 방법: 효과적인 개발협력사업이 되기 위한 전문성 제고, 철저한 사전 조사, 산발적이고 일회성이 농후한 사업보다는 집중과 통합 그리고 지속성에 입각한 사업, 현지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사업, 운영비와 관리비 최소화, 사업에 대한 중간 모니터링 강화, 체계적이고도 과학적인 사후평가 실시 등

나. KOICA 협력 사업의 체계화:

- 과업지침서 마련
- 체계적인 예산관리
- 과학적인 사업평가

다. NGO의 역할 증대:

- 90년대 이래 UN의 주도로 개발협력사업에 NGO 역할 증대
- 현재 선진국의 대외협력사업은 정부역할 축소와 기업:NGO 역할 확대 추세.
- NGO의 효율성: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직접 접촉을 통한 협력사업의 효과 극대화
- NGO의 헌신성: 직업정신과 사회의식 충만
- NGO의 도덕성: 사회의 저발전과 소외 집단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 NGO의 전문성: 해외에서의 국내 경험 활용 가능성(물론 개도국 협력사업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 전문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으나 이들에게 충분한 조건과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NGO의 적극성: 현재 탈북자 지원 등 정부의 관료나 기업보다 NGO들이 적극적인 점을 감안하면, NGO의 적극성은 개도국의 저발전과 사회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서도 매우 유용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라. ODA에서의 NGO 지원금 대폭 확대

- 현재 KOICA 예산의 0.23%에 머무르고 있는 NGO 지원금을 OECD 수준으로 확대(단기적으로는 2006년까지 10%, 그 이후 50%까지 확대시킬 필요가 있을 것임)
- 마. NGO 지원제도의 대폭 개선
- NGO의 전문성 향상(capacity building)을 위해 각종 교육 기관과 연계하여 정기적인 활동가 교육과 현장 경험을 위한 지원 대폭 강화
 - 소수 단체의 집중: 정확한 평가를 통해 사업실적이 부실한 NGO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고 대신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에게 집중 지원
 - 매칭펀드 형식의 과감한 탈피: 사업자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재정기반이 취약한 NGO들은 이를 운영자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사업의 부실화 초래,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
- 바. 산업연수생 초청사업 개선
- 현재 KOICA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초청 사업은 대개 산업연수생들은 장기 초청, 사회 지도급 인사나 차기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단기 초청(2주 정도)이 주류. 그러나 향후 차기지도자집단들의 한국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장기초청도 고려해야 함. 한국이 그 나라의 민주주의발전과 사회발전을 촉진시킨다는 의미에서 이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경제발전 일변도에서 사회발전과 정치발전 측면 등의 통합적 고려 요망.
- 사. 유학생 초청제도 대폭 확충
- 대학의 NGO대학원을 비롯하여 많은 대학교에서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과 연계하여 개도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해 일정기간(1년 정도)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 차세대 리더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 있음.
- 자. 부족한 전문성 보강과 사업의 추진을 위한 자문단/평가단 구성 필요
- 차. 나라별로 정확한 정보 수집과 평가를 통한 차별화된 사업 추진 필요
- 같은 아시아 국가라도 중국과 베트남, 미얀마와 라오스 등은 각기 다른 조건과 문화 배경, 역사발전, 경제수준, 잠재력 보유. 따라서 이들 국가들에게 적합한 개발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정확한 정보 수집이 선결 과제임. 이를 근거로 그 나라에 효과적이고 적합한 사업 발굴과 추진.
- 카. 지원봉사제도의 대폭적 개선
- 현재 20여 개국에 파견되어 있는 2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의 수를 대폭 확대하고, 특정 지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조직상의 개선도 필요함.
- 타. 다양한 시민사회집단과의 교류 협력 관계 형성
- KOICA를 비롯한 대외 원조기관 대한 관심 유발과 투명성 확보, 그리고 시대적 상황과 추세 파악을 위해 필요. KOICA를 비롯한 대외 원조기관의 개방적 태도는 장기적으로 KOICA 발전과 한국의 ODA 사업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파. 대국민 홍보강화

- 현재 우리 국민들은 대외원조사업에 대해 거의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함. 이와 함께 원조의 필요성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대국민 홍보작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하. ODA에 대한 PCSD의 역할과 과제 설정 필요

-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ODA에 대해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시민사회와 개도국 원조단체, 언론 매체, 그리고 대국민 홍보를 통한 의식 전환을 위해 정부부처간,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거버넌스 기구인 PCSD의 통합·조정 기관의 역할 필요

오늘 ODA 워크숍에 한국 개발NGO 실무자의 한사람으로서 참석하게 되어서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사회에서 ODA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며, 과거 1,2년 동안 ODA관련 토론회가 수차례 있었지만, 여전히 ODA는 일부 정부부서와 학자들만이 관심을 가진 전문영역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개최된 이 ODA 워크숍에서 진행될 정책관계자들간의 실질적인 토론을 통해 정책의 기초가 잘 다져져서 향후 한국ODA가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ODA의 한축인 무상원조 집행과 관련된 개발NGO의 실무자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ODA의 양적증대, 질적개선, 관련 조직 및 법, 체제 정비, DAC 가입 등의 큰 이야기들은 발제와 토론과정에서 많은 참석자들께서 언급하셨으리라 판단되어 ODA중 개발NGO와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ODA의 질적 구조개선 관련입니다. 특히 무상원조의 증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OECD/DAC 회원국의 상황을 보면 ODA중 무상원조대 유상원조의 비율이 2001년 기준 95% 대 5%인데 비해 한국은 31%대 69%로 무상원조의 비율이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OECD/DAC 회원국 중 호주,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등 14개 국가들은 ODA를 100% 무상원조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ODA 정책 집행에 있어 이들 국가와 한국의 사이에는 각기 다른 원칙과 배경이 존재하겠지만, 한국은 무상원조를 지금의 수준에서 단계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또한 획기적으로 증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ODA의 질적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증여율의 제고와 양자간 원조비율의 확대등도 검토되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ODA의 종합 발전 안을 작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ODA 무상원조 집행과 관련하여 NGO 지원내용의 개선입니다. 일단, 개발 NGO와의 협력을 통한 ODA지원이 양적으로 증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제개발협력의 추세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풀뿌리차원의 원조프로그램이 중요해지면서 2002년의 경우 OECD/DAC회원국들은 평균 ODA총액의 2.14%를 개발NGO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2002년 KOICA 무상원조를 통해 1.4백만\$(약 17억)을 지원해 우리나라 총 ODA의 0.5%를 지원했습니다. 이는 OECD/DAC 회원국의 평균 1/4 규모입니다.

개발 NGO지원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KOICA가 개발NGO를 지원하는 방식은 Matching Grants(상호출자증여방식)로써 개발 NGO가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KOICA가 재정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OECD/DAC 회원국들의 경우를 보면 여러 개의 원조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할 일정부분에 대하여 총괄해서 지원하는 Block Grants(총괄증여방식)과 1년 이상의 원조사업에 지원하는 Multi-Year Funding(장기재정지원)방식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영국의 경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국제개발부(DFID)가 가지고 있는 개발 NGO 지원프로그램은 파트너십 프로그램협력(PPA 100% 일괄 3-5년간 지원), 시민사회도전기금(CSCF 100% 일괄 지원 최대 5년간), 개발인지기금(100% 일괄지원 최대 3년간), 전략적 증여, 및 기타지원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과 영국의 개발 NGO의 역량과 사회적여건 및 기타 사항들이 차이가 있겠지만 이러한 선진국들의 경우를 잘 참고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지원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발NGO지원확대 부분에 대해 KOICA는 이를 단순히 개발NGO의 '예산 지원 확대요청'의 시각에서 벗어나 개발NGO를 통한 지원의 효과성, 효율성의 잇점 측면에서 검토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국민 참여 형 원조사업'의 관점에서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NGO들은 서구국가들이 자국의 NGO들을 국제개발사업 파트너로 인정하고 큰 비중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전문성, 효과성,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전반적인 역량을 강화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KOICA가 지원을 하고 한국 개발NGO의 해외지부에서 일을 하는 KOICA-NGO봉사단 제도가 신설되어 그 첫 수혜자가 11월 중순 출국하여 개도국의 한국 개발NGO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KOICA 프로젝트형 사업에 대해 일정부분 개발NGO의 참여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NGO 지원사업 이외에 다른 분야에서 개발NGO와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이를 더욱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제도화해야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ODA 대국민 홍보입니다. 한국 ODA 발전의 성공 여부는 얼마만큼 국민들의 지지를 받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의 지지는 효과적이고도 실질적인 홍보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 2월 KOICA와 동아일보가 공동으로 수행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대외무상지원 및 KOICA 인지도가 각각 42.5%, 26%이며, 원조규모 확대는 '축소 또는 중단'이 52.6%로 매우 소극적입니다.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같은 조사를 한다면 더욱 부정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ODA 홍보에 대한 부담을 정부만이 지고 있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적절하게 역할분담을 하고 협력을 하여 수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KOICA가 진행하고 있는 홍보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국제협력글짓기대회, KOICA 봉사단 홍보, 지하철 광고, ODA 논문공모, NGO와 협력하여 수행하는 사진전, 중고교생대상 국제협력 특강 또한 NGO지원을 통한 홍보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좀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여, 정기적인 대중강연, 대학교내 강좌개설, 국제개발관련 행사(캠프등)개최, 대학생 및 가족참여 단기 봉사 프로그램등을 수행하며, 더 적극적으로는 국제개발관련 TV 다큐멘터리 시리즈물 제작, 홍보대사 영입, 드라마 소재, 주제로서의 활용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ODA의 필요성 및 성과중심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발전된 생각으로는 대국민 홍보를 개발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면 장기적으로

로 더 효과적인 대국민적 대외원조 인지제고(Awareness Raising)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덴마크 같은 국가는 이를 모든 개발 프로젝트내의 한 구성요소로 간주하여 제도화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지구촌나눔운동에서도 개발교육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6년간 개도국으로 500여명의 대학생을 파견하여 봉사 활동을 수행케 하였으며, 개도국의 문화와 사회를 교육 하는 지구촌시민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5년간 150여명의 주부들을 교육하였고 이들이 현재도 초,중고등학교에서 명예교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및 주부들은 한국이 개도국을 도와야하며 ODA를 확대해야한다는 사실에 이견이 없는 적극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ODA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이 워크숍같이 ODA와 관련한 회의를 기획하거나 참석하다보면, 한국내에 ODA와 관련한 전문가 집단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개발원조 분야가 갈수록 전문화되고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한국의 개발원조를 이끌어갈 관련 전문가를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교육, 양성할 수 있는 과정 또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개발NGO, 학계가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의 몇 개의 국제대학원에 설치 되어있는 개발협력학과에 한국 ODA에 대해 다루는 과정을 넣거나 이 과정을 통해 관련 기관, 단체의 실무자를 교육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아이디어는 KOICA 내에 몇 개월 과정의 단기간 연수과정을 신설하여 관련 정부기관, 개발NGO실무자들이 집중적인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NGO들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ODA전문가를 양성할 자체 프로그램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KOICA로부터 받는 지원금 규모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단체 내에서 ODA에 대한 관심이 적다” 라는 식의 반응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한국이 선진국이 되고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에 맞는 기여를 하며 나아가 많은 개도국에게 모범적인 모델이 되는데 있어 시민사회도 보다 적극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ODA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해야합니다. 이상의 각기 분야가 전문인 양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해야겠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국 ODA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상의 네 가지 부문을 포함한 여러 주요 의제들이 담긴 '한국ODA발전종합안'의 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ODA와 관련한 이러한 주요 사항들을 정부나 시민사회 한 분야에서만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을 위해 상호 충분한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ODA 워크숍을 통해 그러한 협력이 더욱 성숙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Untied화 추세 대응방안 발굴 시급

- 가. 해외플랜트 수출확대를 위하여 EDCF 자금의 정책적 활용을 요청하는 건의가 많으나 EDCF 자금의 Untied화 추세에 따라 해외플랜트 수출에 연계하기가 점차 곤란함.
- 나. EDCF Untied 추세에 부응하면서, 해외플랜트 수출에 연계 방안 개발 필요
 - 1) 혼합신용(Mixed Loan) 확대
 - 2) EDCF 지원대상 프로젝트 발굴 및 선정 시 업계 참여 확대
 - 3) 우리기업에 프로젝트 발주도록 수혜국과 별도 협의
- 다. 해외플랜트 사업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예산 확대와 EDCF 연계 확대
 - 1) 해외플랜트 사업타당성조사 지원 프로젝트의 EDCF 지원
 - 2) EDCF 지원 요청 프로젝트에서 사업타당성조사 부분을 분리하여 해외플랜트 사업타당성조사 지원자금으로 추진

2. EDCF(경제개발협력기금)자금확대 및 전략적 활용을 통한 해외플랜트 참여 확대

- 가. 현재의 EDCF 자금현황을 감안할 경우 지원약속 규모가 조성액을 초과하고 있어 추가지원이 어려움.
- 나. 해외플랜트 참여확대 수단으로 EDCF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다른 DAC 회원국 평균수준에 근접토록 차관 지원액 증액 필요
 - GNI 대비 ODA 자금규모('01년 기준) : DAC 회원국 평균 0.22%, 한국 0.062%

3. 지원조건 개선을 통한 EDCF 경쟁력 제고

- 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EDCF 지원조건을 경쟁국 수준으로 개선 요함.
- 나. 지원금리 : 최저 1% → 0.5%
- 다. 상환기간 : 최장 30년 → 40년
 - EDCF 평균금리 2.3%(OECD 2.1%), 상환기간 28년(OECD 34년)

대외원조정책 개선방안 참여집필진

-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개혁과제와 개선방안(1, 2차 보고서)
 - 대표집필 : 권율 대외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집필 : 김채형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차명제 성공회대 NGO 대학원 교수

- 대외원조정책 개선방안 워크숍
 - 신혜수 국제협력소위원회 간사
 - 남상민 국제협력소위원회 총무
 - 진월(이영호) 국제협력소위원회 위원
 - 조현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
 - 안동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총무부장
 - 양돈선 재정경제부 개발협력과장
 - 박태동 한국수출입은행 경제협력본부장
 - 강석우 환경부 국제협력관실 지구환경담당관실 사무관
 - 김동원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실 사무관
 - 민담규 진경련 국제협력실 선임조사역
 - 윤현봉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사무총장
 - 정정섭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상임부회장
 - 차명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교수
 - 한재광 지구촌나눔운동 사업부장
 - 한비야 한국월드비전 긴급구호팀장
 - 허병철 플랜트산업협회 기획관리팀장

- 지원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남재우, 정연만(기획운영실장), 유성(간사), 고재경(팀장), 김현정(팀원)